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1세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제 출 문

청주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정책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9.

책임연구자	윤 송 현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정책위원
공동연구자	박 민 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위원장
	서 동 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간사
연구보조원	김 혜 령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간사

< 차례 >

< 연구 요약 >	11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개요	16
1-2. 연구의 배경	16
1-2-1.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16
1-2-2. 연구 용역의 필요성	17
1-3. 연구진	17
1-4. 연구 수행 과정	18
1-5. 작은도서관 분석 대상 확정	20
1-6. 선행 연구 검토	20
2.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	
2-1.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24
2-1-1. 지체된 공공도서관 발전과 민간 독서운동	24
2-1-2. ‘문고’ 활성화 정책의 법제화	24
2-1-3. 공동주택 내 문고 시설 의무화 시행	25
2-1-4. 작은도서관협의회와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출범	26
2-1-5. 대통령 지시와 「작은도서관 진흥팀」 신설	26
2-2.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27
2-3. 청주시 작은도서관 역사	29
2-4. 외국의 작은도서관 사례	31
2-4-1. 민중도서관과 공공도서관	31
2-4-2. 미국의 작은도서관	32
2-4-3. 북유럽 사례 - 덴마크 예링 콤문의 신달 분관	32
2-4-4. 북유럽 사례 -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특화도서관	33
2-4-5. 일본의 가정문고와 지역문고	33
2-5. 작은도서관 정체성 찾기	34
2-5-1.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	34
2-5-2. 작은도서관 지원의 정당성	35
3. 청주시 현황	
3-1. 청주시 개요	38

3-2. 청주시 행정 구역별 인구 현황 39

3-3. 지방자치 이후 청주의 정치 41

 3-3-1. 역대 자치단체장 41

 3-3-2. 청주시 시·도의원 선거구 41

3-4. 청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42

 3-4-1. 청주시 공공도서관 역사 42

 3-4-2. 도서관 행정 조직 변화 43

 3-4-3. 청주시 운영 공공도서관 현황 44

 3-4-4. 청주시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 45

4. 청주시 작은도서관 현황

4-1. 청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48

 4-1-1.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48

 4-1-2.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과정 및 운영 48

4-2.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51

 4-2-1.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51

 4-2-2.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 구분 52

 4-2-3.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53

 4-2-4. 작은도서관 공간 54

 4-2-5.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59

4-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63

 4-3-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배경 63

 4-3-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특성 63

 4-3-3.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역할의 중요성 64

 4-3-4.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64

4-4. LH 임대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66

4-5. 그외 사립 작은도서관 67

4-6.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68

 4-6-1. 관장의 신분과 재직 기간 68

 4-6-2. 상근 직원 및 사서 자격증 여부 69

 4-6-3. 전담인력 운영의 실제 69

 4-6-4. 외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70

4-7.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 71

4-8.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74

4-8-1.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74
4-8-2.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75
4-9.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 요약	81

5. 청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5-1. 작은도서관 정책 변화	84
5-2. 작은도서관 담당 업무	84
5-3.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	86
5-3-1. 외부 후원과 도의원 사업비 지원	86
5-3-2. 리모델링 지원의 문제	87
5-4. 작은도서관 지원	89
5-4-1. 작은도서관 평가와 차등 지원	89
5-4-2.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89
5-4-3. 순회사서 지원	90
5-5. 작은도서관 지원의 문제	91
5-5-1.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91
5-5-2. 도서관 인사와 작은도서관 담당 조직	91
5-5-3. 작은도서관 정책의 부재	92
5-5-4.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	93
5-5-5. 작은도서관 지원 방식의 문제	93
5-5-6.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 삭제	95
5-5-7. 평가의 문제	96
5-5-8. 운영비 지원의 문제	97

6.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정책 비교

6-1. 정책 비교의 필요성과 방법	100
6-2. 창원시 작은도서관 정책	101
6-3. 부천시 작은도서관 정책	104
6-4. 김해시 작은도서관 정책	107
6-5. 전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110
6-6. 파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115
6-7. 성남시 작은도서관 정책	116
6-8. 의정부시 작은도서관 정책	117
6-9. 순천시 작은도서관 정책	118

6-10. 여수시 작은도서관 정책 120
 6-11. 당진시 작은도서관 정책 121
 6-12.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정책 요지 122

7. 다른 정책 사업과 비교

7-1. 다른 정책 사업과 비교의 의미 124
 7-1-1.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124
 7-1-2. 도서관과 복지정책 124
 7-1-3. 댄질식 대책과 예방적 정책의 차이 125
 7-1-4. 작은도서관 정책 만들기 125
 7-2.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 126
 7-2-1. 지역아동센터 운영 126
 7-2-2.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127
 7-2-3.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비교 128
 7-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정책 129
 7-4.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131
 7-4-1. 공공형어린이집 정책 131
 7-4-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131
 7-4-3.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역 132
 7-5. 다른 정책과 비교 요지 133

8.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8-1. 문체부 실태조사의 활성화 방안 의견 136
 8-2.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 간담회 141
 8-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지부장 간담회 145
 8-4.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간담회 148

9. 청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

9-1 .도서관 조직 및 업무 개선152
 9-1-1. 도서관 인사 개선 152
 9-1-2. 작은도서관 담당팀 신설 152
 9-1-3.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확대 152
 9-1-4. 공공도서관의 구역별 작은도서관 관리 153
 9-2.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및 평가 154

9-2-1. 문체부 실태조사로 일원화	154
9-2-2.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로 평가	154
9-3.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155
9-4. 공공형 작은도서관 도입	157
9-4-1. 공공형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157
9-4-2.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	157
9-4-3. 문체부 정책 연구 보고서 제안	157
9-5.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 마련	159
9-5-1. 선지원 후평가의 필요성	159
9-5-2. 지원 기준 설정의 법적 판단	159
9-5-3.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기준의 검토	159
9-6.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162
9-6-1.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적용	162
9-6-2. 운영비 지원	162
9-6-3. 도서구입비 지원	162
9-6-4.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163
9-7. 특화 도서관 운영	164
9-8.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165

10. 청주시 작은도서관 조례에 반영

10-1.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168
10-2. 청주시 작은도서관 조례에 반영할 내용	172

< 부록 >

작은도서관 진흥법	178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180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185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	189

< 표 차례 >

[표 1]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치 기준	27
[표 2]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27
[표 3]	청주시 행정동 단위 세대 및 인구 현황	40
[표 4]	지방자치 이후 역대 자치단체장	41
[표 5]	청주시 선거구별 시·도의원	41
[표 6]	청주시 운영 공공도서관 현황	44
[표 7]	청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48
[표 8]	년도별 작은도서관 변화(공사립 포함)	51
[표 9]	사립 작은도서관 개관 년도별 현황	51
[표 10]	청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 구분	52
[표 11]	2020년 문체부 실태조사 참여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	53
[표 12]	청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전용 사용 여부	54
[표 13]	청주시 작은도서관 연면적 구분	54
[표 14]	상당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55
[표 15]	서원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56
[표 16]	청원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57
[표 17]	흥덕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58
[표 18]	대출 여부 및 대출 미실시 사유	59
[표 19]	사립 작은도서관 내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60
[표 20]	운영위원회 연간 운영 횟수	60
[표 21]	작은도서관 주말 개관 현황	61
[표 22]	단지 규모별 아파트 및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65
[표 23]	청주시내 내임대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66
[표 24]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의 지위	68
[표 25]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의 재직 기간	68
[표 26]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장의 재직 기간	68
[표 27]	사립 작은도서관 직원 및 봉사자 현황	69
[표 28]	전국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74
[표 29]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75
[표 30]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주요 현황	76
[표 31]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인력 및 이용 현황 비교	77
[표 32]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장서 관리 및 대출 현황	78
[표 33]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관당 연간 운영 예산 현황	79
[표 34]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80
[표 35]	청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변천	85

[표 36]	청주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 지원 내역	86
[표 37]	2021년 청주시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현황	90
[표 38]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인사 현황	91
[표 39]	청주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현황	92
[표 40]	2021 창원시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102
[표 41]	부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104
[표 42]	김해시 연도별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108
[표 43]	전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110
[표 44]	전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111
[표 45]	전주시 공립형 작은도서관 현황	112
[표 46]	2021 전주시 작은도서관 예산	113
[표 47]	2021년 전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113
[표 48]	2021 의정부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117
[표 49]	순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118
[표 50]	2021년 순천시 사립 작은도서관 직접 지원 예산	119
[표 51]	여수시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120
[표 52]	2021년 여수시 사립 작은도서관 직접 지원 예산	120
[표 53]	당진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121
[표 54]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요지	122
[표 55]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126
[표 56]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	127
[표 57]	청주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비교	128
[표 58]	청주시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예산	130
[표 59]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현황	132
[표 60]	2021년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	132
[표 61]	작은도서관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청주시 검토사항	170
[표 62]	청주시 상당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185
[표 63]	청주시 서원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186
[표 64]	청주시 청원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187
[표 65]	청주시 흥덕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188

<연구 요약>

1)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2021년 7월 기준 청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립 6개관, 사립 120개관임.
- 작은도서관 현장 점검 결과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관계없이 설치부서에서 전담인력이 없이 최소한의 운영비로 관리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이 없었으며,
- 사립 작은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고, 관리 운영자가 부재한 상태로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었음.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에 대해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곳이 3~4곳에 불과하고, 운영자들이 최소한의 활동비만 받거나, 무보수 관장이 비상근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음. 운영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짧아 장서관리 프로그램의 사용도 줄어드는 등 도서관 운영 수준이 크게 떨어져 있음. 도서관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와해된 곳이 많아 코로나19 이후에도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실태조사와 평가

- 청주시는 등록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 상태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부실한 편임.
- 청주시는 작은도서관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자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33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함.
-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등수를 매기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A,B등급), 도서관구입비 지원, 도비매칭 도서대여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음.
- 평가는 지원을 위한 등수 매기기로만 활용되고 있고,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은 작은도서관의 등수 경쟁으로 이어짐. 결과적으로 작은도서관에는 평가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어 운영자 이탈 등 작은도서관 운영 기반 와해로 이어지고 있음. 또 일년 단위 평가와 지원의 반복으로 운영의 안정성도 크게 훼손되어 많은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오히려 독소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3) 청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과 문제점

- 도서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이 낮고, 도서관 관리자의 인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서관의 조직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되고 있음.
- 공간 조성, 시설 개선에만 관심을 가질 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 도서관 인사가 행정직 위주이고, 인력 배정에 매우 소극적임.
- 법령의 규정,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민간 운영자에 대한 시혜적인 성격으로 여기는 의식이 문제임. 국도비 매칭이 없으면 자체 예산 편성에 매우 소극적임.
-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담인력 지원이 거의 없고, 외부의 일자리 창출형 지원만 이어지고 있음. 작은도서관에 일자리 창출로 파견되는 사람은 많은데(여성인턴, 시니어일자리, 청년일자리 등), 정작 제일 중요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지원비가 없는 실정.
-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기준이 없음.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지원 기준을 삭제하였음)

4)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비교

- 창원시와 부천시는 일찍부터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민간단체에 적절한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위탁 운영 해왔음. (민간 위탁)
- 김해시와 전주시는 민간의 신청을 받아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주고,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왔음. (민간경상보조)
- 파주시와 순천시는 읍면마다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도서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참여형 작은도서관 운영이 자리잡도록 하였음.
- 김해시는 공공도서관이 봉사대상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분관형 체제 업무분장을 도입하였으며, 파주시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협력사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 금천구에서는 마을사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5) 다른 정책과 비교

- 민간에서 공부방, 방과후교실로 시작된 저소득층 어린이 돌봄 활동에 대해 2004년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시설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음.
- 청주 시내 7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시설장과 교사)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마다 공무원 전담교사 1명씩을 파견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 충복지원관을 만들

어 위탁운영하고 있음.

- 사립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을 추가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 학교 방과후 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조성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
- 지역돌봄,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작은도서관을 사업대상지로 삼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작은도서관은 마을에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독서 활동과 리터러시 증진사업은 모든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임.

6) 주요 개선안 제안

- ① 도서관 관리직 인사를 개선해야 함. (행정직이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근무 유지, 관장은 사서직 중심의 인사 - 평가 기준이 됨)
-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의 도서관 정책에 기반해서 조성되어야 하며, 상향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며, 사서 1명을 포함한 전담인력 2명을 의무 배치해야 함.
- ③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전제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사무위탁조례)
- ④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문체부 실태조사에 대해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함.
- ⑤ 사립작은도서관 중 도서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공성이 높은 곳을 ‘공공형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함. (문체부의 공립형작은도서관 제안,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참고)
- ⑥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만들고, 운영비 지원 기준을 갖춘 곳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지원함.(시설 규모, 인력 등으로 구분, 평가 점수로 줄세우지 않음)
- ⑦ 작은도서관 전담팀을 만들어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거나, 각 지역 공공도서관이 봉사대상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관리 지원하도록 업무 분장을 함.(정책은 도서관정책팀, 관리와 지원은 각 공공도서관)
- ⑧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 대해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체적인 교류, 협력, 교육, 컨설팅이 진행되도록 함.
- ⑨ 주요 사항을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반영함.

1.

연구 개요

1-1. 연구의 개요

1-2. 연구의 배경

1-3. 연구진

1-4. 연구 과제

1-5. 연구 수행 과정

1-6. 선행 연구 검토

1-1. 연구의 개요

- 1) 연구 의뢰 :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 2) 과 업 명 :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3)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021년 6월 14일 ~ 9월 14일)
- 4) 과업 내용
 - ① 청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점검
 - ②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과 이에 대한 의견 조사
 - ③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 비교 조사
 - ④ 청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 개선을 위한 제안

1-2. 연구의 배경

1-2-1.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 청주시의회에는 2010년 8월 처음 의원 연구모임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약칭 ‘도사모’)」을 발족한 이래, 매년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도서관과 관련한 현안 토론회, 도서관 정책 비교를 위한 타 시도 견학,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2021년에는 변중오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용규, 김현기, 남일현, 박완희, 박용현, 유영경, 이재숙, 정우철, 정태훈, 최동식, 한병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청주시 공공도서관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연구 성과에 대하여 2021년 6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2021년에는 ‘청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한 연구 용역 계획에 대하여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

1-2-2. 연구 용역의 필요성

- 청주시는 통합 이전에 (구)청주시는 2011년 9월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청원군은 2011년 10월 「청원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통합과 함께 새롭게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왔음.
- 청주시에는 2021년 7월 기준 총 126개관의 작은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고, (공립 6개관, 사립 120개관) 그중 50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정보 교류, 교육,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연구모임’은 2021년 3월 31일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청주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1-3. 연구진

1-3-1. 연구진 구성

- 2020년 청주시립도서관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참여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연구진과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청주시의 도서관 정책과 공공도서관 정책과 연계하여 연구 작업을 수행함.

구 분	이 름	소 속	수행 업무
책임연구원	윤 송 현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연구 총괄
연구 원	박 민 주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서 동 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작은도서관 정책 비교
연구보조원	김 혜 령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연구 관련 업무 처리

1-3-2. 자문단 구성

구 분	이 름	소 속 및 직 위
도서관정책	안 찬 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이 용 훈	전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작은도서관 운영	백 영 숙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박 소 희	인천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관장
	김 자 영	서울 강동구 웃는책도서관 관장
	김 경 희	전북 전주시 책마루작은도서관 관장
	박 미 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도서관 관장

1-4. 연구 수행 과정

1-4-1. 기초 자료 조사

- 청주시 작은도서관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점검함.
 - ① 작은도서관 진흥법, 청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등 조사
 - ② 청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 ③ 청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내용
 - ④ 청주시의회 작은도서관 관련 토론 및 발언 내용
 - ⑤ 청주시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 2021년 청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신청서를 통해 운영 현황을 조사함.
- 연차별로 청주시 문고,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통계 자료를 분석함.

1-4-2. 청주시 작은도서관 현장 점검

- 현장 방문 기간 : 2010년 7월 9일 ~ 7월 26일까지
- 등록된 총 126개 작은도서관 중 휴관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도서관을 제외한 119개관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확인함.

1-4-3. 중간보고회 개최

- 8월 9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중간보고회 개최
- 청주시의회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전원과 청주시립도서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용역 수행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함.
- 중간보고회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공유함.

1-4-4.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정책 조사

- 7월 23일(금) 전주 꽃심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담당팀과 미팅. 운영 중인 공립작은도서관 현장 답사(첫마중길여행자작은도서관, 학산숲속시집작은도서관, 책기둥도서관), 위탁 운영 중인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방문.
- 8월 12일(목) 김해시 방문 도서관정책 팀장 인터뷰, 하늘빛작은도서관(현 김해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장), U보라작은도서관(직전 김해시 작은도서관협의회장) 방문 인터뷰 진행.
- 8월 18일(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도서관, 파주시 중앙도서관, 부천시 상동도서관 방문.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조사.
- 창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당진시, 순천시에 전화나 이메일로 작은도서관 정책 조사.

1-4-5. 간담회 개최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간담회 -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국 각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협회 이사 및 지부장 12명이 줌으로 비대면 간담회 개최.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 간담회 - 8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줌으로 비대면 간담회 개최. 8명 참석.
-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간담회 - 8월 25일(수) 오후 2시, 시립도서관에서 그동안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했던 사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와 간담회 개최. 8명 참석.

1-4-6. 최종보고회 개최

- 9월 13일(월)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함.
- 최종보고회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공유함.

1-5. 작은도서관 분석 대상 확정

1) 청주시 등록 작은도서관 자료

- 2021년 7월 기준 청주시에 등록된 도서관은 126개관. 공립 6개관, 사립 120개관임.
- 이중 현장 점검 결과 운영하지 않는 곳이 8개관이고,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2개관(성무책마루, 청주대대)과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온 무지개도서관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 공립 6개관, 사립 109개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2)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참여

- 2021년 2월 실시한 문체부 조사에 참여한 도서관은 공립 6개관, 사립 103개관임.
- 이중 현장 점검 결과 문을 닫은 2개관과 국방부 지원 2개관과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무지개도서관은 제외하고,
- 공립 6개관, 사립 98개관을 대상으로 분석함.

1-6. 선행 연구 검토

-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2006년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육성 정책을 본격화한 뒤로 활발해졌으며, 이후 작은도서관 등록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자체별로 수행되었음. 작은도서관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운영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에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 내용을 살펴봄.
- 김보일 등은 2013년부터 꾸준히 문체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음.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5)에서 작은도서관의 조성을 통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간 구성 뿐 아니라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과 작은도서관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2018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경기도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김홍렬 등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자 의식 조사, 운영자FGI, 우수 사례 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음. 연구팀은 운영자들의 이직이 빈번하여 운영자들의 근무 경력이 짧고, 이는 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을 낫다는 점을 찾아내고, 인건비를 포함한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음.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문체부 실태조사와 경기도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공립은 사립보다 예산이 양호하지만, 도서관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밝혀냄.

- 노영희 등(2020)은 경기도 내 70개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3주간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자 없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설문에 대한 응답률이 15.2%에 그쳐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

노영희 등은 사립으로 분류되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발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고, 이를 이해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작은도서관을 위한 ‘예산 지원’, ‘운영 인력 채용’,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항목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특히 이들은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 시설인 경로당 수준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간행한 『작은도서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에서 연구를 수행한 김홍렬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팀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연구팀은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수준 유지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기준을 1,000세대로 상향하고, 관리 주체를 명시하여 운영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고, 광역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사립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립’으로 지정하여 공립 작은도서관과 동등한 수준의 운영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립형 지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립 지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안하고 있음.

2.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

2-1.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2-2.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2-3. 청주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4. 외국의 작은도서관

2-1.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2-1-1. 지체된 공공도서관 발전과 민간 독서운동

- 대한제국 말기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선각자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도서관은 일제의 손에 넘어 갔음.
- 일제는 일본인 거류민이 많은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장서들은 대부분 일본어 서적이었으니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로 보기 어려움.
- 해방 이후 전쟁을 거치며 꺾박한 경제 여건에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일제 강점기 도서관 건물을 유지하는 정도였고, 학생들의 독서실로 주로 이용되었음.
- 정부 수립 이후 도서관 정책은 문교부에서 담당해왔음.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문화부를 만들 때, 도서관 업무를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하였음.
- 1960~70년대 국가가 공공도서관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엄대섭 선생이 사재를 털고 독지가들의 후원을 조직하여 마을문고 운동을 벌여, 1970년대 후반에는 전국에 3만여 개에 이르는 문고를 조성하였음. 엄대섭 선생이 주도한 마을문고 운동은 민간 운동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업으로 편입되어 새마을문고로 바뀌었음.
- 1970년대 부산에서 민간의 독서운동가들이 뜻을 모아 양서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독서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도서관 운동으로 이어짐, 창원 등 경남지역과 서울, 광주로 파급됨.
-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도서관, 난곡주민도서관 등 독서를 통한 시민의식 계몽을 추구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출판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독서운동, 작은도서관 운동이 싹트기 시작함.

2-1-2. ‘문고’ 활성화 정책의 법제화

- 1993년 7월 문화체육부가 「문화 창달 5개년 계획」을 통해 △독서 새물결 운동 5개년 계획 전개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작은도서관 5백개 건립 계획을 발표하여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의욕을 보였음.¹⁾
- 1993년 책의해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확대의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민자당의 안으로 국회에 제출. 이 별도 법안의 제정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계에서 반대하여²⁾ 오랜 논의 끝에

1) 文體部 「문화창달5개년계획」 의미와 전망, 1993-07-24 문화일보 <李翰雨기자>

2) “책의해 조직위 「독서진흥법」 제정 攻防 도서관 協會측”, 1993-08-17 문화일보, <趙祐奭기자>

1994년 3월에 『도서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함.

- 1994년 3월 24일에 새롭게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조는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 발전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고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분명히 한 것임.³⁾
- 문고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미약하나마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면서 개인과 교회, 아파트를 중심으로 문고 설립이 많아졌음.⁴⁾
- 문고 설립 운동은 민주화 운동에서 출발한 사회 운동 그룹의 주민 계몽 운동, 사회적 의식과 별개로 독서를 권장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의 문고 운동, 선교를 겸한 교회 문고 운동으로 크게 구분됨.

2-1-3. 공동주택 내 문고 시설 의무화 시행

- 이 법 제39조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 이용 시설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고 육성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이 법 제40조에서는 공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사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1994년 12월 시행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시 ‘문고’ 조성을 의무 시설로 지정함.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건설회사에서는 준공을 위해 주민 공동시설 안에 법적 기준에 의한 문고 공간을 만들어야 했음. 이와 관련 내용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들도 문고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적었고, 문고 공간이 제대로 꾸며지거나 운영되는 경우가 매우 적었음.

3) “문고 설립 쉬워진다/『독서진흥법』 9월 시행따라”, 1994-03-15, 서울신문

4) “‘작은 도서관’ 전국모임 출범”, 1994-03-16, 한겨레신문

2-1-4. 작은도서관협의회와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출범

- 1994년 3월 전국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600여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하는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됨.⁵⁾⁶⁾
- 1990년대 들어 어린이도서 출판이 활발해지고 어린이책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면서 양서협동조합에서 시작된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해짐.
- 기존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실 운영이 미비한 점으로 인해 전국에서 어린이작은도서관을 등록이 늘어나고, 1998년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함.⁷⁾

2-1-5. 대통령 지시와 「작은도서관 진흥팀」 신설

- 문고 활성화 정책을 법령으로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오래도록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는 형식적인 지원으로 일관하였고,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지원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음.
-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 「도서관 발전-1-종합계획」 1)과 「문화비전21 :창의한국(문화관광부 '04.6.)」을 통하여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1만 개의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한 운동을 제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2004년에 복권기금 25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작은도서관 25개관을 시범 조성하였으며, 2006년부터 작은도서관에 조성을 위한 중앙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특히 2006년 2월 27일에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였으며, 대통령 지시⁸⁾에 따라 도서관 관련 예산의 획기적 증액 방안 및 구체적 정책 패키지를 중장기 계획 전까지 정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과 단위의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신설되었음.
-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전라북도가 도차원에서 참여하고, 김해시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5) “ ‘작은 도서관’ 전국모임 출범”, 1994-03-16 한겨레신문 김영희

6) 회원중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많았음, 지금의 ‘한국사립 작은도서관협회’

7) 지금의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8) 2006. 2. 27, 제55호

2-2.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2-2-1. 법령의 정비 과정

- 2007년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서관법』으로 변경함. (독서진흥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법을 별도로 제정함)
- 2009년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꾸어,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 2012년에는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을 분리하여 『작은도서관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작은도서관 지원 육성을 위한 사항을 세분화하였음. 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그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음.

2-2-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과 주요 내용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의 규정을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함.

[표 1]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치 기준

봉사대상인구 (명)	시 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표 2]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시 설		도서관 자료
건물 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 건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작은도서관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진흥법 제1조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를 가짐(진흥법 3조 책무)
-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진흥법 6조 운영 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진흥법 제7조 다른 공공도서관의 협력)
- 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진흥법 제12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 특별히 2016년 2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가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흥법을 개정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음.

2-2-3. 작은도서관 조례 제정

- 1994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정과 1995년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계기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약대글방’ 등 지역 문고를 운영하던 단체들이 문고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처음 시작하였음.
- 2006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조례 제정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 충청북도의회는 2011년 7월 「충청북도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 (구)청주시는 2011년 9월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청원군은 2011년 10월 「청원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과 함께 새롭게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음.

2-3. 청주시 작은도서관 역사

2-3-1. 청주시 공공도서관 발전 과정

- 청주의 유일한 도서관이었던 청주시립도서관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물을 그대로 이어 받아 시작하였으나, 중앙공원 → 도청 서문앞 → 중앙공원 건물 신축 → 수동 보건소 건물로 옮겨다니다 1985년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자료를 이관하고 폐관하였음.
- 1979년에 청주여고 부지에 신축한 충청북도학생회관은 1985년 충청북도중앙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89년 사직동으로 도서관을 이전함. 대출은 폐가식이었고, 독서실로 이용되고, 대출 이용은 매우 저조했음.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없었음.
- 1992년 5월에 에스콰이어그룹에서 산남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청주 인표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여 당시로서는 차원 높은 어린이도서관 공간을 운영함. 9)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2003년 9월 용암동에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처음으로 개관.
-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기적의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받는 가운데 2003년 청주시에 ‘기적의도서관’ 유치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조직되어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확인되었고, 이후 청주시가 공공도서관 건립에 나섬.
- 북부도서관(청원도서관, 2007), 서부도서관(흥덕도서관, 2009), 신울봉어린이도서관(2009), 상당도서관(2010), 남부도서관(서원도서관, 2012), 오송도서관(2013), 오창호수도서관(2016), 오창도서관(2016), 강내도서관(2016), 금빛도서관(2019), 가로수도서관(2021)을 개관하여 현재 직영 13개관과 위탁 1개관을 운영하고 있음.

9)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에스콰이어그룹의 창업주인 이인표회장의 관심으로 조성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1990년 5월에 상계동에 1호관을 개관한 이후 전국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 운영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해외에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해오고 있음. 청주 인표어린이도서관은 인근에 기적의도서관이 개관하자 2005년 9월 30일로 운영을 종료하고, 시설과 도서를 중국 연변지역으로 옮겼음.

2-3-2. 청주시 작은도서관 발전 과정

- 청주에서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유일한 공공도서관이었으나,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학생들의 학습 공간 확보를 중시하여 만들어졌음. 접근성이 낮고, 어린이실을 갖추지 않는 등 근대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 1994년부터 서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문고 설립이 늘어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청주에서도 교회에서 문고 설립이 활발하였음(쌍샘문고, 풍성한문고 등).
- 1998년 어린이 출판물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청주 시내에 어린이전문서점 ‘서당’ 이 문을 열었고, 어린이책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이 만들어짐. 이 모임에 참여했던 이종수는 참도깨비 어린이도서관(1998), 오혜자는 초롱이네도서관(1999)이 문을 열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함. 이들은 일찍부터 어린이작은도서관협회(현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에 참여하여 어린이책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도서관 운영 체계를 발전시킴.
- 1998년부터 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 을 개설하여 어린이책 읽기를 확산시킴.
- 이처럼 청주에서도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의 공백 지대에서 시민들이 벌인 독서운동에서 시작되고 확산된 것임.
- 2006년 봉명I’PARK문고가 문을 열면서 가정E편한문고 등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함. 2011년 성화동 개신주공아파트단지에서 개관한 글마루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으로는 처음으로 전담인력을 유급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였음.
- 2006년 새롭게 조성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작은도서관 운동이 지역 단위에서 조직됨. 청원군내 네트워크 활동으로 ‘작은도서관 학교’ 를 꾸준히 개최하였음. 2010년 청원군 작은도서관협의회(초대회장 홍근옥 들꽃방 작은도서관 관장) 결성.
- 2011년 청주 산남동 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 조성이 활발해지고, 연대 활동이 이뤄지면서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초대회장 김용규 글마루작은도서관 관장) 결성되었음.
-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 통합에 따라 2015년에 통합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초대회장 오혜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가 결성되었음.

2-4. 외국의 작은도서관 사례

2-4-1. 민중도서관과 공공도서관

-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것도 아님. 어느 나라든 도서관 운동은 민간에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 것임.
- 중세에는 수도원이 도서관 역할을 하였고, 대학이 설립되면서 대학에 도서관이 만들어졌음. 르네상스 이후 귀족과 무역으로 재력을 일군 부호들이 장서를 수집하여 도서관을 만드는 사례들이 생겼음. 이런 도서관들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며, 대출이 되지도 않았음. 프랑스 혁명 이후 계몽사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책을 돌려볼 수 있는 민중도서관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음(People's library)
- 유럽에서 1850년대부터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민중도서관들은 대부분 장서가 500권을 넘지 않고, 건물의 방 한 칸에서 장서와 도서목록을 비치하고, 전담 직원도 없이 운영되는 아주 '작은' 규모였음.
- 민중도서관 운동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의회에 재정 보조를 요청하는 청원이 계속 제출되었으나 의회에서는 도서관이 민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며 오랫동안 지원을 거부했음. 계몽사상의 보급, 보통선거의 도입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성인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중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
-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공공도서관 운동은 도서관이 공공의 비용에서 의해서 유지되고(公費),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며(公開), 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無料)는 원칙에서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운동으로 정립되었고, 이 운동은 1900년대 초에 유럽으로 전파되어 도서관 개념이 민중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변화하였음.
-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올바른 시민의식의 형성의 중요성, 그를 위한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이뤄졌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진행됨.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편입되거나 역할이 소멸되어 문을 닫게 되었음.

2-4-2. 미국의 작은도서관

- 미국에서 사용하는 ‘Small library’ (작은도서관)은 봉사 대상 인구가 2만 5천명 이하인 도서관을 말함. 봉사 대상 인구가 작은 지역에 있는 Small library도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임.
- 2013년 미국의 공공도서관 통계를 살펴보면 알라바마주에는 공공도서관이 모두 212개관이 있는데, 그중 봉사 대상 인구가 1만 명에서 2만 5천 명인 곳은 55개관, 2천 5백명에서 1만 명 사이인 곳은 73개관, 2천 5백명 이하인 곳은 44개관으로 작은 공공도서관(Small public library)는 전체 공공도서관 중 81.1%를 차지함.¹⁰⁾
- 봉사 인구가 2천 5백명에 못 미치는 작은 곳에 있는 도서관이라도 기본적인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훈련된 사서가 근무하며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음.

2-4-3. 북유럽 사례 - 덴마크 예링 콤문의 신달 분관

- 북유럽의 도서관 정책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지역 간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 밀집 거주 지역에는 작더라도 공공도서관을 만들었음. 그래도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동도서관 버스를 운영함.
- 덴마크 유틀란드 반도 북쪽에 있는 예링콤문은 면적은 929km²로 청주시(941km²)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67,000명 정도임. 이 예링에는 다섯 곳에 공공도서관이 있음. 그중 인구 3000명인 신달(Sindal)에 있는 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시설을 잘 갖추고 있음. 예링도서관 본관 사서가 주 3회 근무하며, 다른 시간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림 2> 덴마크 예링도서관의 Sindal 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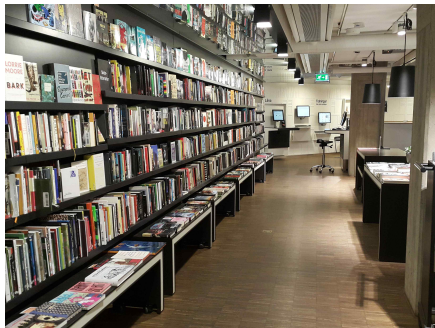


<그림 3> Sindal 분관 1층 열람실

10) 김홍렬 · 이윤조 외, 『경기도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 연구』, p 16-2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8.

2-4-4. 북유럽 사례 -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특화도서관

- 2000년대 이후 IT가 발달하면서 북유럽 국가들은 도서관 이용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
- 스톡홀름 중심가인 외스퇴르말름에 있는 지하철역에는 30평이 채 안 되는 공간에 스톡홀름시립도서관 분관이 설치되어 있음. 출퇴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서가 관리하고 있고,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이 매우 많음.
- 오슬로시립도서관은 사춘기 어린이들을 위해 퇴엔지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음. 100평 정도의 공간에 10~15세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음.



<그림 4> 스톡홀름 지하철 도서관



<그림 5> 어린 청소년 전용공간인 비블리오퇴엔

2-4-5. 일본의 가정문고와 지역문고

- 일본의 경우 메이지시대에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군국주의 정책에 몰입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음. 2차 대전 이후에 독서 바람이 조성되었고, 1960년대 후반 개인이 집에 책을 쌓아두고, 지정한 날에 개방하여 책을 빌려주는 ‘가정문고’, ‘지역문고’ 운동이 일어났음. 1970년대에는 전국에 3,000여개에 달했음.

일본에서는 가정문고나 지역문고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움. 전후 경제 부흥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진 일본 지자체들은 민간의 요구에 따라 공공도서관 만들기에 나섰고, 공공도서관 확산과 함께 민간의 가정문고나 지역문고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지금은 개인 활동으로 남아 있음¹¹⁾.

11) 일본 가정문고 활동은 오야츠렌(親地連, www.oyatiren.info)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2-5. 작은도서관 정체성 찾기

2-5-1.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

-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립과 사립을 모두 합하여 7,500여 곳에 이릅니다.
-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왔지만, 운영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부에서도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법령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실의 변화는 크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일선 자치단체 행정담당자들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됨
 -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정도에서 적당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전담인력이 따로 없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
 - 아파트 단지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하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지원만 요구한다.
 - 이제 공공도서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없어도 된다.

2-5-2. 작은도서관 지원의 정당성

1) 작은도서관은 법적 제도화로 확산된 것임

-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시작되었지만, 활성화를 위해 1994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법제화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 책무가 규정된 법정 시설. 법제화 이후 민간에서는 작은도서관이 크게 늘었지만,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음.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강제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는 계속 이어졌지만, 실제 일선 행정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법적 책무를 소홀히 해온 것임.

2)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매김해 있음

- 작은도서관은 이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독서문화공간이자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가 되어 있음.
- 미디어의 변화로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 형태가 바뀌었고, 작은도서관도 네트워크화를 통해 훌륭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을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음.
- 한국 사회 주거문화는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임. 대형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어진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면, 독서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지역 사업을 해야 함.

- 작은도서관 운동은 민간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어온 풀뿌리운동으로, 민간의 자발성과 경험이 시들지 않도록 계속 북돋아서 지속되게 할 가치가 있음.
- 작은도서관은 주민과 밀착된 지점에서 책 읽기, 성인학습, 정보 제공, 대화와 토론 문화 형성, 창작 전시 공연 등 문화 생활 향유 등 민주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활동을 수행하고,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단단히 해나가는 역할을 수행함.
- 작은도서관을 튼튼하게 하면 어린이부터 시니어 그룹까지 모든 세대가 그림책 읽기부터 창작 활동, 합동 공연, 마을 활동까지 폭넓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의무 조성 시설로 만든 것처럼 신규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단지 규모에 따라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의무화 해야 함.

3.

청주시 현황

3-1. 청주시 개요

3-2. 청주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3-3. 지방자치 이후 청주의 정치

3-4. 청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3-1. 청주시 개요

-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한남금북정맥이 지나는 동북쪽은 산악지대이고, 무심천과 미호천이 지나는 서남쪽은 평야지대임. 무심천을 끼고 도심이 발달했으며, 도심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기간도로가 구축되고, 읍면이 형성되어 있음.
- 충북의 도청소재지로서 각종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음.
- 1980년대 운천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90년대 용암1지구, 수곡지구, 복대지구, 율량지구, 분평지구, 금천지구, 용암2지구, 하북대지구, 산남지구, 성화지구, 강서지구, 대농지구, 율량2지구, 동남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청주의 도시 외곽을 순환하면서 진행되었고, 택지개발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이제는 도시 전체가 환상으로 아파트 벽에 쌓여 있음. (구)청원군 지역에서는 오송신도시와 오창테크노빌의 개발로 서북부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었음.
- 1960, 70년대 신흥제분, 연초제조창, 대농이 청주의 기간산업체였음. 청주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금성계전을 중심으로 영태, 한주, AMK 등 전자회사들이 자리를 잡았고, 이후 LG화학, LG산전, LG전자의 LG그룹이 청주 경제의 큰 축을 이룸. 2000년대 들어 반도체산업이 자리를 잡았고, 오창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되며 청주 경제를 이끌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도시 외곽이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빠르게 공동화되었으며, 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
- 2014년 7월 1일 (구)청원군과 (구)청주시가 통합하여 청주시로 새롭게 출발함.
(구)청원군지역은 읍면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인구 증가가 많은 오창읍은 대읍체제임.

3-2. 청주시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 청주시는 4개 구청 산하에 3읍, 10면, 30동의 행정 단위가 있음.(행정동)
- 구청은 자치 기능이 없는 행정구청으로, 2014년 시군통합 때 4개 구청으로 분할됨.
- 인구는 오창읍과 오송읍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시가지와 상당구 동남지역은 꾸준히 줄고 있음.



< 그림 6 | 청주시 행정동 구분

[표 3] 청주시 행정동 단위 세대 및 인구 현황

구분	세대	인구	구분	세대	인구
청주시	383,130	847,642			
상당구	83,741	193,640	서원구	88,350	193,127
남성면	1,224	2,231	남이면	4,712	10,075
미원면	2,834	4,938	현도면	1,828	3,245
가덕면	2,094	3,908	사직1동	3,743	7,382
남일면	3,175	6,775	사직2동	5,671	14,036
문의면	2,049	3,966	사창동	8,350	14,641
중앙동	3,507	6,979	모충동	7,398	14,396
성안동	3,894	6,793	산남동	10,504	26,351
탑대성동	4,145	8,693	분평동	11,990	30,372
영운동	5,198	10,569	수곡1동	6,963	13,267
금천동	12,578	31,072	수곡2동	7,731	15,870
용담명암산성동	4,902	13,440	성화개신죽림동	19,460	43,492
용암1동	22,279	54,288			
용암2동	15,862	39,988			
청원구	88,492	193,780	흥덕구	122,547	267,095
내수읍	8,905	19,163	오송읍	11,832	23,977
오창읍	30,912	70,003	강내면	5,061	10,732
북이면	2,594	4,572	옥산면	7,871	18,033
우암동	7,171	12,205	운천신봉동	7,851	16,773
내덕1동	4,315	8,492	복대1동	21,068	50,787
내덕2동	6,411	13,403	복대2동	8,870	15,827
울릉차천동	20,757	47,553	가경동	21,865	55,250
오근장동	7,427	18,389	봉명1동	5,807	9,714
			봉명2, 송정동	12,119	24,100
			강서1동	14,531	28,389
			강서2동	5,672	13,513

[자료] 청주시 통계연보 / 2021.7.31.기준(단위:명,세대)

3-3. 지방자치 이후 청주의 정치

3-3-1. 역대 자치단체장

[표 13] 지방자치 이후 역대 자치단체장

임기	청주시장	청원군수	충북도지사
1995. 7 ~ 1998. 6	김현수(자유민주연합)	변종석(자유민주연합)	주병덕(자유민주연합)
1998. 7 ~ 2002. 6	나기정(새정치국민회의)	변종석(자유민주연합)	이원종(자유민주연합)
2002. 7 ~ 2006. 6	한대수(한나라당)	오효진(자유민주연합)	이원종(한나라당)
2006. 7 ~ 2010. 6	남상우(한나라당)	김재욱(한나라당)	정우택(한나라당)
2010. 7 ~ 2014. 6	한범덕(민 주 당)	이종윤(민 주 당)	이시종(민 주 당)
2014. 7 ~ 2018. 6	이 승 훈 (새누리당)		이시종(새정치민주연합)
2018. 7 ~ 현재	한 범 덕 (더불어민주당)		이시종(더불어민주당)

3-3-2. 청주시 시·도의원 선거구

[표 14] 청주시 선거구별 시·도의원

구별	선거구(정수)	행정동	도의원	시의원(39명)
상당	가선거구(3)	금천, 성안, 중앙, 탑대성, 명암, 산성동	이숙애	한병수, 정우철, 김성택
	나선거구(3)	용암1, 2동, 영운동	장선배	최충진, 박미자, 김태수
	다선거구(2)	남일, 가덕, 낭성, 미원, 문의면	박문희	남일현, 김병국
서원	라선거구(3)	수곡1,2동, 모충동, 사직1,2동	허창원	김기동, 박용현, 이완복
	마선거구(3)	분평동, 산남동, 남이면, 현도면	육미선	임은성, 박완희, 안성현
	바선거구(3)	성화개신동, 사창동	김영주	김용규, 김영근, 홍성각
흥덕	사선거구(3)	북대1,2동, 봉명1동	이상식	유영경, 이재길, 유광욱
	아선거구(3)	가경동, 강서1동	박상돈	김은숙, 윤여일, 김현기
	자선거구(3)	오송읍, 옥산면, 강내면, 운천신봉동, 봉명2, 강서2동	연철흠	최동식, 하재성, 박노학, 이우균
청원	차선거구(3)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임동현	변은영, 임정수, 정태훈
	카선거구(2)	오근장동, 내수읍, 북이면	이상욱	변종오, 전규식
	타선거구(3)	오창읍	이의영	이영신, 신언식, 박정희

시의원 비례대표 : 양영순, 이재숙, 김미자, 이현주

3-4. 청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3-4-1. 청주시 공공도서관 역사

- 1984년 청주시립도서관을 폐관하고 모든 자료를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한 이후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없었음.
- 구 청원군에서는 1996년 옥산면에 옥산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1999년 9월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비 45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2003년 9월 3일 시립정보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2002년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MBC와 함께 진행한 기적의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신청함. 수곡동 부지에 기적의도서관을 건축 2004년 7월 15일에 개관하였음.
- 청주시의 동서남북과 중앙에 5개의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고, 2007년 3월 21일 북부도서관(지금의 청원도서관), 2009년 3월 31일 서부도서관(지금의 흥덕도서관), 2009년 4월 7일 신울봉어린이도서관, 2010년 3월 18일 상당도서관, 2012년 3월 12일 남부도서관(지금의 서원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구 청원군에서는 2009년 9월 16일 오창 신도시에 목령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13년 9월 24일 오송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를 위해 오송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통합을 하여 새롭게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였고, 청주시립도서관과 오송도서관 양관 체제로 전환하였음.
- 2016년 5월 3일 오창호수도서관을 개관하였음. 농촌 지역 개발사업으로 2016년 7월 13일 오창도서관, 2016년 10월 19일 강내도서관을 개관하였음.
- 2019년 12월 청주문화제조창 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사립도서관인 열린도서관을 개관. 시에서 사립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들고, 운영비를 지원함. 대출을 하지 않음.
- 2020년 상당구 금천동에 금빛도서관, 흥덕구 가정동에 가로수도서관을 개관하였음.

3-4-2. 도서관 행정 조직 변화

- 2003년 9월 청주시립정보도서관 개관으로 문화예술국 산하 사업소로 출발
- 2010년 1월 청원군 목령도서관 개관, 청원군 문화공보실 소속
- 2011년 7월 평생교육원 산하 청주시립도서관으로 조직 변경
 - 평생교육원 4급 기관 신설 (평생학습관을 주무과로 함)
-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으로 조직 및 도서관 명칭 변경
 - 청원도서관(북부도서관), 서원도서관(남부도서관), 흥덕도서관(서부도서관)
 -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을 5급 기관으로 분리
 - 청주시립도서관(시립도서관, 상당도서관, 청원도서관, 목령도서관)
 - 청주시립오송도서관(오송도서관, 서원도서관, 흥덕도서관, 신울봉어린이도서관)
- 2015년 7월 평생교육원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변경
 - 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신설
- 2018년 9월 시립도서관 정보팀, 시설팀 신설
- 2019년 7월 조직 개편 - 오창호수도서관 5급 기관 승격



<2020년 청주시립도서관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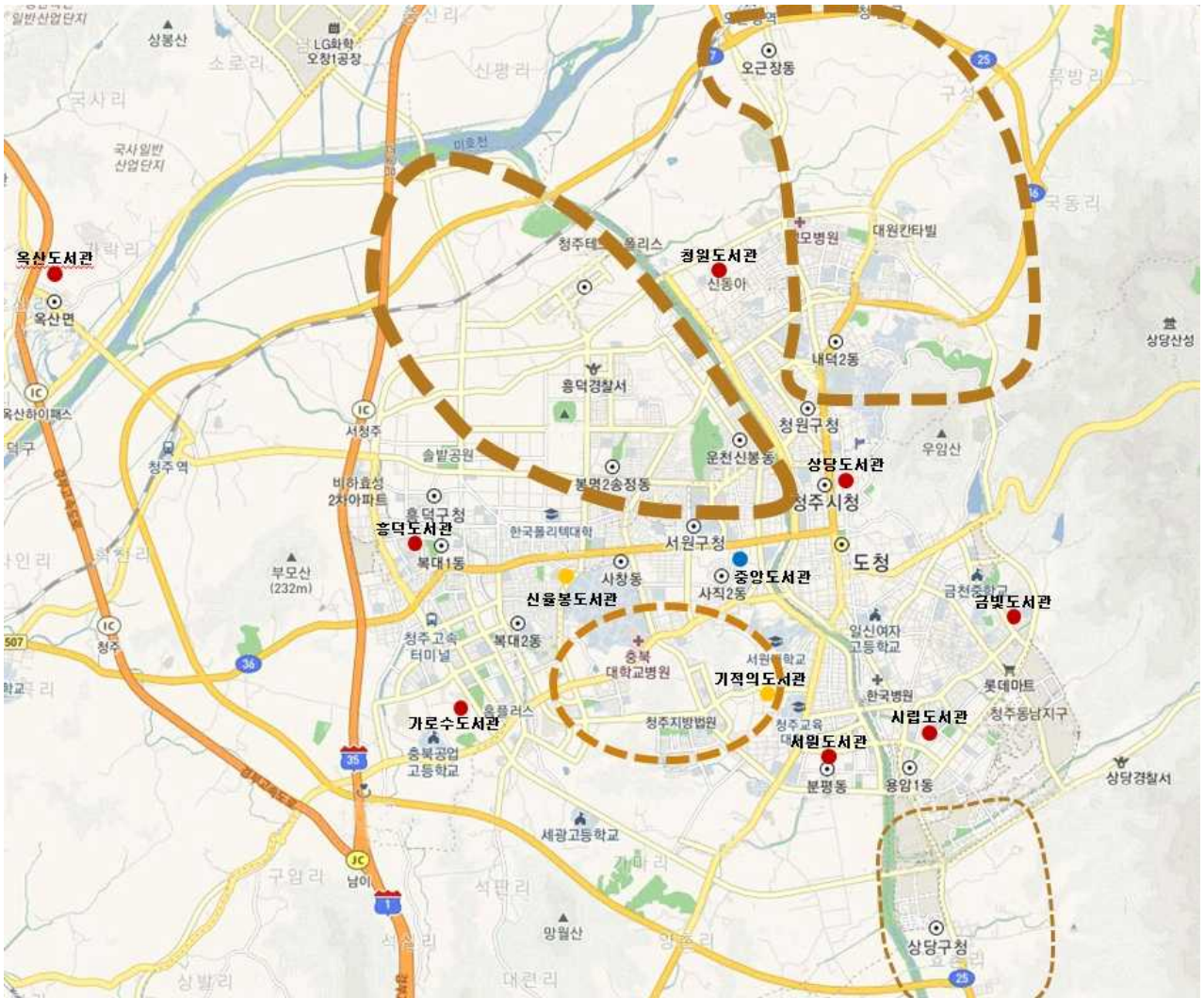
3-4-3. 청주시 운영 공공도서관 현황

- 청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은 2020년 현재 총 14개관임.
- 행정구별로 상당구 3개관, 서원구 2개관, 청원구 3개관, 흥덕구 6개관임.
- 사립도서관인 열린도서관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출 등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내수도서관이 2021년에 개관 준비중임.

[표 16] 청주시 운영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도서관명	개관년도	위치	연면적(㎡)	장서수
청주 시립	청주시립도서관	2003	상당구	5,370	278,711
	금빛도서관	2019		4,052	37,511
	상당도서관	2010		2,681	128,814
	오창호수도서관	2016	청원구	8,338	122,685
	청원도서관	2007		2,623	145,029
	오창도서관	2016		1,781	97,203
	시립오송도서관	2013	흥덕구	2,752	109,127
	신울봉어린이도서관	2009		990	77,270
	흥덕도서관	2009		2,480	129,451
	가로수도서관	2021			
	강내도서관	2016		1,140	80,984
	옥산도서관	1996		679	67,686
	서원도서관	2012	서원구	2,692	116,051
	기적의도서관	2004		968	48,560
사립	열린도서관	2019	청원구	1,831	21,989

(자료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3-4-4. 청주시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

○ 청주시가 그동안 공공도서관을 꾸준히 신설하여 왔으나, ‘걸어서 10분 이내라는 공공도서관 조성 목표에 견주면 도서관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 대표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는 다음과 같음.

- 상당구 - 5개면 지역(남일, 문의, 가덕, 낭성, 미원)과 방서지구, 동남지구.
- 청원구 - 내덕2동과 울량 2지구(울량동, 오근장동) 아파트 지역.
- 흥덕구 - 봉명1·2동, 운천신봉동, 강서2동.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 서원구 - 남이면, 현도면, 모충동, 수곡1, 2동. 산남동.

4.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4-1. 청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 4-2.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4-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4-4. LH 임대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 4-5 그외 사립 작은도서관
- 4-6.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 4-7 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
- 4-8.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 4-9.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 요약

4-1. 청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4-1-1.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 2021년 7월 기준 청주시에 등록된 공립 작은도서관은 6개관임.

[표 7] 청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작은도서관명	등록	면적(㎡)	위치	관리 운영
내수작은도서관	1996	313	청원구 내수읍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도서실	2011	36	흥덕구 복대1동	평생학습관
봉명작은도서관	2011	198	흥덕구 봉명1동	봉명1동 행복복지센터
해피레인보우	2012	71	서원구 모충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맹꽁이생태도서관	2012	128	서원구 성화동	공원관리과
두꺼비생태도서관	2012	170	서원구 산남동	공원관리과

4-1-2.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과정 및 운영

- 공립 작은도서관은 각 부서에서 시립도서관과 사전 협의없이 공간을 조성하고 등록하였으며, 조성 이후에도 최소한의 운영비를 자체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 대부분 도서관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기간제 요원(평생 학습관 도서실), 공익요원(내수작은도서관, 봉명작은도서관, 두꺼비 생태도서관, 맹꽁이 생태 도서관), 자원봉사자(봉명작은도서관, 내수작은도서관)로 운영하고 있음.
-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음. 처음 부터 전담인력은 없었고, 매년 단기간 기간제 요원을 선발하여 관리해왔음.
- 두꺼비도서관과 맹꽁이도서관은 2020년 2월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뀜. 도서관 전담인력은 없 고 청년일자리로 선발된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2021년 7월부터 6개월 근무.
- 해피레인보우도서관은 2013년 국비 5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처음 조성하였으나, 이후 현재의 시설로 이전하면서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자료실 수준으로 축소하여 유지해 오고 있음. 전담인력이 없이 매년 여성인턴에 의존하고 있음.
- 내수작은도서관은 같은 부지 내에 공사 중인 내수도서관이 준공되면 폐관 예정임.
- 매년 실시되는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서 공립 작은도서관들이 모두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1) 봉명작은도서관 사례

- 전 봉명1동주민센터 건물. 2011년 2월 봉명1동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면서 전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 봉명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로변에 있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봉명1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적인 공간 운영예산을 편성하고, 공익근무, 자원봉사를 통해 공간을 유지해왔음.
- 청주시립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서비스 거점도서관으로 지정하였으나, 도비 보조 도서구입비 200만원 외에는 어떤 지원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자, 2021년 봉명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를 통해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에 봉명동작은도서관에 조성하는 계획을 신청하여 선정됨. 국비 2억에 시비 2억 매칭 사업.
-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치행정과에서는 봉명작은도서관을 외국인 주민 자녀들과 지역 주민의 자녀들을 다함께 돌볼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봉명작은도서관은 폐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2) 오송복지회관 내 참새와소나무 그림책도서관 사례

- 오송읍에서 농어촌공사 지역개발기금으로 오송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청주시립도서관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작은도서관 공간을 조성하였음.
- 작은도서관 공간을 조성한 뒤에야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할 것을 요구. 시립도서관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들어 업무 이관을 거부하자, 오송읍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만 편성한 뒤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문체부 실태조사 평가에 관한 언론보도 >

청주시 작은도서관 33% '낙제점' / 충북인뉴스 보도일 : 2018.09.05.

공립 작은도서관은 C,D등급, 평생학습관도서관 내수도서관은 모두 F등급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실시한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점검 결과' 청주시 작은 도서관 116개소가운데 30% 이상이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C등급이 44개소, D등급이 33개소, F등급이 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 등급인 A등급은 8개소 중간 수준인 B등급은 25개소에 그쳤다.(중략)

문제는 사립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작은 도서관 8개소 모두 사립이다. 반면 공립 작은 도서관인 두꺼비생태도서관·봉명작은도서관은 각각 C, D등급을 평생학습관도서관·내수도서관은 모두 F등급을 받았다.(중략) / 박명원 기자

<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제37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18.09.06 목요일)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평가 결과에 대하여

- 위원장 김은숙 작은도서관이 하위등급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수자 사립이 많은데 등록할 적에는 규정만 되면 크게 문제없이 등록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실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데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은숙 지금 여기 기사에도 보면 사립 도서관과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인 두꺼비생태도서관, 봉명작은도서관이 각각 C등급을 받았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수자 봉명동 경우는 옛날 주민센터 자리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주로 직능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원 인력에 여유가 있으면 파견해서 하면 좋은데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는 파견해 줄 수가 없고(생략)
- 위원장 김은숙 앞으로 도서관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도서관이 별개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도서문화를 제공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는 데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4-2.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4-2-1.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 2021년 7월 기준 청주시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120개관임. 이중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사립으로 분류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나¹²⁾ 주소지에 부재하거나 운영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곳을 제외하고 109개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함.
- 등록 작은도서관 수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등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관도 이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양적 확대는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1] 년도별 작은도서관 변화(공사립 포함)

년도	등록 작은도서관 수	신규등록수	폐관 신청수	비고
2018년 12월	132	16	14	
2019년 12월	130	10	12	
2020년 12월	120	7	17	코로나19
2021년 8월	127	9	2	코로나19

[자료] 청주시립도서관 제공

- 현재 운영 중인 109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의 평균 운영 기간은 8년임. 가장 오래된 작은도서관은 봄눈으로 1993년에 처음 개관하였음. 개인으로는 초롱이네도서관(1999), 아파트는 오창에 있는 우림필유와 한라비발디 작은도서관이 2006년에 개관함.
- **10년 이상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모두 35개관(32.1%)**이며, 이는 전국 평균 수치(31.2%)와 비슷한 수준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곳이 많은 편임.

[표 22] 사립 작은도서관 개관 년도별 현황

년도	개관수	년도	개관수	년도	개관수
2010년 이전	17	2014년	4	2019년	8
2010년	6	2015년	4	2020년	9
2011년	12	2016년	6	2021년	6
2012년	11	2017년	8		
2013년	9	2018년	9	운영중	109

[자료] 청주시립도서관 제공

12) 공군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무책마루도서관, 예비군부대에서 북카페로 등록한 청주대대작은도서관은 통계에서 제외함, 무지개작은도서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로 분류하여 통계에서 제외함. 2021년 498,457천원 지원(도비 매칭)

4-2-2.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 구분

-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라 공립, 개인, 교회, 법인, 아파트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 단체는 개인으로 분류하였고,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조성된 작은도서관은 법인단체로 분류하였음. 13)
-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운영 주체별로 공립 직영(1), 공립 위탁(2), 개인(3), 새마을문고(4), 교회(5), 법인(6), 아파트(7)로 분류하고 있음. 이때 개인, 교회, 법인, 아파트의 구분이 불분명한 지점이 있어서 입력에 혼선이 많이 있음. 14)
- 이 연구에서는 LH 임대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관리운영권이 입주자들에게 있지 않고, 작은도서관은 LH에서 위탁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관리 운영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LH에서 작은도서관에 전담운영 인력인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단체로 분류하였음.

[표 23] 청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 구분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합계
법인단체	5	9	4	6	24
(LH임대)	(0)	(4)	(3)	(2)	(9)
아파트	5	14	16	10	45
교회	7	2	5	3	17
개인	8	5	4	6	23
합계	25	30	29	25	109

[자료] 청주시립도서관 제공, 단위 개관

13) 청주청년회는 개인, NGO어울림도서관은 법인단체.

14) 교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교회와 출입구가 다른 공간에 설치한 곳은 개인으로 입력한 곳이 많음.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개인으로 입력한 곳이 있음. LH임대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법인과 아파트로 나뉘어 있음.

4-2-3.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 문체부에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많은 교육과 매뉴얼 제공, 입력 예시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자료를 입력한 이후에도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봉사자의 업무 숙지 미숙, 입력 자료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혼동과 수치 과대입력 여지가 발생하고, 지자체에서는 담당자의 업무 과장, 잦은 교체 등으로 입력 자료에 대한 실사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일부 자료의 부정확함과 과대 입력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에서는 가장 폭넓게, 상세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관련 통계로는 가장 의미가 있는 자료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문체부의 실태조사 자료를 기본적인 통계자료로 삼고, 실제 현장에서 파악한 상황을 덧붙이기로 함.
- 2020 문체부 실태조사에 자료를 입력한 작은도서관은 98개관이고, 11개관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문체부 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작은도서관 자료는 청주시립도서관 관리 자료를 반영함.

[표 24] 2020년 문체부 실태조사 참여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합계
개 인	7	6	4	5	22
교 회	5	2	4	3	14
법인단체	3	8	4	5	20
아 파 트	2	14	15	11	42
미 참 여	8	0	2	1	11
합 계	25	30	29	25	109

[출처] 2020년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단위 개관

4-2-4. 작은도서관 공간

- 작은도서관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관 시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도서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통과하거나 공유하는 곳이라면 일반인의 이용에 커다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음.
- 청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 다른 목적의 공간과 같이 사용하거나 출입문을 공유하는 곳이 39개관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간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입문을 같이 사용하고, 내부에서도 작은도서관과 다른 용도의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표 25] 청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전용 사용 여부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합계
전 용	13	22	20	15	70
겸 용	12	8	9	10	39
합 계	25	30	29	25	109

[자료] 2021년 7월 현장 점검, 단위 개관

-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 최소 면적은 33㎡로, 여기에는 복도나 화장실 등의 공간 면적이 제외됨.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을 높여서 작은도서관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은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재 청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연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표 26] 청주시 작은도서관 연면적 구분

구 분	33㎡ ~ 66㎡	67㎡~99㎡	100㎡ 이상
작은도서관 수	22	35	52

[자료] 청주시립도서관, 단위 개관

[표 27] 상당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작은도서관명	등록	행정동	운영주체	대출관리	공간 사용	연면 적 (㎡)	열람석 (석)	장서
1	모퉁이들 작은도서관	2019	가덕면	모퉁이들사회적협동조합	코라시스	겸용	57	11	1,624
2	인경리작은도서관	2013	낭성면	개 인	-	전용	58	112	2,800
3	생태자연도서관 봄눈	1993	낭성면	쌍샘교회	알파스	전용	260	50	9,000
4	구룡뜰안작은도서관	2016	문의면	개인	-	겸용	107	38	10,215
5	남청주나눔도서관	2014	금천동	남청주침례교회	코라시스	겸용	99	25	8,800
6	쁘레네 별씨 금천	2021	금천동	개인	-	겸용	57	32	4,929
7	해돋이직지도서관	2013	금천동	금천동현대아파트	알파스	전용	229	30	12,000
8	예꿈작은도서관	2007	성안동	임마누엘교회	-	겸용	34	20	3,500
9	청주문화의 집	2021	성안동	청주문화원	-	겸용	119	22	1,300
10	민들레작은도서관	2010	성안동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책꽃이3.0	전용	160	30	7,700
11	너.나.우리도서관	2014	중앙동	개인	책꽃이3.0	전용	88	23	6,000
12	사랑의 도서관	2017	영운동	한국병원	관내대출	겸용	85	16	3,000
13	길동무 도서관	2012	용암1동	개인	-	겸용	99	10	3,000
14	청주상당신협 북카페	2020	용암1동	상당신협	-	겸용	372	8	1,459
15	초롱이네도서관	1999	용암1동	개인	책꽃이3.0	전용	198	80	11,422
16	꿈이있는도서관	2009	용암1동	양무리교회	-	겸용	115	84	1,119
17	디사이플스북카페	2012	용암1동	제자순복음교회	코라시스	겸용	120	40	4,000
18	은하수 작은도서관	2004	용암1동	복있는교회	-	전용	60	20	4,200
19	징검다리아동도서관	2011	용암1동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책꽃이3.0	전용	125	30	10,069
20	대성베르힐 2차	2021	용암1동	대성베르힐 2차	-	전용		24	3,150
21	시티한빛 작은도서관	2020	용암1동	시티프라움1단지	-	전용	82	15	2,000
22	책만보면콩닥	2014	용암2동	광명교회	-	전용	49	30	3,000
23	해오름마을도서관	2012	용암2동	해오름마을	관내대출	겸용	72	6	3,842
24	꿈에린작은도서관	2021	용암2동	동남우미린플하우스	-	전용	185	38	2,770
25	중흥S클래스작은도서관	2019	용암2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Small lib	전용	99	26	3,507

[자료] 2020 문체부 실태조사 자료 및 청주시립도서관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결과 반영

[표 28] 서원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작은도서관명	등록	행정동	운영주체	대출관리	공간 사용	연면적 (㎡)	열람석 (석)	장서수
1	만화도서관	2016	사직동	홍덕문화의집	책꽂이3.0	겸용	648	130	6,641
2	사직 푸르지오 캐슬	2018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코라시스	전용	178	20	2,611
3	인문도서관 무심천	2017	모충동	단체	코라시스	겸용	49	30	4,500
4	비름들작은도서관	2015	수곡동	단체	책꽂이3.0	겸용	100	36	6,000
5	광성작은도서관	2017	수곡동	광성교회	-	전용	73	20	7,000
6	즐거운 오솔길 도서관	2017	남이면	개인	관내대출	겸용	99	60	3,000
7	가마힐데스하임	2018	남이면	가마힐데스아파트	-	전용	228	45	2,500
8	늘푸른도서관	2020	분평동	기관	-	겸용	44	14	1,400
9	라파Bookgallery	2020	분평동	개인	-	겸용	83	25	1,010
10	책동이꿈동이	2011	분평동	분평계룡리슈빌	책꽂이3.0	전용	123	15	4,838
18	퀸덤도서관	2009	산남동	퀸덤아파트	코라시스	전용	180	31	8,891
14	산남대원칸타빌2단지	2010	산남동	대원칸타빌2단지	책꽂이3.0	전용	80	30	7,551
12	두꺼비도서관	2011	산남동	대원칸타빌1단지	코라시스	전용	187	64	7,004
15	산남부영사랑으로	2011	산남동	(주)부영주택	책꽂이3.0	전용	137	48	5,583
17	썬큰작은도서관	2011	산남동	현진에버빌아파트	책꽂이3.0	전용	74	30	10,247
13	산남계룡리슈빌	2012	산남동	산남계룡리슈빌	책꽂이3.0	전용	82	25	7,442
19	한내들작은도서관	2013	산남동	한내들아파트	코라시스	전용	70	24	7,054
11	우리네청춘	2019	산남동	서원노인복지관	클럽	겸용	106	15	2,198
16	산남푸르지오도서관	2011	산남동	산남푸르지오	코라시스	전용	109	42	8,613
20	소나무 작은도서관	2017	사창동	개인	-	전용	73	25	2,500
21	협동사회경제도서관	2018	사창동	사회적협동조합	-	겸용	36	20	1,400
24	글마루작은도서관	2010	성화동	개신주공1단지	알파스	전용	198	80	10,976
29	성화1단지청개구리	2010	성화동	사협)일하는사람들	책꽂이3.0	전용	124	33	9,197
26	성화2단지숨박꼭질	2011	성화동	성화주공2단지	-	전용	156	30	7,000
27	성화4단지꿈터	2011	성화동	삶과교육	책꽂이3.0	전용	125	60	8,432
28	성화5단지파레트	2011	성화동	사)함께사는우리	책꽂이3.0	전용	102	20	11,798
25	꿈키움작은도서관	2012	성화동	개신주공3단지	책꽂이3.0	전용	60	20	8,588
22	바람의 도서관	2016	성화동	충북대병원	관내대출	전용	54	25	4,127
23	개신뜨란채	2016	성화동	개신주공2단지	책꽂이3.0	전용	72	13	9,380
30	S.F청주영어도서관	2020	성화동	우리교회	-	전용	300	70	2,200

[자료] 2020 문체부 실태조사 자료 및 청주시립도서관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결과 반영

[표 29] 청원구 시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작은도서관명	등록	행정동	운영주체	대출관리	공간 사용	면적 (㎡)	열람석 (석)	장서
1	청주사진도서관	2015	우암동	개인	-	겸용	80	20	2,700
2	상상작은도서관	2018	내덕동	교회	코라시스	겸용	99	17	3,000
3	상상다락방	2014	내덕동	청주시문화진흥재단	-	겸용	60	20	1,500
4	두드림 작은도서관	2006	울량동	드림교회	-	겸용	66	32	5,000
5	오병이어 작은도서관	2018	울량동	교회	-	겸용	180	50	3,000
6	글마중 작은도서관	2018	울량동	대원칸타빌 4차	-	전용	245	45	6,000
7	주민도서관 글마루	2004	울량동	북부사회복지관	-	겸용	113	22	7,904
8	새벽날개 작은도서관	2017	울량동	창의역사지리교실	-	겸용	70	20	3,000
9	쁘레네별찌 울량	2012	울량동	개인	-	겸용	73	19	4,675
10	참도깨비작은도서관	2012	울량동	개인	알파스	전용	150	40	12,900
11	남광하우스토리작은도서관	2012	사천동	남광하우스토리	책꽂이3.0	전용	150	41	7,998
12	푸른 작은도서관	2019	사천동	사천 푸르지오아파트	-	전용	90	30	2,500
13	나도밤나무도서관	2015	오근장동	(사협)일하는사람들	클럽	전용	80	30	1,700
14	노리울작은도서관	2015	오근장동	(사협)일하는사람들	-	전용	116	30	4,555
15	내수꿈드림작은도서관	2017	내수읍	개인	-	전용	72	22	1,500
16	주성작은도서관	2018	오창읍	주성교회	클럽	겸용	33	20	1,255
17	생명나무 작은도서관	2020	오창읍	교회	라베리	전용	47	32	1,500
18	더불어가치 작은도서관	2020	오창읍	부영8단지	-	전용	83	20	3,000
19	모아미래도와이드파크	2019	오창읍	모아미래도 3단지	-	전용	61	23	4,920
20	모아시티Book-Café	2017	오창읍	모아미래도 4단지	-	전용	83	20	1,722
21	쌍용규장각도서관	2013	오창읍	쌍용스윗닷홈	책꽂이3.0	전용	73	20	10,640
22	오창대원칸타빌	2011	오창읍	오창대원칸타빌	-	전용	64	25	6,014
23	오창롯데캐슬작은도서관	2019	오창읍	오창롯데캐슬	코라시스	전용	345	20	3,550
24	우림나눔2차도서관	2007	오창읍	우림필유2차	-	전용	163	50	16,914
25	우림필유1차도서관	2006	오창읍	우림필유1차	북매니저	전용	178	50	15,717
26	이안도서관	2009	오창읍	오창이안아파트	책꽂이3.0	전용	144	35	15,000
27	주먹가위보 작은도서관	2021	오창읍	부영5단지	-	전용	156	10	1,500
28	중앙작은도서관	2012	오창읍	중앙하이츠아파트	책꽂이3.0	전용	130	35	7,221
29	한라꿈터작은도서관	2006	오창읍	한라비발디아파트	코라시스	전용	62	30	11,421

[자료] 2020 문체부 실태조사 자료 및 청주시립도서관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결과 반영

[표 30] 흥덕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작은도서관명	등록	행정동	운영주체	대출관 리	공간 사용	연면적 (㎡)	열람석 (석)	장서 수
1	참새와 소나무 그림책작은도서관	2019	오송읍	오송읍사무소	Small lib	전용	250	44	4,200
2	책읽는마을	2007	오송읍	개인	-	전용	117	20	21,000
3	아름다운도서관	2016	오송읍	아름다운교회	-	전용	74	15	8,500
4	도래샘작은도서관	2016	오송읍	오송휴먼시아1단지	-	전용	62	8	4,500
5	오송롯데캐슬 작은도서관	2013	오송읍	오송롯데캐슬	책꽂이3.0	전용	99	36	5,500
6	해오름도서관	2011	오송읍	오송모아미래도	-	전용	46	14	4,922
7	호반다섯소나무 작은도서관	2011	오송읍	오송호반베르디움	-	전용	191	28	10,000
8	쌍용예가작은도서관	2010	강내면	쌍용예가아파트	-	전용	44	30	3,950
9	흥덕코오롱하늘채	2018	옥산면	흥덕코롱하늘채	-	전용	64	24	1,590
10	푸른작은도서관(테크노폴리스)	2019	강서2동	푸르지오아파트	책꽂이3.0	전용	187	12	4,300
11	풀꿈작은도서관	2020	강서2동	청주국제에코롬플렉스	-	겸용	76	26	2,000
12	함께하는문고	2006	봉명1동	함께하는교회	책꽂이3.0	겸용	76	25	3,910
13	봉황온마을	2020	봉명2동	개인	-	겸용	68	24	3,000
14	봉명I'PARK문고	2006	봉명2동	I'PARK 아파트	북매니저	전용	87	40	9,695
15	NGO도서관어울림	2013	운천동	단체	클럽	겸용	81	10	4,500
16	정다운도서관	2012	복대1동	현대2차아파트	-	전용	79	18	11,639
17	금호어울림예다움도서관	2010	복대1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알파스	전용	158	47	11,210
18	청주청년회	2013	복대1동	단체	코라시스	겸용	68	25	3,827
19	쁘레네별씨 복대	2012	복대1동	개인	-	겸용	93	34	9,255
20	꿈쟁이작은도서관	2013	복대2동	예담찬양교회	-	겸용	66	24	1,500
21	상상재	2021	강서1동	교회	-	겸용	60	18	1,192
22	두드림COOP작은도서관	2018	강서1동	두드림협동조합	-	겸용	58	13	2,000
23	가로수마을	2009	가경동	사협)일하는사람들	코라시스	전용	120	40	7,154
24	가경e편한세상문고	2009	가경동	가경 e편한세상A.	책꽂이3.0	전용	152	36	7,006
25	은세계도서관	2013	가경동	기관	책꽂이3.0	겸용	81	24	6,301

[자료] 2020 문체부 실태조사 자료 및 청주시립도서관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결과 반영

4-2-5.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1) 장서수

- 사립 작은도서관 109개관 전체 장서수는 약 62만권으로 1관당 평균 5,700권 정도로 전국 평균 5,301권을 상회하고 있음.(2020년 문체부 실태 조사 자료 및 청주시립도서관 관리 자료 종합).
- 10년 이상 된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1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어서 공간에 비해 장서가 과다하게 많은 수준임. 이용하지 않는 도서에 대해 제적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열람 환경을 개선하고, 모임 등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2) 대출

- 문체부 실태조사에 98개관 중 16개관이 외부로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음.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작은도서관(11), 법인단체(3), 개인(2)이었음. 대출을 하지 않는 사유로는 운영 방침(7), 대출 책수 부족(1), 대출관리 시스템 부재(9)를 들고 있음.
- 대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실제로는 대출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음. 현장 점검 결과 30곳 이상이 대출을 하지 않고 있었음.

[표 31] 대출 여부 및 대출 미 실시 사유

구분	대출함	대출안함		
		운영방침	대출책수 부족	대출관리 시스템 부재
도서관수	82	7	1	9

[자료] 2020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3) 장서관리 프로그램 사용

- 효율적인 장서 관리와 대출관리를 위해서는 장서관리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적임. 문체부 실태 조사 결과 청주시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책꽂이3.0이 25개관, 알파스 5개관, 코라시스3.0 8개관, 코라스넷 7개관이며 그 외 간편한 무료 프로그램인 클립을 사용하는 곳이 4개관, 스몰라이브러리 2개관, 북매니저 2개관, 라베리1.0 1개관 등이었음. 나머지 52개관은 대출을 안 하거나 수기로 관리하고 있음. 도서관리 프로그램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 책꽂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책꽂이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

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고, 무료 프로그램인 클럽을 사용하는 곳이 더 많이 있음. 클럽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수월하지만 인터넷 기반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청주시는 2016년 2,000만원, 2017년 800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28개 작은도서관에 ‘책꽃이’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음.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은 대표자나 운영자가 작은도서관을 임의로 운영하지 않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파트나 교회에 비해 개인, 법인단체가 낮은 비율을 보임.

[표 32] 사립 작은도서관 내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개인	교회	법인	아파트	합계
있다	15	12	14	36	77
없다	7	2	6	6	21
구성률(%)	68.2	85.7	70.0	85.7	78.6

[자료] 2020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는 정기회를 분기에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4회 이상 운영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1~2회 운영에 그침.

[표 33] 운영위원회 연간 운영 횟수

	개인	교회	법인단체	아파트	
1회	5	5	4	15	29
2회	7	5	10	18	40
3회	2	1	0	2	5
4회	1	1	0	1	3
	15	12	14	36	77

[자료] 2020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5) 주말 운영

- 도서관 주말 개관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주말 개관을 중요한 서비스로 여기고 작은도서관 평가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음.
- 2020년 문체부 실태 조사에서 청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중 토요일에 개관 한다고 답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모두 46개관이고 (개인 8, 교회 11, 법인단체 8, 아파트 19), 일요일에 개관한다고 답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22개관(사립5, 교회5, 법인단체 5, 아파트 7)임.
- 아파트 등에서는 독서실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방하고 있고, 전담인력이 없고, 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워 실제 주말 개관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음.

[표 34] 작은도서관 주말 개관 현황

	토요일 개관	일요일 개관	모두 개관
개 인	8	5	5
교 회	11	5	5
법인단체	8	5	5
아 파 트	19	7	7
전 체	46	22	22

[자료] 2020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6) 상호대차 참여

- 상호대차서비스는 이용자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간이 좁은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에게 더욱 폭넓은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서비스임.
-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상호대차를 통해 분관체제를 갖추는 것이 작은도서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2017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12개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알파스를 설치하고, 상호대차 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 2020년 문체부 조사에서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13개관이나 대부분 상호대차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응답한 것으로 보임.
- 청주시립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6곳이고, 실제 상호대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담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2개관(글마루, 봄눈)뿐임. (공립은 봉명작은도서관)

- 상호대차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있어야 함. 글마루작은도서관의 경우 전담인력이 근무하고 있어도 상호대차 이용이 많아 업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해당 도서관 내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대차 신청 받지 않고 있음.

7) 돌봄프로그램 참여, 유료 프로그램 운영 등

- 충북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온마을돌봄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지원 사업을 하면서,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도서관 공간을 이용하여 온마을돌봄사업에 참여하거나, 방치된 작은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온마을돌봄사업 신청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운영자들이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은도서관 활동이 중단되거나 방치되어 아파트 등에서는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함.
- 2021년 온마을돌봄 참여 작은도서관 : 봉황작은도서관, 바름돌, 더불어가치작은도서관, 주먹가위보작은도서관, 산남온에듀케어
-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음.

4-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4-3-1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설치 배경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후 1994년 12월 30일 제55조(노인정 등) 5항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함.
- 이후 2006년 1월 9일 300세대 이상 단지로 강화되었고 2013년 12월 18일 제55조 기존 조항 삭제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으로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조항이 신설되며 500세대 이상 단지로 다시 완화됨.
-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 설치되는 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배경에는 과거 공공도서관 부족으로 인해 민간의 독서문화 욕구 충족이 어려운 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롯된 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지역사회 생활독서문화 공동체 확산 운동이 존재함. 이러한 민간 주도 활동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독서문화 공간 확대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함.

4-3-2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특성

- 작은도서관은 사회 취약 계층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친밀감 형성이 용이하여 밀도 있는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영유아와 부모, 학업으로 바쁜 학생, 육아와 가사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전업주부, 바쁜 직장인 등 봉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접근성과 친밀도에 만족하며 공립 공공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함.
- 이에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독서문화 증진뿐 아니라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100세 시대에 필요한 마을의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의무설치 복리시설 중 남녀노소의 경계가 없는 유일한 커뮤니티 공간이며 이로 인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함.

- 공동주택단지 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젊은 세대를 모으고 다양한 사안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며 서로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시민의 공간적 성격을 포함하기도 함.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전문 용어와 아파트 운영 관련 법규 등을 주민에게 교육하고 알리는 역할을 통해 아파트의 투명한 운영을 촉진함.
-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특정 조직이나 집단의 정보 독점을 막아 민주적인 아파트 운영을 실현하고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임.
- 지역의 관련 이슈를 공유하는 정보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움.

4-3-3.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역할의 중요성

-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주체는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주체, 즉 관리소장님 관리사무소로 보아야 하나 실제로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주체로 역할을 수행함.
-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여부를 비롯해 운영 인력, 예산,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사항으로 동대표의 성향과 의지, 지원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여부와 질이 결정됨.

4-3-4.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작은도서관을 등록한 아파트 중 50세대 미만은 8개 단지, 50세대~1000세대는 26개 단지, 1000세대 이상은 19개 단지이며, 이중 사직동 롯데캐슬아파트는 3개 단지가 총 3,599세대로 가장 규모가 큼.(1, 4, 5단지가 단일 입주자대표회의 체제)
- 아파트 작은도서관 중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곳은 글마루도서관(1일 7.5시간), 남양하우스토리도서관(2명, 1일 4시간씩 교대), 해품터작은도서관(1일 4시간 근무) 뿐임.
- 산남동 소재 작은도서관, 오창1지구 소재 작은도서관 중에는 관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월 20~30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많음.

[표 35] 단지 규모별 아파트 및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전체	작은도서관 등록	전체	작은도서관 등록	
상당구	30	2	9	3	-
서원구	32	12	11	3	한내들,현진,분평리슈빌
청원구	26	10	9	7	오창대원칸타빌
흥덕구	30	3	12	6	가경e편한, 오창모아미래도
합계	118	27	41	19	

[자료] 청주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현황 2021년 6월 기준

- 대부분 아파트는 상근 전담인력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시간별로 나누어 도서관을 지키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하는 곳도 많이 있음.
- 관장이 공석인 경우가 많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돌아가면서 관장을 하는 곳이 많은데, 대부분 1년 뒤에는 그만두고 있어 업무 인계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지고 있음.
- 장서 관리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고, 수기로 관리하거나 대출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지고 있음.
- 대부분 아파트 도서관은 전기세 등 공과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비품 구입비, 통신료 등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표회의를 거쳐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관장 활동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 비용을 아파트 관리에서 얻어지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 장터 운영 임대, 어린이집 임대, 아파트 내 광고 판매)에서 자생단체 지원금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 최근에 조성된 단지는 대부분 단지 규모도 크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음. 작은도서관과 독서실을 별도로 조성하여 공간이 우수한 곳이 많음.

4-4. LH 임대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 청주시에 등록된 LH임대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은 9개소임(성화4, 가경1, 오송 1, 율량 3)
- LH 임대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LH주택관리회사에서 결정하고 있음. 임대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의 관리도 LH에서 결정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음. (무상사용, 별도 지원 없음)

[표 36] 청주시내 LH임대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위치	단지	운영기관	시설	비고
성화지구	1단지	(사) 일하는사람들	청개구리작은도서관	
	2단지	-	숨박꼭질작은도서관	운영 안함
	4단지	(사) 일하는사람들	꿈터작은도서관	LH코디
	5단지	(사) 함께사는우리	파레트작은도서관	LH코디
가경지구	휴먼시아1단지	(사) 일하는사람들	가로수마을작은도서관	LH코디
오송읍	휴먼시아1단지	휴먼시아1단지	도래샘작은도서관	LH코디
율량2지구	LH-율량1단지	(사) 일하는사람들	너도밤나무작은도서관	
	LH-율량2단지	(사) 일하는사람들	노리울작은도서관	LH코디
	LH-율량9단지	(사) 일하는사람들	참도깨비작은도서관	

- LH에서 2021년 7월부터 청주시내 5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음(꿈터, 파레트, 가로수마을, 도래샘, 노리울)
- 1일 8시간, 2021. 7. ~ 2022. 2 근무
- LH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1단계로 향후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021년 전북 익산에 지원센터 개소하였음.

4-5 그외 사립 작은도서관

1) 기관단체 운영 작은도서관

- 노인복지관 - 은세계작은도서관(가경노인종합복지관), 우리네청춘(서원노인종합복지관)
- 종합복지관 - 징검다리아동도서관(용암종합사회복지관), 주민도서관 글마루(북부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늘푸른도서관(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 한부모가정거주시설 - 해오름마을작은도서관 (해오름한부모가정거주시설)
- 병원도서관 - 바람의도서관(충북대병원), 사랑의도서관(한국병원)
- 기타 보조기관 - 청주문화의집, 만화도서관(흥덕문화의집), 어울림도서관(충북NGO센터), 풀꿈작은도서관(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
- 일부 보조 기관 - 민들레작은도서관(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 기타 - 청춘(청주청년회), 상상다락방(청주시문화진흥재단)

2) 교회 작은도서관

- 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모두 21개소이다. 대부분 교회 내에 서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교인 이외에는 이용이 어려움. 교회와 입구가 분리된 곳은 5곳임.
- ※ 봄눈(낭성면), 은하수도서관(용정동), SF청주영어도서관(성화동), 생명나무작은도서관(오창읍), 아름다운도서관(오송읍)
- 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음.

3)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

- 개인이 독서문화 진흥에 뜻을 두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자의 의지와 전문성이 높고, 대부분 운영 기간이 긴 편이나,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음
-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 구분됨.
- 개인 운영 작은도서관은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많음.

4-6.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4-6-1. 관장의 신분과 재직 기간

-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지위를 살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과 교회가 운영하는 곳은 관장이 대표자인 경우가 많고,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공간 운영자가 관장을 맡고 있음.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가 관장을 맡는 경우가 17곳, 운영자가 관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20곳이고, 봉사자가 관장을 맡고 있는 경우도 5곳임.
- 관장의 재직 기간을 살펴보면 6년 이상 장기간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22곳으로 22.4%를 차지하는 반면, 1년이 안 된 곳은 27개관(27.6%), 2년이 채 안 된 곳이 48개관(49%)를 차지하여 절반 가까이가 2년을 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운영자가 관장을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1~2년 내에 교체가 되고 있음.
- 관장의 재직기간이 짧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도서관 운영이 형식적인 관리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관장이 봉사자인 경우가 많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경우가 많음.

[표 37]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의 지위

	개인	교회	법인단체	아파트
대표자(관수)	17	13	4	17
운영자(관수)	5	1	16	20
봉사자(관수)	0	0	0	5

[표 38]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의 재직 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2년~	3년~5년	6년~10년	11년 이상
관수	27	21	9	19	12	10
비율(%)	27.6	21.4	9.2	19.4	12.2	10.2

[표 39]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관장의 재직 기간

구분	1년미만	1년~2년	3년~5년	6년~10년	10년 이상	합계
관수	13	16	5	6	2	42
비율(%)	31.0	38.1	11.9	14.3	4.8	100

[자료] 이상 2020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4-6-2. 상근 직원 및 사서 자격증 여부

- 2020년 문체부 실태조사에서 상근 직원이 1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작은도서관이 56개관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관장이 운영을 겸하고 있는 경우나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작은도서관을 같이 관리하고 있어도 상근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임.
- 직원의 사서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4곳이 사서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현장 점검에서는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확인할 수 없었음.

[표 40] 사립 작은도서관 직원 및 봉사자 현황

구분	상근직원	시간제직원	정기자원봉사자	직원중 사서
사립	14	1	15	0
교회	12	1	11	3
법인	17	3	10	0
아파트	13	3	37	1
합계	56	8	73	4
비율(%)	57.1	8.2	74.5	4.1

[자료] 2020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수

4-6-3. 전담인력 운영의 실제

- 전담인력은 근로계약을 맺고 적정한 보수를 받으며 도서관 운영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자나 운영자는 봉사자로 분류.
- 연구 대상인 109개 사립 작은도서관 중 근로계약을 맺고 전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 4곳 (글마루작은도서관, 봄눈, 남광하우스토리, 해품터)뿐임.
- 산남동과 오창에는 일찍부터 아파트 단지마다 주민들이 작은도서관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자체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음. 이 지역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관장에게 활동비로 월 20~30만원을 지급해왔음.
- 일부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 관장에게 활동비로 월 20~3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4-6-4. 외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 여성인턴 작은도서관 매니저

-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인턴’ 사업. 충북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작은도서관 매니저’를 양성하고, 작은도서관에 파견하고 있음.
→ 1일 7시간, 2021. 4. 5~ 11. 29(약 8개월).
- 배출된 여성인턴은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여성인턴이 필요한 곳에 배치해왔으나, 2021년에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배치하였음.
 - ※ 2021년 여성인턴 파견 (9명) - 만화작은도서관(흥덕문화의집), 은세계작은도서관(청주가경노인복지관), 봄눈(쌍샘생태자연도서관), 노리울작은도서관, 해피레인보우(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화꿈터작은도서관, 퀸덤작은도서관, 성화청개구리작은도서관, 여성가족과
- 작은도서관 인턴 경험을 살려 계속 작은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고용이 이어지는 곳은 거의 없음.(글마루도서관 전담인력 1명)
- 공립과 사립에서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곳이 극히 적고, 공공도서관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선발할 때 고려하지 않고 있음.

2) 청년일자리 지원

-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신청.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
 - ※ 참새와소나무그림책도서관(오송), 두꺼비생태도서관 등

3) 시니어일자리 지원

- 각 지역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일자리 개발로 작은도서관 파견 사업을 하고 있음.
-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들은 장서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아두었다가 순회사서에 장서관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대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어렵고, 단순한 청소, 지킴이 역할만 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비하여 정작 작은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비는 없는 아이러니.

4-7.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

4-7-1. 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하여 마을 단위 책읽는 문화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오창작은도서관모임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작은도서관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제6장 작은도서관협의회

제20조(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를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2.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정보 보급과 운영 지원
4. 그 밖의 협의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② 협의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자 과반수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회장과 총무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운영규정) ① 협의회는 그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7-2.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결성과 활동

- 2010년 청원군 작은도서관협의회(초대회장 홍근옥 들꽃방 작은도서관 관장) 결성.
- 2011년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초대회장 김용규 글마루작은도서관 관장) 결성.
-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통합에 따라 2015년에 통합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가 결성되었음. (초대 회장 오혜자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총무 성기정 노리울작은도서관장)
- 2016년 작은도서관 책축제를 오창호수공원에서 처음으로 시의 예산 지원 없이 개최, 2017년부터 작은도서관 책축제(1,600만원), 작은도서관 소식지 제작(1,200만원) 지원이 시작됨.
- 2021년 현재 청주시 작은도서관 중 50개관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음. 청도협은 회원 도서관들이 밴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청주시립도서관과 협력하여 청주시 독서대전에 참여하고 있고, 매년 책잔치를 진행하고 있음.
- 청도협은 협의회 차원에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에는 문체부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청도협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원 도서관에 월 1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음.
- 작은도서관들이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해도 재정여건상 월 1만원의 회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음.

〈 산남동작은도서관 협의회 이야기 〉

- 청주시 산남동은 2006년 8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했음.
- 2011년 도사모 소속 시의원의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젊은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작은도서관이 활발해졌음. 8개 아파트 단지 중 7개 단지에 작은도서관 개관.
- 2016년 지역구 도의원의 노력으로 작은도서관이 대부분 리모델링을 하였음(도비 지원)
- 산남동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정보를 교환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균형을 맞추고 있음. 운영비로 월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수준임.
- 작은도서관이 일찍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모임을 갖고 정보 교류, 업무 협조를 해왔고, 산남동 지역의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해왔음.
- 최근들어 초기 운영진 열정 소진, 젊은 봉사자 취업 등으로 운영자들의 활동 기간이 짧아지고 있음. 안정적인 전담인력의 확보가 절실함.

〈 오창작은도서관모임과 청원작은도서관협의회 히스토리 〉

- 오창과학산업단지는 199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나, IMF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진척되지 않다가, 세종시 건설 발표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힘입어 활기를 띠기 시작함. 2006년 2월 대우이안아파트를 시작으로 6월까지 6개 단지가 연이어 준공(쌍용 스위트홈, 우림필유, 오창 중앙, 한라비발디, 코아루),
- 과학산업단지 특성상 젊은 층이 많이 입주하였으나 주변에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였음. 2006년 9월 한라비발디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우림필유1차, 대우이안, 우림필유 2차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개관됨.
- 초기에 청원교육문화연대 주도로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오창 호수공원에서 마을축제를 개최하며 연대기반을 다지고, 이후 청원군작은도서관협의회를 만들어 작은도서관 간에 교류를 확대하였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8개 아파트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해옴.
- 2007년 5월 12일 청원교육문화연대가 주최한 제1회 오창호수공원 책축제에 참여 오창 작은도서관 모임을 결성하였고, 11월에는 제1회 오창작은도서관학교를 개최하였음(우림필유1차작은도서관)
- 2008년 5월 17일 제2회 오창호수공원 책축제를 열고, 9월~10월 제2회 오창 작은도서관학교 개최 (코아루아파트도서관)
- 2009년 5월23일 제3회 오창호수공원 책축제를 열고, 청원 작은도서관모임을 결성하였음.
2009년 10월 제3회 작은도서관학교를 오창, 강외, 강내에서 개최하였음.
- 2010년 청원작은도서관협의회 결성. (들꽃방어린이도서관, 우림1차작은도서관, 우림2차작은도서관, 쌍용예가도서관, 한라비발디작은도서관, 강외새마을문고, 책읽는마을도서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월 20~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초기 운영자들의 열정이 소진되었고, 젊은 봉사자들은 취업으로 이탈, 중년 봉사자들은 서류 업무의 스트레스로 이탈하여 관장이나 운영자들이 1년 기간으로 바뀌고 있음.
- 잦은 운영자 교체로 네트워크가 와해되어 작은도서관 간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음.

4-8.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4-8-1.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작은도서관은 전년도(2019년) 대비 198개관 감소한 6,474개관이며, 이중 공립이 1,504개관, 사립이 4,970개관으로 나타남.
- 공립 작은도서관 1,504개관 가운데 1,011개관(67.2%)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며, 493개관(32.8%)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 위탁 운영 도서관의 비율이 매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사립 작은도서관은 설립 주체별로 아파트가 1,805개관(36.3%) > 개인 및 민간단체 1,383개관(27.8%) > 종교 시설 1,161개관(23.4%) > 새마을문고 330개관(6.6%) > 법인 설립 291개관(5.9%)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립과 사립 중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으로 휴관 도서관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작은도서관 수가 줄어든 특징이 있으며 사립 중 법인 설립 작은도서관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21개관(7.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3] 전국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구분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관수	%	관수	%	관수	%
공립	지자체 직영	982	68.5	1,007	68.2	1,011	67.2
	민간 위탁	452	31.5	470	31.8	493	32.8
사립	개인 및 민간단체	1,342	27.4	1,417	27.3	1,383	27.8
	새마을문고	368	7.5	356	6.8	330	6.6
	종교 시설	1,196	24.4	1,261	24.3	1,161	23.4
	법인	264	5.4	270	5.2	291	5.9
	아파트	1,727	35.3	1,891	36.4	1,805	36.3
합 계		6,330	100	6,672	100	6,474	100

[자료]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4-8-2.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 이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비교를 위한 공통자료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함.
- 비교할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유사 기초자치단체 분류를 적용하여 청주와 같이 분류되는 도시 중 경기도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그룹에 있는 도시를 유사단체¹⁵⁾ 평균으로 정리하였음.

1)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비교

- 청주시의 공립 작은도서관의 비율은 3.7%로 전국 평균 23.2%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18.8%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청주시에 실제 등록된 공립 작은도서관은 6개관임을 감안해도 공립 작은도서관 구성에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음.

[표 44]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구 분	공 립		사 립		전 체 개 소 수
	개 소 수	비 율	개 소 수	비 율	
청 주 시	4	3.7%	105	96.30%	109
부 천 시	22	25.9%	63	74.10%	85
성 남 시	30	24.4%	93	75.60%	123
화 성 시	7	4.3%	154	95.70%	161
천 안 시	15	23.4%	49	76.60%	64
전 주 시	29	23.0%	97	77.00%	126
포 항 시	41	89.1%	5	10.90%	46
창 원 시	50	50.5%	49	49.50%	99
김 해 시	2	3.7%	52	96.30%	54
유사단체 평균	17		72		88
전 국	1,504	23.2%	4,970	76.80%	6,474

[자료]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15) 행정안전부의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의 유사 기초자치단체 분류 ‘시-1(16개)’에 속하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를 대상으로 함.

2) 작은도서관 주요 현황

- 작은도서관의 평균적인 건물 면적은 유사 단체 평균 정도이나, 수도권에 비해 조금 넓은 편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좁은 편임. 좁은 가운데 열람석만 많은 것으로 조사된 점이 이색.
- 장서수는 평균 6,302권을 소장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 장서수보다 많으나 유사단체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지난 1년간 증가한 장서의 수의 지표는 장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 매우 중요함. 전국 평균 523권과 유사단체 평균 546권에 못 미치는 445권으로 조사됨.

[표 45]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주요 현황

구 분	건물면적(㎡)	열람석	장서수(권)	지난1년간 장서증가수(권)
청 주 시	118	30	6,302	445
부 천 시	110	32	7,509	617
성 남 시	99	31	7,409	503
화 성 시	108	35	7,395	1,131
천 안 시	107	26	5,504	526
전 주 시	128	29	5,852	337
포 향 시	141	26	7,014	233
창 원 시	151	28	11,105	645
김 해 시	131	25	8,098	497
유사단체 평균	115	30	7,236	546
전 국	111	29	6,265	523

[자료]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3) 작은도서관 인력 및 이용 현황

- 청주시 작은도서관에서 직원을 배치하는 비율이 0.7명으로 나타남. 직원 중 사서자격을 갖춘 곳은 4개소로 확인됨. 포항시와 창원시의 경우 대부분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 김해시와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고양시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도서관의 직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주시의 경우 직원의 비율이 저조한 반면 정기적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 3.9명과 유사단체 평균 4.8명을 넘는 5.6명으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이용자 수에 있어서는 연간 총 이용자 수가 하루 11.8명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총 이용자 수가 2591.6명으로 조사됨. 이는 전국 평균 3,396명과 유사단체 평균 3825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함.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연간 평균 996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평균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이며 사립 법인이 설립한 기관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연간 이용자 수가 1,498명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인력 및 이용 현황 비교

구 분	인 력 (명)			이용자 (명)		대출권수
	직원현황	사서자격	정 기 자원봉사자	일평균	연간 합계	
청 주 시	0.7	0.1	5.6	11.8	2,591	1,286
부 천 시	0.8	0.3	3	21.1	3,848	3,264
성 남 시	0.8	0.2	4.8	15.3	2,252	1,916
화 성 시	0.6	0.1	6.3	15.8	2,663	2,660
천 안 시	0.7	0.2	2.5	13.2	2,983	2,329
전 주 시	0.5	0.2	3.2	10	2,595	1,497
포 항 시	0.7	0.4	1.2	20.3	3,700	4,239
창 원 시	1	0.4	4.4	16.4	4,170	4,401
김 해 시	1	0.4	6.4	18.2	7,644	4,040
유사단체 평균	0.7	0.2	4.8	13.7	3,825	2,444
전 국	0.6	0.1	3.9	12.8	3,396	2,084

[자료]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4) 장서 관리 및 공공도서관 연계

- 청주시 작은도서관의 83.5%는 외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서관은 56%에 그쳐 전국 평균을 밑돌며 특히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5.7%보다 많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청주시는 공공도서관과 연계할 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작은도서관은 27.5%로 나타났으며 상호대차를 실시하는 비율도 16.5%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16)
- 유사 지방자치단체 중 포항시, 김해시, 창원시, 안양시 등은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가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더불어 연간 대출권수가 상위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공공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사용, 상호대차 서비스 사용의 여부가 연간 대출권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표 47]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장서 관리 및 대출 현황

구 분	장서 관리		공공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상호대차 참여
	외부대출 실시	장서관리 프로그램 사용		
청 주 시	83.5%	56.0%	27.5%	16.5%
부 천 시	83.5%	64.7%	36.5%	29.4%
성 남 시	82.1%	66.7%	25.2%	18.7%
화 성 시	82.0%	75.8%	29.2%	9.9%
천 안 시	79.7%	54.7%	9.4%	1.6%
전 주 시	59.5%	50.0%	22.2%	21.4%
포 항 시	91.3%	89.1%	89.1%	89.1%
창 원 시	82.8%	73.7%	60.6%	64.6%
김 해 시	96.3%	85.2%	74.1%	74.1%
유사단체 평균	80.4%	65.7%	31.5%	24.5%
전 국	78.4%	58.3%	30.6%	23.0%

[자료]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16) 청주시의 경우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으로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공립 1개관, 사립 2개관뿐임.

5) 연간 운영 예산 비교

- 청주시 작은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 평균은 1,916,714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2,739,175원)은 물론 전국 평균(2,518,720)평균에도 많이 못 미침. 도서구입비 예산의 차이는 1년간 신규도서 구입량에서도 나타남.
- 청주시의 경우 인건비(7,254,855원)가 유사단체(9,243,066원)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운영비와 이를 합산한 연간 예산 합계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립의 경우 실제 지급하지 않지만 기대치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를 12,000,000원(월 1,000,000만원)으로 입력한 경우가 많음. 공립이 적고 사립이 대부분인 청주시의 경우 실제와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됨.

[표 48]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관당 연간 운영 예산 현황

구 분	예산 운영 현황 (1관당 연간 평균, 단위 원)			
	도서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포함)	합계
청 주 시	1,916,714	7,254,855	4,603,202	13,774,772
부 천 시	3,708,905	14,153,267	5,356,744	23,218,917
성 남 시	2,000,786	10,652,074	5,661,829	18,314,688
화 성 시	3,869,487	4,221,062	3,821,733	11,912,282
천 안 시	3,813,967	10,918,834	3,535,525	18,268,326
전 주 시	2,104,552	7,291,176	3,782,041	13,177,768
포 향 시	2,384,783	21,406,921	3,914,043	27,705,747
창 원 시	4,088,307	25,065,921	7,395,685	36,549,913
김 해 시	2,595,783	18,877,811	4,743,719	26,217,313
유사단체 평균	2,739,175	9,243,066	4,941,735	16,923,976
전 국	2,518,720	6,699,653	4,103,524	13,320,915

[자료]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6)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청주시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53.3%, 유사단체 평균 57.8% 보다 높은 60.6%의 운영 비율을 나타냄. 특징으로는 비교적 문화프로그램의 건수, 횟수, 참가자 수는 유사단체의 평균값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실시 횟수와 참가자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를 통해 독서 관련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작가와의 만남,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거나 단일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의 종류보다 횟수와 누적 참가자의 수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됨.

[표 49] 전국 주요 도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관당 평균)			문화프로그램(관당 평균)		
		건수	횟수	참가자	건수	횟수	참가자
청 주 시	60.6%	1.9	24.4	207	3.8	24	119
부 천 시	48.2%	5.3	40.9	375	3.7	38	309
성 남 시	44.7%	3.3	27.9	208	3.9	30	235
화 성 시	79.5%	3.5	21	192	4.1	25	203
천 안 시	34.4%	4.5	23.6	187	3.7	31	142
전 주 시	65.1%	3.8	29.1	373	4.8	27	297
포 향 시	67.4%	2	8.4	71	1.5	4	32
창 원 시	70.7%	3.6	20.1	194	9.7	66	651
김 해 시	87.0%	3.5	17.3	171	4.5	29	219
유사단체 평균	57.8%	4	25.4	217	4.6	29	237
전 국	53.3%	1.4	11.3	97	1.8	12	106

[자료]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4-9.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 요약

- 공립 작은도서관은 관리 공백 상태에 있음. 설치 부서에서 기본 운영비를 확보하고 공익요원, 인턴을 배정받거나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자원봉사자, 시니어일자리 등으로 관리하고 있음. 도서관 장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여 도서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 작은도서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계획임.(봉명작은도서관)
-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시립도서관의 휴관 조치로 작은도서관이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 이용자의 연결 고리가 끊어져 있어 개인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이끌어온 초기 운영자들의 열정이 소진되고,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도서관 운영이 침체되고 있음. 도서관을 이끌어갈 역량이 있는 인력이 없이, 자원봉사자 일자리 참여자들이 자리만 지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 오래도록 봉사활동을 해온 관장들이 업무 부담을 느껴 1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관장들의 업무기간이 짧아졌고, 새로운 관장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담이 반복되고 있음. 결국 도서관 운영 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근무기간이 짧아지면서 장서 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출 관리 등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곳이 많음.
-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자들이 지역 돌봄 등 외부 지원 사업에 치중하여 작은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본래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5.

청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5-1. 작은도서관 정책 변화

5-2. 작은도서관 담당 업무

5-3.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

5-4.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5-5. 작은도서관 지원의 문제

5-1. 작은도서관 정책 변화

- 1994년 문고 활성화 정책 법제화 이후 청주시는 등록된 문고에 대해 1년에 2개소 400만원을 도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음 등록 문고가 늘어나고 문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2006년부터 도서지원금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음.
- 2010년 청주시의회에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약칭 도사모)이 만들어지고, 도사모의 주장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2011년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지정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 시작함.
- 2013년 청원군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시작함.
- 2014년 청원군이 작은도서관 책잔치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시작함.(85P 표로 정리)

5-2. 작은도서관 담당 업무

- 2014년 7월 시군 통합 이후 청주시립도서관과 오송도서관 체제가 되면서 작은도서관도 청주시립도서관(상당구, 청원구)과 오송도서관(서원구, 흥덕구)로 나누어 관리하였음.
- 2017년 7월 작은도서관 업무의 통합을 위해 청주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에 작은도서관 담당 주무관 1명을 배정하고 청주시 전체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를 도서관정책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음.
- 순회사서 2명을 공무원으로 채용, 전체 작은도서관 현장 업무를 지원함.

〈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에 대한 현장의 소리 〉

- ▷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1명이라 통화하기가 어렵고, 연결돼도 자세한 안내가 부족함.
- ▷ 오창에서는 시립도서관 다니기가 매우 어려움. 승용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멀고, 택시비도 무척 많이 나옴. 오창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오창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업무를 보고, 협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람.
- ▷ 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했다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자꾸 바뀌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기 바람.

[표 52] 청주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변천

년도	주요 지원 내용
2006년 이전	- 문고지원 법제화 이후 등록 순서대로 반기별로 1개관에 400만원 도서구입비 지원
2006년 ~2010년	- 도서지원금 10개관에 200만원씩을 지원.
2011	- 작은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시작(관당 100만원, 3개소) 이후 지원 금액 변동없이 대상을 10개소로 늘려 계속 이어짐.
2012	- 운영비 대신 자원봉사 실비 보상 예산 69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확보하여 18개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38명에게 지급.
2013	- 충청북도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도서구입비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 시 작. 도비 30% 매칭. 도서대여로 실시. - 청원군, 작은도서관 25개소에 운영비 지원(1억 1천 9백만원)
2014	- 통합과 함께 청주시립도서관과 오송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를 분담. - 청원군에서 작은도서관 책잔치 운영비 지원 -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을 포함(48개관, 195,996천원) - 순회사서 지원 시작(7개관, 19,430천원) -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 지원(20개관, 16,167천원)
2015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시작 (시군통합 이후 청원군의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을 승계), 평가후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기 시작. (A등급 2개소 500만원, B등급 6개소 400만원, C등급 7개소 300만원)
2016	- 도서관리프로그램 보급 ‘책꽃이3.0’ 20개소 (20,000천원) - 작은도서관 책잔치 지원 시작(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3,000 천원)
2017	-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를 청주시립도서관 정책팀으로 통합하고 전담인력 1명 확보 -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정사업 (공공-작은도서관 간 통합도서관 구축) 12개소 6억 → 작은도서관 자료 DB구축,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및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2018	- 운영비 일몰제 적용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로부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제안받고 2018년부터 적용함(운영비 예산을 증액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때까지 운영비에 대해 3년 이상 계속 받아온 작은도서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독서동아리 운영비 보조 시작 (개소당 1,000천원 지원, 5개소) - 작은도서관 소식지 지원 시작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12,000천원)
2021	- 작은도서관 소식지 발행 예산 삭감 - 사업비 일몰제 적용 폐지

5-3.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

5-3-1. 외부 후원과 도의원 사업비 지원

- 문체부에서는 2006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고, 2019년부터 생활SOC 지원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청주시는 신청을 한 적이 없음.
- 청주시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외부 지원은 모두 민간단체(2007년 한겨레, 삼성, 책사회 후원 ‘희망의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고맙습니다.작은도서관’ 사업)과 국회의원 특별교부금에 대한 시비 매칭, 도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에 의한 것임.

[표 53] 청주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 지원 내역

년도	작은도서관	예산	내역	년도	작은도서관	예산	내역
2007	초롱이네도서관	현물	한겨레, 삼성, 책사회 후원	2015	쌍샘생태도서관	70,000	국비 50%, 시비 50%
	참도깨비도서관				65,000	도비 30,000, 시비 35,000	
	들꽃방도서관				20,000	도의원 사업비	
2009	드림작은도서관	200,000	고맙습니다.작은도서관		산남 한내들	20,000	도의원 사업비
2010	개신 글마루	90,000	도비, 시비 매칭	2016	성화 꿈터	15,000	도의원 사업비
	주민글마루	70,000	국비, 시비 매칭		성화 청개구리	15,000	도의원 사업비
2012	숨박꼭질	30,000	도의원 사업비		산남 쿨덤	20,000	도의원 사업비
	파레트	10,000	도의원 사업비		산남 푸르지오	20,000	도의원 사업비
	푸른숲	10,000	도의원 사업비	2017	초롱이네도서관	50,000	도의원 사업비
	우리들	20,000	도의원 사업비		파레트	20,000	도의원 사업비
맹꽁이도서관	70,000	도의원 사업비	도래샘		20,000	도의원 사업비	
민들레	100,000	국비지원	산남 대원1차		20,000	도의원 사업비	
해피레인보우	55,000	국비지원	산남 대원2차		20,000	도의원 사업비	
2013	금천 현대	100,000	도비매칭 5:5		책동이꿈동이	20,000	도의원 사업비
	푸른숲	10,000	도의원 사업비	2018	호반다섯소나무	20,000	도의원 사업비
	개신글마루	60,000	도의원 사업비		숨박꼭질	20,000	도의원 사업비
2014	파레트	32,000	국비 50%, 도비 50%	2019	은세계도서관	95,000	고맙습니다.작은도서관
	쌍샘생태도서관						

[자료] 청주시립도서관, 단위 천원

5-3-2. 리모델링 지원의 문제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도의원 재량사업비에 의존한 결과 도의원의 관심에 따라 산남동, 성화개신죽림동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외부에서 지원금이나 충북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된 공간도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작은도서관 운영을 못 하고 방치된 사례가 있음.

1) 사례1 : 드림작은도서관

- 폐관되는 서문동사무소 건물 1층에 푸드마켓을 설치하여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면서, 2층에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사)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됨.
-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드림작은도서관’ 을 개관하였으나,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익요원을 배정받아 운영하다가 결국 폐관하고 현재 청주자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2) 사례2 : 숨바꼭질작은도서관¹⁷⁾

- 청주시 서원구 성화지구 2단지 LH임대아파트 내에 조성된 작은도서관
- 지역구 도의원을 통해 2012년 3,000만원, 2019년 2,0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하였음.
-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서관 운영인력 확보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도서관을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의욕을 보인 개인에게 위탁하였음. 위탁운영자들은 충북교육청 행복교육지구 돌봄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운영하였음. 작은도서관 이용을 바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2021년 돌봄사업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포기하여 현재 방치된 상태임.

17) 등록된 이름 기준임.

<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제46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19.09.25 수요일)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숨박꼭질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와 관련하여

- **이재숙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숨박꼭질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2,000만 원이 올라오게 됐는지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기환** 도의원님들 재량 사업으로 해서 벌써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숨박꼭질 작은도서관, 서원구에 있는 그 도서관의 도배나 장판, 노후 시설 리모델링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이재숙 위원** 작은도서관들이 기능보강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 도에서 재량 사업비가 내려와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3년도에 숨박꼭질 도서관에 3,000만 원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이게 100프로 도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사업대상이 아주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어떤 곳을 기능보강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100프로 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재숙 위원** 기능보강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냥 받아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궁색한 답변이지만 도비 100프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도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재숙 위원** 혹시 보시면서 거기가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셨나요?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기환** 지금 아무래도 저기 한 데…….
- **이재숙 위원** 2013년도에 3,000만 원 들여서 기능보강을 다 한 사업인데 6년 됐습니다. 6년 만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바닥공사, 페인트공사, 책장·책상 이렇게 내역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예산도 있지 않나 싶고. ‘도서관을 정해서 내려와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맡긴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작은도서관도 평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데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 작은도서관 지원

5-4-1. 작은도서관 평가와 차등 지원

- 청주시는 매년 지원 신청을 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음.
-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 ① 청주시립도서관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 평가신청서와 함께 공고
 - ② 지원을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평가신청서에 명시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 신청
 - ③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평점.
 - ④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득점 순에 따라 3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
 - ⑤ 현장 평가는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여 3일간 현장 방문 후 평가표 작성

5-4-2.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작은도서관이 해당 평가 점수만 확인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비와 도서구입비, 문화프로그램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실시.
- 사업비 지원 - 현장 평가를 통해 22개관을 선정하고,
 - A등급(5개관) 400만원의 97%, B등급(17개관) 300만원의 97% 지원
- 도서구입비 지원(시비) - 1차 정량평가 고득점순 28위까지 지원(관당 400만원의 97%)
- 도서대여비 지원(도비 매칭 사업) - 구입희망도서 목록을 받아 시립도서관에서 구입, 라벨 작업을 거친 뒤에 도서 대여 형식으로 지원. 35개관(29위~63위, 관당 187.5만원). 2021년에는 63위가 2개관이 되어 반씩 나누어 지원, 64개관.
- 문화프로그램 지원 - 10개관, 관당 97만원. 신청에 따라 지원, 사업비 지원관 제외.
- 독서동아리 지원 - 5개관, 관당 97만원, 문화프로그램과 중복 안 됨.
- 2021년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259,560천원임.

[표 55] 2021년 청주시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현황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지 원 내 용
사업비 지원(A등급)	19,400	평가 상위 5개소 (개소당 400만원 97%)
사업비 지원(B등급)	49,470	평가 상위 17개소 (개소당 300만원 97%)
도서 및 서가 구입비 지원	108,640	평가 상위 28개소, 400만원 97%
도비 지원 장기도서대여	67,500	평가 상위 29위~63위 36개소 개소당 187.5만원, 신청 목록에 따라 일괄구입 배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9,700	10개소 97만원. 사업비와 중복 지원 안 됨
독서동아리 육성 지원	4,850	5개소 97만원. 사업비와 중복 지원 안 됨
작은도서관 책 잔치 지원	15,520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신규작은도서관 도서정리용품 지원	2,500	신규 등록 작은도서관, 신청시 지원
합 계	277,580	

[자료] 2021년 청주시 본예산 일반회계

5-4-3. 순회사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작은도서관 인력 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신청은 공공도서관 별로 받고 있지만, 청주시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음.

※ 2021년 전주시 10명, 김해시 6명 배정

- 청주시는 2015년부터 순회사서 2명을 공무원직으로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에서 미리 신청을 받고 순서에 따라 방문해서 작업을 처리함
 - 업무 경험이 적은 곳이 많아 신간 등록, 바코드 입력 등 단순 업무 지원이 많음.

5-5. 작은도서관 지원의 문제

5-5-1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

-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음. 특히 도서관을 시험 공부용 독서실로 인식하고, 현대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낮음. 주민들의 높아진 도서관 이용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음.
- 공간 조성, 시설 개선에만 관심을 가질 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아 도서관 인사가 행정직 위주이고, 인력 배정에 매우 소극적임.
- 법령의 규정,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민간 운영자에 대한 시혜적인 성격으로 여기는 의식이 문제임. 국·도비 매칭이 없어 자체 예산 편성에 매우 소극적임.

5-5-2. 도서관 인사와 작은도서관 담당 조직

- 전체 도서관 업무를 이끌고 있는 평생학습본부장과 시립도서관장이 수시로 바뀌어 조직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에서 공공도서관 업무와 작은도서관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사업 및 예산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2021년 7월 기준으로 청주시에 공립 6개관, 사립 120개관이 등록되어 있지만 담당 직원은 주무관 1명 뿐이고, 담당 직원의 근무 기간도 짧아 현황과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2017년 5월 전담 직원 배치 후 4명째 바뀜)

[표 56]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인사 현황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시립도서관장 (행정직)	호수도서관장 (행정직)	오송도서관장 (사서직)	비고
2018. 7.	공 석	김 수 자		이미우	
2019. 1.	김 천 식	송 해 익		-	
2019. 9.	-	김 기 환	임 채 영	-	신설
2020. 1.	윤 순 진	유 서 기	박 종 철	-	
2020. 9.	-	김 미 수	-	-	
2021. 1.	전 용 운	박 종 철	이 미 영	-	
2021. 7.	풍 경 섭	연 제 완	이 미 영	유 현 주	

5-5-3. 작은도서관 정책의 부재

1) 종합적인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계획이 없음.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에는 작은도서관 조성,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등을 시장의 책무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음.
- 정부에서 2019년부터 생활SOC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음.
-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한 계획이 없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모 사업에 작은도서관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적 편차가 크고, 사각지대가 많음.

[표 57] 청주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현황

	사업명	추진부서	진행 계획	작은도서관 입지
1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	부적정
2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	부적정
3	남 일 면	농업정책과	작은도서관 전용	적정

2)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묶여 있음.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업무를 같은 팀에서 담당하고 있어, 예산과 조직에서 파이 나누기 게임이 되고 있음.
- 공공도서관 신설에 따라 추가되는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예산과 조직이 묶여 있음.

3)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음.

- 작은도서관이 늘어난 가운데, 담당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음.
- 1년에 한번 지원 신청을 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방문 평가만을 거치고 있음.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

5-5-4.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

1)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기준이 없음

- 각 부서에서 시립도서관과 사전 협의나 운영계획도 없이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자체 사업으로 조성해왔음.
- 맹꽂이도서관과 두꺼비도서관은 공원정책과에서, 평생학습관 도서관은 평생학습과에서, 봉명 작은도서관은 봉명1동주민센터에서 각각 조성하고 공립으로 등록하여 운영.
- 시립도서관에서는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상태에서 관리가 되지 않음.

2) 공립 작은도서관 전담인력 부재로 활성화 안 됨

-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전담인력으로 사서나 사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함에도 기간제, 공익근무, 인턴, 자원봉사자에 의지해서 공간을 유지하고 있음.
- 장서관리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
- 대부분 공립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음. 내수작은도서관, 봉명작은도서관은 폐관 예정임. 두꺼비도서관 맹꽂이도서관도 직영으로 전환이 후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못 하고 있음.
- 문체부 평가에서 매년 낮은 등급을 받고 있지만, 개선 대책이 없음.

5-5-5. 작은도서관 지원 방식의 문제

-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많지 않음. 2021년 작은도서관 전체 예산은 2억 9천 5백만원.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음. 2011년에 처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작은도서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한번도 반영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음.
- 작은 예산을 쪼개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업에 비해 사업 기획, 신청, 진행 및 결과 정산 과정의 부담이 큼. 지원에 따른 효과보다 사업 수행을 위한 피로도가 큰 지원 사업. (프로그램 사업비 100만원)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거의 없음.

<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제61회 제3호 복지교육위원회(2021.03.26 금요일)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증액과 소통에 대해서

- 변종오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있을 테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 작은도서관이 약 120여 개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역할이 못 미치는 마을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금년도에 약 2억 9,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2억 9,500입니다.
- 변종오 위원 보조금하고 서비스 지원비로 해서 실행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와 크게 변화가 없는 사업계획이죠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큰 틀은 같은데요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 변종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년도와 규모/틀에서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산이 작은도서관 쪽에도 더 증액돼서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가깝고 편리하고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그냥 사업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더 사업을 확대시켜서, 예산 증액을 하실 용의는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도서관이 청주시내 곳곳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20여 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뭔지 현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개선할 점, 우리가 더 도와줄 점 아니면 사업을 같이/함께할 점을 찾아주셔서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이 더 가깝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가져 가지고 그분들의 어렵고 힘들고 가려운 곳을 제대로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5-5-6.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 삭제

- 청주시는 2011년 9월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확산보다 질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이를 지원의 기준으로 삼았음.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인건비, 운영경비, 자료구입비, 설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66㎡이상의 전용면적과 열람석 15석 이상을 구비한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
2. 2,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
3. 운영인력에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단,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도서관 관련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매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그림 9> 개정전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원기준

- 2016년 청주시립도서관에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 분위기를 앞세우고, 지원 대상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민원을 근거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이 조항은 청주시에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해오던 것으로 삭제한 명분, 삭제한 과정이 모두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최근 논의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을 정리하여 지원 정책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23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6.12.01 목요일)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의안번호 제797번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1조의2 외에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규제 개선을 위해서 종전에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지원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중략) **입법예고 기간 중 동 작은도서관 조례 제6조의 설립기준이 있음에도 지원기준 규모를 따로 정함은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의 전부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 전문위원 노재인 : 설립 기준 이상을 요구했던 작은도서관 지원 조건 규정을 삭제하여 **설립 기준을 충족한 모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써 도서관 지원 기준을 낮춤으로써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홍순평 위원 60평 이상으로 규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는 건가요?
-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법 시행령」을 보면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시설기준, 등록기준, 지원기준 이런 게 쪽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시설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개정해 보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5-5-7. 평가의 문제

- 평가지표 작성을 위해 매년 작은도서관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나 토론·설득·합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합하여 결정하고 있음.
- 운영주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지표로만 평가하고, 서류를 기준으로 한 정량평가에 치우치기 때문에 **실제 도서관 운영보다 서류 작성 능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은 지원 신청을 기피하고 있음.(120관중 72관 신청)
※ 2021년 평가에서 2500세대 아파트에 있는 롯데캐슬작은도서관과 한부모가정거주시설에

있는 해오름작은도서관이 같은 점수로 평가돼 도서구입비 지원금을 반분함.

※ 1998년 처음 작은도서관 문을 열고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참도깨비도서관은 제출한 서류 확인이 제대로 안 돼 평균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아 도서구입비 지원도 받지 못함.

○ 자원봉사자 성격의 아파트 도서관 운영자들은 서류 작성과 정산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도서관 관장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

5-5-8. 운영비 지원의 문제

○ 2020년부터 운영비를 사업비로 바꾸고, 사업비 사용 범위를 규제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사용을 규제하고 관리하려는 의도가 강함.

- 청주시 감사과의 지적사항이라는 답변. 감사과의 감사 방식이 문제임.

○ 사업비는 규모에 비해 사용상 규제가 많아 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 사업비 집행과 정산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은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큼.

< 청주시 지원 작은도서관 사업비 집행 지침 >

[사업내용]

1. 사업 목적은 독서문화진흥에 부합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어야 함.
2.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며, 타 작은도서관과 차별성이 있으며(그 지역만의 특성 살려야 함)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함.
3. 참여자 모집 홍보에 적극적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함.
4. 도서와 연계하여야 함.

[보조금 사업비 예산사용 지침]

1. 강사비 총사업비의 50%이하, 도서구입비는 20%이상, 자원봉사실비는 20%이하, (기타)재료비·홍보비·소모품비 등은 10%이하에서 편성
2. 사업비로 자산취득비, 식비 등으로는 사용 불가
 ※자산이란 소모성 재료가 아닌 1년 이상 지속 사용 가능한 물품
 ※다과는 1인 2,5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6.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정책

- 6-1.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정책 비교
 - 6-2. 창원시 작은도서관 정책
 - 6-3. 부천시 작은도서관 정책
 - 6-4. 김해시 작은도서관 정책
 - 6-5. 전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 6-6. 파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 6-7. 성남시 작은도서관 정책
 - 6-8. 의정부시 작은도서관 정책
 - 6-9. 순천시 작은도서관 정책
 - 6-10. 여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 6-11. 충남 당진시 작은도서관 정책
 - 6-12.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정책 요지

6-1. 정책 비교의 필요성과 방법

1) 다른 도시 사례 파악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외국의 연구사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짧아 국내 연구가 빈약한 편이며 관련한 논의도 많지 않음 상태임.
- 기존의 연구들도 자료 위주로 진행되어 선도적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을 펴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시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이론적인 접근이나 자료분석보다도 작은도서관 정책을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가 되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안내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2) 연구 진행 방법

- 작은도서관 정책의 역사가 오래되고, 우수하다고 알려진 도시들을 파악하고, 문체부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교할 도시를 선정하였음.
- 해당 도시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작은도서관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도서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작은도서관에 지원 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시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과 관리에 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음.
- 조사에서는 현황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추진 과정과 방향,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였음.
- 조사에 앞서 국가공공도서관통계 시스템, 2020년 문체부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기초 자료로 삼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확인하였음.

6-2. 창원시 작은도서관 정책

6-2-1. 창원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현황

- 창원시는 2010년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하여 인구 100만의 통합 창원시로 새로 태어났음. 2020년 기준 5구 2읍 6면 46행정동의 행정 체제를 유지하고, 인구는 103만명임.
- 창원시가 운영하는 진해기적의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두 12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경남대표도서관 1개관,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4개관이 있음
- 창원시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50개관, 사립 작은도서관이 49개관으로 전체 99개관 중 공립 작은도서관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공립 작은도서관은 활성화 되어 상대적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은 많지 않은 편임.
 - 공립 작은도서관 : 평생학습센터 26개, 작은도서관 24개
 - 사립 작은도서관 : 개인 및 단체 11, 새마을문고 12, 교회 5, 법인 2 아파트 19
-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 : 평생학습과 작은도서관 지원팀

6-2-2. 창원시 작은도서관 정책

1) 공립 작은도서관 위주로 운영

- 창원시는 일찍부터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을 민간 단체에 위탁하여 왔음. (50개관)
- 공립 작은도서관은 2년마다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에는 도서관별로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많은 위탁 기관에서 직원에 대하여 2년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하고 있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이직이 많은 편임
-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6일 개관하고,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말 개관은 실비보상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함.

2)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 사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음.

[표 61] 2021 창원시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구분	내 용	예 산(천원)	비 고
공립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3,189,034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50개관
	공립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200,000	
	합 계	3,389,034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공모	30,000	3백만원×10개관(공립 포함)
	사립 작은도서관 사업 지원	104,280	26,069,760원×4개관
	마을문학백일장 지원	4,000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16,800	420만원×4개관
	운영 평가 시상금	20,000	도서구입비
	합 계	175,080	
작은도서관 지원 합계		3,564,114	공공도서관 예산의 10.19%
2021년 공공도서관 예산		34,963,677	12개관

[자료] 창원시 2021년 본예산

6-2-3. 창원시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 조성 과정

- 창원 지역은 1980년대 말부터 양서협동조합운동으로 결성된 ‘책사랑’ 이 민간 도서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문고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였음
- 1996년 첫 민선 시장 선거 당시 시민단체에서 공민배 후보에게 ‘사회학습센터’ 설립 운영을 제안하였고, 공민배 시장 취임 후 행정통합으로 비우게 된 동사무소 건물을 사회학습센터(지금의 평생학습센터)로 조성하여 시민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때 ‘책사랑’ 은 도서관 설치를 요구하였고, 사회학습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함께 조성됨. 이 사업이 호응을 얻어 민간의 아파트에도 사회학습센터를 설치하였음.
- 초기에는 주민 자발성을 근거로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이었고, 이후 규모에 따라 직원 1-2명에 대한 최소 수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해왔음.
- 작은도서관 설치 초기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수탁 운영했지만, 점차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이 많아지고 있음.

6-2-4. 창원시 작은도서관 지원 평가

-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에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민간 위탁 운영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기 시작하였음.
- 지역별로 공립 작은도서관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을 민간단체가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였음.
- 시장 교체 이후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어 작은도서관 활동이 정체되어 있음. 초창기에 주도했음에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2년 단위로 위탁을 갱신하면서 운영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전담 직원도 2년 마다 근로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등 신분이 불안하여 이동이 잦음.

〈 ‘책사랑’ 과 창원 지역 작은도서관 운동 〉

“경남 양서보급회가 만든 마산 ‘책사랑’ 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작은도서관 운동단체이자 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설립 초창기부터 대규모 자본과 공간으로 출발했다. 책사랑이 있던 장소는 지역문화가 집중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책사랑은 마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노동운동, 시국관련 인쇄물을 수집했고,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노조문고, 마을문고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운영시간을 연장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고, 당시 금서였던 여러 사회과학 서적을 구비함으로써 ‘사상의 자유’ 공간으로도 기능했다. 책사랑은 지금도 창원의 대방마을도서관과 마산의 내서 마을도서관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운동 역사 찾기』, 2018, 23쪽

“이러한 민주적 도서관으로 지역 운동의 정보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1993년 책의 해’ 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중도서관으로 정착하게 된다. 노조문고 설립 지원, 마을도서관 설립 지원, 학교도서관 장서 수집 등을 통해 마산 창원에서 도서관 설립 필요성을 알려내고 도서관 운동과 설립에 관련된 자료를 생산해 냄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도서관이 존재하고, 도서관 설립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외 책을 통한 지역사회문화운동 공간으로 역할을 자리잡기 위해 작가 초청강연회, 대규모 문화공연, 도서관 관련 세미나, 정책 제언, 여러 가지 강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운동 역사 찾기』, 2018, 256쪽

6-3. 부천시 작은도서관 정책

6-3-1. 부천시 도서관 현황

- 부천시는 1980년대까지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베드타운으로 문화 불모지대였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 이후 문화 산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로 탈바꿈하였음.
- 부천시는 현재 공공도서관 14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세 곳을 신설중임. 좁은 행정구역 안에 공공도서관을 곳곳에 배치하였고 부족한 지역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고, 접근성이 국내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표 63] 부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운영	개관	연면적(㎡)	장서수(권)
1	심곡도서관	직영	1985	2,450	164,784
2	원미도서관	직영	1994	4,396	255,932
3	북부도서관	직영	1999	2,778	160,157
4	꿈빛도서관	직영	2002	4,055	200,842
5	책마루도서관	직영	2007	1,593	112,745
6	한울빛도서관	직영	2008	3,200	128,684
7	해밀도서관	위탁	2008	3,919	86,177
8	꿈어울도서관	직영	2010	3,907	115,053
9	상동도서관	직영	2011	5,426	151,345
10	송내도서관	직영	2015	3,920	96,541
11	도당도서관	직영	2017	414	24,866
12	동화도서관	직영	2017	617	49,211
13	오정도서관	직영	2017	2,305	77,679
14	역곡도서관	직영	2019	1,494	38,844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작은도서관은 모두 85개관(공립 22개관, 사립 63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6개관을 직영하고(주민센터 2, 공원 1, 시청 1, 전철역 2), 16개 관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공공장소)
- 사립 작은도서관은 모두 63개관(개인 14, 새마을 1, 교회 31, 아파트 17)이 등록되어 있음.

6-3-2. 부천시 작은도서관 정책

1)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 2002년부터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장소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온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음. 처음부터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1명을 배치하였으며, 상호대차에 참여하였음.
- 현재는 공립 작은도서관 1관당 사서 1명과 시간제 근무자 3명이 배치되어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은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4대 보험, 호봉 반영, 수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
-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는데, 복지관 내 시설은 복지관과 위탁기간과 같은 5년으로 함.
- 공공도서관을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은 없음.

2)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 부천시는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위주의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음.
- 경기도의 운영 평가에 따른 도비 지원에 매칭하여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있음.

6-3-3. 부천시 공립 작은도서관 설립 계기

- 부천시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한 ‘의제21’에 근거하여 2000년 1월에 ‘푸른부천만들기21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2001년 2월 분야별 실천 계획으로 정리한 ‘푸른부천21’ 의제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23번이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 만들기’였음.
-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는 이 의제 실천을 위해 2001년 초 부천시립도서관과 그간 지역에서 활동해 온 사립문고, 어린이도서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분과’를 만들었음. 작은도서관분과는 사업 목표를 ‘동네마다 하나씩 작은도서관 만들기’와 ‘도서관 네트워크’에 두고, 첫 번째로 ‘부천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도서관 운동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복지관 등을 위주로 대상지를 물색하여 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 후

보지를 정하고, 오랜 협의 끝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민간 위탁 과정을 밟았음.¹⁸⁾

- 이후 매년 공립 작은도서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음.

6-3-4. 부천시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

- 부천시는 ‘의제21’ 사업으로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펴기 이전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였음. 특히 ‘의제21’이라는 민관거버넌스 사업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임.
- 민간의 작은도서관 운영 경험과 인력을 공립 작은도서관이 흡수하여 처음부터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 민간 위탁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 비교적 충실하여 사서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고, 이직률이 낮은 편임(평균 근속기간 10년 내외).
-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주말 개관을 하고 있고, 상호대차에 참여하여 도서관 서비스가 매우 충실한 편임.
- 공립 작은도서관을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많이 조성하였는데, 실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높지 않음. 공동주택 등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임.

18) 이진우,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며, 동화읽는어른, 1994, 중에서
<http://www.childbook.org/new2/report.html?mode=read&id=805>

6-4. 김해시 작은도서관 정책

6-4-1. 김해시 도서관 현황

- 김해시는 2020년말 기준 59만명으로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2021년 당초 일반회계 예산은 1조 5천 4백억원 정도임.(1,542,321,954 천원, 특별회계 362,084,756천원)
- 김해시는 2007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책읽는도시 김해’를 선포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음.
- 김해시에서 7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경남교육청 교육도서관 3개관이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 2개관(생림주민센터, 안동문화의집), 사립 작은도서관 62개관이 등록되어 있음(아파트 40개, 공공시설 11, 교회 9, 개인).

6-4-2. 김해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1) 공립형 작은도서관 지원

-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에 시설을 조성하고, 전담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조성 대상 공모 과정에서 지원자와 협약을 맺고, 조성 및 지원 조건에 전담인력 고용과 주말 개관을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켰음.(협약서 부록으로 첨부)
- 지원 대상 : 사립 작은도서관 38개소(일반 35, 특수2, 특화1)- 공동주택이 많음.
 - 면적 85㎡ 이상, 장서 3천권, 주말 포함 25일 40시간 개관
 - 공공시설로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마을시설, 아파트 복지시설)
 - 전년도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및 운영 평가 참여 도서관
 - (특수) 주이용층이 다문화 또는 독서장애인, 특수분야 장서 및 운영 실적
 - (특화) 면적 150㎡ 이상, 특화 분야 장서 및 운영 실적
-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일반(35개소) 월 240만원 / 특수(2개소), 특화(1개소) 월 320만원
 - 타관대출반납 서비스, 통합도서관시스템 사용 및 유지 보수
 - 2021년 총사업비 1,123,200천원

2) 평가 및 도서구입 지원

- 기본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신규 작은도서관이나 새롭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시행함.
- 전년도 운영 평가에 참여한 사립 작은도서관 46개소에 대해 도서구입비를 차등 지원함.
(우수 40개관 120만원, 일반 6개관 100만원)

[표 64] 김해시 연도별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년도	구성비 (천원)	운영비		도서구입비 (천원)
		예산(천원)	지원 대상	
2007	308,000			
2008	250,000	180,000	10개관	30,000
2009	687,000	495,000	28개관	15,000
2010	200,000	718,000	30개관	-
2011	150,000	597,000		-
2012	-	648,000	35개관(월150)	-
2013	-	688,800	35개관(월160)	76,000
2014	-	729,600	35개관(월170)	10,000
2015	-	806,400	36개관(월180)	-
2016	-	847,200	36개관(월190)	-
2017	-	9,030,000	36개관(월200)	50,000
2018	-	9,912,000	37개관 차등	50,000
2019	-	1,185,000	38개관(월220)	50,000
2020	-	1,077,600	38개관(월230)	60,000
2021	-	1,123,200	38개관(월240)	54,000

[자료] 김해시 예산서(당초 예산 기준)

6-4-3. 작은도서관 분관화 추진

- 지원받는 도서관은 코라스로 자료 공유, 상호대차, 타관반납 서비스 운영
- 운영비를 지원받는 38개관은 주말(토, 일) 중 하루를 의무적으로 개관하고 있음.
- 2020년부터 공공도서관이 봉사대상 지역 내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도록 업무 분장.

지원 정책 및 평가는 인재육성지원과 도서관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일상적인 업무 지원과 관리는 공공도서관 분관에서 담당하게 하여,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

6-4-4. 작은도서관 지원의 효과

- 운영 안정성 확보 - 38개에 달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과 시설, 장서를 갖추고, 전담인력이 상근하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도서관 서비스 확장 - 보조금을 지원받는 도서관은 김해시 상호대차 서비스 ‘책두레’에 가입하여 상호 대차, 타관반납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크게 증진하였음.
- 시민 독서 진흥 -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으로 독서활동에 시민 참여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도가 높아짐.
- 운영의 질 향상 - 매년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점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운영비를 지원받는 작은도서관이 비지원 도서관에 비해 점수가 월등히 높음.

6-4-5. 김해시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

- 김해시는 ‘책읽는도시 만들기’를 위해 당장 공공도서관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정책이 시급하고, 특히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보다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음.
- 특히 도서관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의 지지를 받아 시의 핵심 정책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눈에 띈. 2007년 7월에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책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협약식’을 체결하고, 책읽는도시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음.¹⁹⁾
- 김해시가 앞장서 추진하면서 관의 지원이 마중물 역할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민간 영역 자발성이 떨어졌음. (아파트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을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마찰이 계속 이어짐)
- 지속적인 택지개발에 따라 작은도서관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전담인력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도서관 운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관장들에 대한 지원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19) 조강숙, ‘책읽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한 김해시의 민관 협력, 도서관문화 Vol 48. No 12, 2007. 12, 32p

6-5. 전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6-5-1. 전주시 도서관 현황

- 전주시는 2개 행정구(완산구, 덕진구) 35개 행정동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657,664명임.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는 1조 8천억원(1,822,406,807천원)임.
- 전주시는 1980년 금암도서관, 1989년 완산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꾸준히 시립도서관을 신축하여 모두 12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 2020년에 꽃심도서관을 개방형 도서관으로 신축 개관하여 시민들의 호평을 얻고, 모든 시립 도서관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현재 인후도서관과 삼천도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송천도서관을 리모델링 하고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학산숲속시립작은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시민들의 호평을 얻었고, 도서관을 연결하는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7월 기준 전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총 126개관(공립 32, 사립 104)임
- 전주 꽃심도서관에 작은도서관팀을 두어 직영 작은도서관 운영, 공립형 작은도서관 관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65] 전주시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	개관	장서수(권)	연면적(m ²)	비고
1	금암도서관	1980	86,193	2,712	리모델링 완료
2	완산도서관	1989	213,829	6,617	리모델링 설계
3	인후도서관	1996	85,354	2,519	리모델링 완료
4	삼천도서관	2001	96,683	2,799	리모델링 완료
5	송천도서관	2005	95,773	3,367	리모델링 공사중
6	서신도서관	2008	114,773	2,594	
7	평화도서관	2011	82,395	2,964	
8	아중도서관	2013	80,130	2,793	
9	쪽구름도서관	2014	58,550	1,584	
10	건지도서관	2015	52,280	1,472	
11	효자도서관	2016	55,155	3,220	
12	꽃심도서관	2020	34,703	4,042	시립본관
	합계		1,055,818	36,683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6-5-2.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1) 공립 직영 작은도서관

- 전주시는 다른 부서에서 조성한 작은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인수받아 사서 등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모릉지작은도서관 - 전통문화과에서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서곡 문화관 내 조성한 후 완산도서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직영.
 -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 -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건지산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의 일부로 조성한 후 시립도서관에서 운영
 - 중산작은도서관 - 전통문화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관받아 2014년 문체부 작은도서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작은도서관 운영.
- 최근에는 시립도서관에서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직접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삼숲속시집작은도서관, ,여행자도서관, 책기둥작은도서관(시청 로비). 시립도서관에서 사서 1인이 배치되어, 공무원 직원과 함께 관리하고 있음.

2) 공립 위탁 작은도서관

- 책마루 어린이작은도서관은 2009년 롯데마트 송천점이 주차장 2층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전주시에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로, (사)도서관을사랑하는책마루동무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롯데마트에서는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표 66] 전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명 칭	개 관	규모(㎡)	운영단체	조성 재원
1	모릉지	2010.03	682	직영	특고세 지원
2	건지산숲속	2013.05	50	직영	특화도서관 조성(시비)
3	중산	2015.07	738	직영	중앙공모(2014년)
4	학삼숲속시집	2021.04	58	직영	특화도서관 조성(시비)
5	첫마중길여행자	2021.04	123	직영	특화도서관 조성(시비)
6	책기둥	2020.05		직영(전주시청 1층 로비)	특화도서관 조성(시비)
7	책마루	2009.07	995	위탁 (도서관동무들)	민간-롯데마트 조성

[자료] 전주시립도서관

6-5-3. 공립형 작은도서관 조성

- 전라북도는 2007년부터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조성비를 지원하고, 조성된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도비 매칭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 기금별로는 중앙공모 주체별로 구분하면 복지관 12개관, 주민조직 6개관, 시민단체 3개관, 병원도서관 2개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개관임.

[표 67] 전주시 공립형 작은도서관 현황

	명 칭	개 관	규모(㎡)	운영단체	조성 재원
1	전주	2004.12	110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복권기금 공모(2004년)
2	무지개	2007.12	135	사)인권누리	중앙공모(2007년)
3	인후비전	2008.05	368	인후비전운영위원회	중앙공모(2007년)
4	평화꿈틀	2008.06	172	평화사회복지관	전라북도 공모(2007년)
5	팔복	2008.06	320	팔복동주민자치위원회	중앙공모(2007년)
6	호성	2008.09	148	호성동주민자치위원회	전라북도 공모(2007년)
7	노송	2008.11	434	서원노인복지관	특교세 지원
8	열린점자	2009.06	330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공모(2008년)
9	꿈드리	2009.06	110	남양아파트 입대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공모
10	큰나루	2009.08	179	덕진노인복지관	전라북도 공모(2008년)
11	맑은누리	2009.09	165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전라북도 공모(2008년)
12	꿈이 있는나무	2009.09	347	사)물댄동산	전라북도 공모(2008년)
13	청아나루	2010.09	17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전라북도 공모(2010년)
14	효사랑푸른꿈	2010.09	138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도시책비 조성(2010년)
15	금호	2010.10	168	금호아파트 입대의	도시책비 조성(2010년)
16	글마당	2011.02	182	현대2차아파트 입대의	도소규모개발(2010년)
17	초록우산	2011.10	207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중앙공모(2011년)
18	행복나눔	2011.11	168	서원노인복지관	전라북도 공모(2011년)
19	인후문화의집	2012.10	170	인후생활문화센터	전라북도 공모(2012년)
20	꿈밭장애인	2012.11	23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북도 공모(2012년)
21	전북대병원	2013.02	122	전북대병원	특성화도서관
22	간납대	2013.10	50	간납대운영위원회	도소규모개발(2010년)
23	덕진품애	2013.12	165	덕진청소년문화의집	중앙공모(2013년)
24	상상나무	2014.01	260	우아생활문화센터	전라북도 공모(2013년)
25	명주골	2015.12	169	책읽기운동전북본부	전라북도 공모(2014년)

[자료] 전주시립도서관

6-5-4. 공립형 작은도서관 지원

- 공립형 작은도서관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분리하여 편성하고, 사서나 독서활동가 등 유자격자를 전담인력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68] 2021 전주시 공립형 작은도서관 예산

구분	사업비		비고
민간위탁	인건비(관장1, 사서2) 도서구입비, 운영 및 프로그램비	105,100천원	책마루어린이
공립형	24개관 / 관별 35,610~35,350 천원 도서구입비 : 5,000천원, 운영비 : 3,600천원, 프로그램비 2,000천원, 기타보상금 960천원, 인건비 : 24,050~23,790천원	851,520천원	인건비(퇴직금 포함) 사서 월 185만원 독서관련직 183만원
특성화	도서구입비	3,000천원	전북대학교 병원

[자료] 전주시립도서관

6-5-5.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 및 지원

- 전주시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104개관(완산구 50, 덕진구 54)임.
-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 신청을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 평가를 실시함.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40개관), 도서구입비(43개관) 등을 지원.

[표 69] 2021년 전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구분	사업내역		비고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 (자원활동가 실비, 프로그램운영비)	144,000천원	40개관 선정, 월 30만원 내외
	도서구입비 지원(도비 매칭)	83,000천원	83개관, 관당 100만원 정도
	도서정리용품 지원	3,600천원	신규등록도서관
	등록인증 현판 제작	3,000천원	
	운영기자재 대여		
네트워킹	순회 사서 지원	30개관	문체부 공모 사업(10명)
	소식지 제작	3,600천원	월 1회
역량강화	운영자 워크숍	6,200천원	1회
	운영자 교육 및 워크숍		역량강화교육(4회)
	맞춤형 컨설팅 지원	3,000천원	10개관
	우수도서관 견학	2,000천원	전체

[자료] 전주시립도서관

6-5-6. 전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평가

- 전주시는 독서 인프라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오래된 도서관을 개방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특화된 도서관 조성에 앞장서 왔음.
- 2007년부터 전북도의 시책 사업에 호응하여 공공성이 높은 민간 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공립형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뒷받침 해 왔음.
- 대부분의 공립형 작은도서관에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담인력이 근무하고 있음(공립형 25개 관 중 사서 24개관, 독서활동가 1개관)
- 모든 공립형 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고, 주말 개관에 참여하여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음.
- 인구 이동, 거주 세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구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공립형 작은도서관은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음. 2015년 이후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 있음.
-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공립형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필요함.
- 2021년 가을부터 꽃심도서관 개관 이후 이어진 개방형 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성과와 특성화된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전주시에 ‘도서관여행과’ 를 만들고 도서관 투어를 진행하고 있음.

6-6. 파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 파주시에는 2021년 기준 공공도서관 18개관을 운영하고 있음. (2021년 7월 파주시 주민등록 인구 473,613명으로 1인당 도서관 장서수 2.7권, 도서관 1㎡ 당 주민수 13명)
- 면에 설치한 공립 작은도서관 3개관은 직영하고(광탄, 금곡, 탄현), 금촌무지개도서관은 느티나무도서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위탁운영비 133,660천원)

1) 공립 작은도서관

- 파주시는 2008년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처음 설치할 때부터 공립 작은도서관을 중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음.
-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
 -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서관이 지향하는 바를 공유
 - 협력을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주민의 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주민 명예관장 위촉, 주민 운영위원회 참여, 주민을 상근자로 채용)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기존 주민조직과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음. 2016년부터 각지의 주민자치센터가 리모델링할 때 공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전환함.

2)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과 협력을 위해 협력사서제를 운영함.
 - 2021년 현재 4명의 협력사서가 활동 중(기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채용)
 - 공무원이 아닌, 기안권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단순노동 위주의 업무 등과 같은 기존 순회사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를 마련함.
 - 단순 업무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업무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중재자 역할 수행.
- 경기도 평가를 기준으로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132,150천원(시비).

6-7. 성남시 작은도서관 정책

- 성남시는 2021년 기준 15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이중 13개관은 직영하고, 규모가 큰 2개관(수정, 중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직영
 - 행정복지센터 20곳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 공무원 1인을 배치하고 있음.
 - 도서관을 운영하는 공무원 직원은 도서관 부서 내에서만 순환 근무하게 하여 도서관 운영자의 전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사립 작은도서관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도비 매칭분에 시비를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운영비 지원 - A등급(1,500만원), B등급(1100만원) C등급(900만원).
 - 운영비 사용은 인건비, 식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에 제한이 많지 않음. 자원봉사 실비보상, 도서구입,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비, 공과금,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도서관 당 230만원 정도 지원.
 - 상호대차에 참여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기간제 1명을 2년간 지원.(5개관)
 - 복지관 내 작은도서관에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도서구입비를 지원.

〈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

- 경기도는 2012년 광역자치체로는 처음으로 도서관과를 만들었고, 도서관 운영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광역자치단체임. 작은도서관 전담팀을 운영하기도 하였음.
- 경기도는 시군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5등급(A, B, C, D, E)로 평가함. 기본 평가는 격년으로 실시하는데, 그 사이에는 신규로 등록된 작은도서관이나 등급 상향을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를 실시함.
- 경기도는 C등급까지 차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시군과 매칭은 3:7의 비율임. 시군별로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6-8. 의정부시 작은도서관 정책

- 의정부시는 5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 1개관을 운영하고 있음. 2011년 ‘책 읽는 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도서관 확충 및 독서진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고가철로 아래 설치한 가재울도서관(2018), 개방형 구조와 미술·디자인 특화, 세련된 인테리어 등으로 회자되는 의정부미술도서관(2019), 국내 최초 흑인음악 특화 도서관인 의정부음악도서관(2021) 등을 개관하여 도서관 혁신을 위해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
- 의정부시는 찾아가는 독서문화행사와 순회사서 지원, 운영자 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정책 평가’ 에서 3년 연속(2018~2020)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

1)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1999년부터 주민센터에 있던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함.
- 현재 13개 주민센터와 의정부 민자역사 내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위주로 선발한 공무원 1인을 배치하였음
- 공무직은 도서관운영과 내에서만 순환 근무. 상호대차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음

2) 사립 작은도서관

- 의정부시는 민선 6기(2015~2018) 공약 사항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매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1~2개관 조성을 지원하였음
- 2019년부터 미등록·미운영 중인 아파트 도서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립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평가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함.

[표 71] 2021 의정부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13,400	냉난방비 지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40,500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35,560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53,340	아파트 도서관 대상

[자료] 의정부시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6-9. 순천시 작은도서관 정책

1) 순천시 도서관 정책

- 순천시는 1읍 10면 13동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고, 2021년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81,883 명이고,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는 1조 880억원임(1,088,253,953천원)
- 순천시는 2003년에 순천기적의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도서관 도시’ 를 표방하고 공공도서관 확충,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함

[표 72] 순천시 공공도서관 현황

설립주체	도서관명	개관년도	연면적(㎡)	장서수(권)
순천시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1968	2,332	96,066
	순천시립도서관연향관	1998	4,114	152,977
	순천기적의도서관	2003	1,824	90,983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2010	2,320	92,783
	해룡농어촌도서관	2010	618	29,066
	순천시립삼산도서관	2012	5,021	158,870
	순천시립신대도서관	2017	778	37,277
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019	775	18,655
사립	관옥나무도서관	2018	330	6,200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순천시는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작은도서관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공공도서관 에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음
-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작은도서관팀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작은도서관 현황

- 총 79개관
 - 공립 : 3개관(직영 1개관, 위탁 2개관)
 - 사립 : 76개관(개인 및 단체 29개관, 교회 7개관, 법인 2개관, 아파트 38개관)
- 2010년대에 신대지구, 오천지구 등 택지개발로 아파트 도서관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3) 순천시 작은도서관 정책

- 순천시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보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03년 순천 기적의도서관 개관 이후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순천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곳에 조성비를 지원했음.
- 모든 작은도서관에 매달 운영자 인건비 포함 120만원 내외 지원
- 모든 사립 작은도서관에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액을 늘려가고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실비를 지급함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과 작은도서관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매년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있음
- 운영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위치에 따라 유형으로 구분하고 (아파트 / 주민센터 / 읍·면·동지역) 각 유형별로 우수 도서관을 선정함
 - 우수 도서관에는 시설 개보수비, 물품구입비, 운영자 인센티브 등을 지원

[표 73] 2021년 순천시 사립 작은도서관 직접 지원 예산

구 분	예 산(천원)	비 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901,400	1,050,000원×70개소×12개월 910,000원×1개소×10개월 1,050,000원×1개소×6개월 1,000,000원×1개소×4개월
작은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	78,000	20,000,000원×3개소 18,000,000원×1개소
평가우수 작은도서관 보조금	20,000	2,000,000원×10개소
도서구입비 지원	100,000	1,250,000원×80개소

[자료] 순천시 2021년 본예산

6-10. 여수시 작은도서관 정책

- 여수시는 1읍 6면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1년 7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78,123명이며,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는 1조 92억원임(1,092,055,582천원)

1) 여수시 도서관 현황

[표 74] 여수시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설립주체	도서관명	개관년도	연면적(m ²)	도서 수
여수시	여수시립현암도서관	1985	3,546	132,581
	여수시립쌍봉도서관	1993	3,735	173,863
	여수시립돌산도서관	1997	1,146	60,910
	여수시립소라도서관	1998	1,230	71,807
	여수시립울촌도서관	2005	1,579	55,005
	여수시립환경도서관	2007	2,274	117,997
	여수시이순신도서관	2020	5,622	54,620
교육청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2008	1,248	192,754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 여수시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 총 34개관(공립 3개관, 사립 31개관)
- 공립 3개관 모두 공공시설에 설치(보건지소, 거문도 여객선터미널, 치매안심센터 내)
- 여수시는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평가를 통해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자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 2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19개관이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 장서는 상호대차 대상에서 제외
- 여수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① 운영자는 2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선정 ②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을 조건으로 제시함.

[표 75] 2021년 여수시 사립 작은도서관 직접 지원 예산

내 용	예산(천원)	비 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보조금	251,280	16,752,000×15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보조금	100,000	운영평가 상위 20개관, 각 500만원

[자료] 여수시 2021년 본예산

6-11. 당진시 작은도서관 정책

- 2000년대 들어 바닷가 어촌 마을에서 서해안 시대 교역을 선도하는 도시로 변모하였음. 2읍, 9면 3동, 2021년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72,014명임. 2021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는 8천 400억원임. (840,446,447천원)
- 뚜렷한 젊은층의 증가에 따라 일찍부터 책읽는도시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시립도서관 3개관을 직영하고 있고, 교육청도서관이 있음.
- 공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나 공공시설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서관 별로 1~2명 공무직을 배치하여 시립도서관이 운영함. 상호대차 실시.
- 사립 작은도서관은 10개관에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76] 당진시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작은도서관	개관	설치 위치	면적	열람석	장서수
1	고대웃음꽃	2007	고대면 주민복지회관	169	26	17,739
2	대호지책나래	2010	대호지면농업인상담소	162	50	11,283
3	석문생각나무	2007	석문새마을금고2층	172	25	20,516
4	송산개미	2007	송산면다목적복지회관	172	13	20,301
5	송악샘터	2008	송악 노인회관 2층	132	40	16,000
6	송악해나루	2010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193	26	16,082
7	순성반딧불이	2007	순성면 복지회관	147	26	19,681
8	신평청소년	2013	신평면문화스포츠센터3층	233	58	15,614
9	원당꿈초롱	2008	원당마을아파트 관리동 2층	194	50	17,048

[자료] 2020년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보고서

6-12.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정책 요지

[표 77] 다른 도시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요지

도 시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요지
창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문고 운동의 영향으로 1996년부터 작은도서관 조성 후 민간 위탁 사업 시작. -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후 민간 위탁 : 평생학습센터 26개, 작은도서관 24개 - 위탁 기간 2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근로계약 갱신으로 직원 근속년수가 짧음. -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비 차등 지원
부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의제21’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시작 - 공립 작은도서관 24개관(6개관 직영, 16개관 조성 후 위탁 운영) -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1명, 시간제 3명 기본 배치, 인건비 공무원 기준으로 편성 - 위탁기간 3년, 직원 평균 근속년수 10년 이상. 안정적 운영
김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사서들 주도로 ‘책읽는도시 김해’ 추진, 작은도서관 조성에 역점. - 공립형 작은도서관 지원 - 사립 작은도서관 대상 공모를 통해 시설 지원, 운영비 지원 - 일반 35개관 월 240만원, 특수 2개관 월 , 특화 1개관 월 320만원 지원 - 사립 작은도서관 46개소에 도서구입비 차등 지원
전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부터 도비 매칭으로 공립형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비 지원 시작 - 공립 (직영 6개관, 공립 위탁 1개관)작은도서관에는 사서와 공무원 직원을 배치. - 사립 공립형 작은도서관 24개관에 관별로 연간 3천 5백만원을 지원(인건비 등) -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40개관), 도서구입비(43개관) 등을 지원.
파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사서들이 주도하여 1읍면 1도서관 정책 추진. 작은도서관 조성 - 공립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역 주민 중에서 선발. 주민 조직 꾸준한 교육 실시. - 공립 작은도서관 3곳을 공공도서관으로 전환. - 임기제 협력사서 운영 - 상호대차 참여 도서관 인력지원
의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주민센터, 의정부역사에 작은도서관 조성, 공무원 배치, 도서관에서 순환 근무
성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 20곳에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공무원 1인 배치, 상호대차 실시 - 사립 작은도서관 - 경기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도비 매칭비에 추가 지원 - 운영비 지원 A등급(1,500만원), B등급(1100만원) C등급(900만원) - 운영비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음(인건비 식비 제외 사용 가능) - 도서구입비 지원(관당 230만원), 상호대차 참여 사립 작은도서관 담당인력 지원(5개관)
전남 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립 작은도서관에 매달 운영자 인건비 포함 월 120만원 내외 지원
전남 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작은도서관 15개관에 인건비 포함 운영비 지원 (연간 16,752,000) - 평가 후 우수 작은도서관 20개관에 도서구입비 500만원 지원
충남 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 공무원 배치. 상호대차 실시.

7.

다른 정책 사업과 비교

- 7-1. 다른 정책 사업과 비교의 의미
- 7-2.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
- 7-3.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정책
- 7-4.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 7-5. 다른 정책과 비교 요지

7-1. 다른 정책 사업과 비교의 의미

7-1-1.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곳이 많음. 청주시에는 11개소가 있음.
- 공동주택 내에 작은도서관은 의무구성 공간이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아님. LH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공동시설 내에 조성된 공간을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기관에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왔음.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직원이 작은도서관을 같이 관리해 왔음. 작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의 연장 시설이 됨.
- 개인이나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지역아동센터 인력으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음.
- 공동주택 등 지역 현장에서 같이 운영되는 복지시설과 비교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의 수준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7-1-2. 도서관과 복지정책

- 현대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 정보 접근, 성인학습을 통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임. 복지정책은 구휼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이 강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스스로 다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임.
-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고(교육),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여 일어서고(자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자기의 역할을 찾고, 자존감을 지키는 노년을 보내고(노인복지, 시니어일자리), 필요한 정보 접근을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사회에 참여하며(여성), 정보를 활용하여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역량을 길러주는(장애)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요체임.
-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책을 통해, 정보를 통해, 대화를 통해, 스스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잡게 해주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인 것임.

7-1-3. 땀질식 대책과 예방적 정책의 차이

- 모든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보다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앞섰음. 책을 통한 시민의식의 계몽, 학습을 통해 근대적인 시민사회의 기반을 닦은 것임.
- 도서관을 먼저 만들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회가 디자인되어 왔음.
- 도서관이 없다고 당장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다보니 사회적 관심, 정치적 관심이 사건 사고에 집중됨.
- 사건 사고를 해결하고, 민원을 틀어막는 대책 세우기는 중복과 사각만을 양산하게 됨.
- 교육과 성인학습을 통해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든 예방적 정책이 중요함.

7-1-4. 작은도서관 정책 만들기

- 복지정책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도서관 지원정책은 계속 정체 상태에 있음.
- 공동주택 내에 의무 조성으로 확보된 작은도서관 공간이 빠르게 돌봄을 위한 사업장으로 변해가고 있음. 다함께돌봄센터가 공동주택 내에서 의무 조성 공간으로 지정되었음.
-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해서 작은도서관에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가능성을 유추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관을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만들기를 유추할 수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 정책을 통해 공공형 작은도서관 정책을 유추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에서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방과후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시니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 경로당과 다른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

7-2.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

7-2-1. 지역아동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시작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법률 정비를 통해 제도화한 것임. 급격한 산업화 도시 집중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취약 계층의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공부방’ 이 방과후교실로 이어졌고, 아동에 대한 돌봄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2004년 1월 29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만들었음.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공부방, 방과후교실을 지역아동센터 시설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음.
-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 -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 신규 시설 신고 - 새로이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여 운영하려는 사람은 먼저 시설을 조정하고, 24개월 간 자부담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지만, 운영 평가를 통해 매년 지원 여부를 조정하지는 않음.
- 지역아동센터 관리는 청주시 아동보육과 아동지원팀에서 주무관 1명, 공무원 1명이 담당.

[표 80]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구 분	계	지역아동센터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개 소 수	74	17	14	26	17
종사자수	167	41	30	59	37
아 동 수	2,024	475	369	759	421

[자료] 청주시, 2021.08.01.기준

7-2-2.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1) 예산 지원

- 지원기준 : 신고 정원 및 법정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예산액 : 5,496,000천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표 81]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

구 분	예 산	비 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496,548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74개소)	5,398,080	규모에 따라 차등(시설장, 전담교사)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71,828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26,64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50,150	도비 매칭, 74개소 추가 지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70,256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87,696	야간 운영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72,960	심사를 거쳐 17곳 지원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지원	9,600	400000*2개소×12개월(국도비 매칭)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160,000	내부 리모델링 지원(8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 지원	4,850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지원
지역아동센터 희망오름큰잔치	9,700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지원
지역아동센터 작품전시회	4,850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지원
합 계	5,896,354	

[자료] 2021년 청주시 본예산

2)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1명씩 파견

- 청주시 드림스타트팀에서 76명의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청주시 76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고 있음.
- 국도비 매칭 사업, 2021년 예산 76개 지역아동센터 11억 9천 7백만원(1,197,192,000)

3) 지역아동센터 중복지원단 운영

- 충북도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를 수행하는 중간관리조직인 지역

아동센터 충북지원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사람들)

○ 상근 인력 3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를 지원. 2021년 예산 169,260천원(국비 매칭)

7-2-3.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비교

[표 82] 청주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비교

구 분	작 은 도 서 관	지역아동센터
활동 시작	민간에서 시작	민간에서 시작
법적 근거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문고 활성화 정책 명문화.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 별도 제정	2004년 『아동복지법』에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추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간 조성 의무화	해당 없음
조례 제정	2011. 8. 충북도 조례 제정 2011. 9. 청주시 조례 제정	2009. 10. 충북도조례 제정 2010. 4. 청주시조례 제정
주 이용층	지역 주민 제한 없음	저소득층 초등학교 어린이
개관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개관도 있음.	오후2시 ~ 오후 6시 주말 개관 별도 지원
운영 목적	독서문화 진흥과 공동체 문화 형성	저소득층 어린이 학교 방과후 돌봄
주요 활동	열람과 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돌봄, 교육, 급식
지역사회 협력	작은도서관 기본 기능	없음
청주시 등록수	사립 작은도서관 120개	74개
평 가	연1회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3년 단위 평가 /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컨설팅 등 이행 의무 부과 / 미 이행시 지원금 10% 차감.
협의회 지원	책축제 참여비 지원	직원 연수비 행사 지원(연 2회 1,500만원)
지 원 단	없음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 충북도에서 민간 위탁 운영
2021년 지원 내역	2억 9천만원 + 순회사서 2명	5,896,354 천원(+ 아동보육교사(공무직) 76명
국도비 매칭	도서대여비만 도비 매칭 있음	국비 + 도비 + 시비 매칭

7-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정책

1)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 소득구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 돌봄 사업.
- 2019년 4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으로 설치 운영 기준을 정함.(『아동복지법』 44조의 2)
- 추진 경과
 - 2017년 ‘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20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을 발표(12월 17개소 운영)
 - 2019년 1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12월 173개소 운영)
 - 2020년 1월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12월 424개소 운영)

2)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의 기준 관련

- 도서관,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교육부에서 ‘학교 돌봄’ 확대를 추진 중이므로, 초등학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에서 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2021. 1.12.) 단, ①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²⁰⁾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별도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함.

3) 운영 및 예산 지원

- 직영을 기본으로 하고, 위탁운영 가능(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이용료 : 월 수납 한도액 10만원, 급간식이 제공될 경우 추가 비용 수납 가능.

20) 다함께돌봄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의미

4) 예산 지원

- 설치비 지원 (최대 5천만원, 지방비 포함)와 기자재비(개소당 2천만원, 전액 국비)
- 인건비 지원 - 센터장 1인, 시간제돌봄선생님 2인(월급여,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지방비 매칭)
- 운영비 월 30만원 지원 -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 운영비 (지방비 매칭)

5) 교육 및 평가

- 법정 종사자 교육 의무 이행
-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의 최소 기준안 충족 여부 평가,
- 관리 실태, 보조금 집행 관련 공공성과 투명성 중심 평가

6) 청주시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예산

[표 83] 청주시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예산

구분	예산(단위 천원)	내용
설치비 지원	280,200	4개소, 설치비, 기자재비(국도비)
운영비 지원	21,600	월 30만원(국도비)
인건비 지원	318,240	월 4,420,000원(국도비)
운영지원(시비)	100,000	5개소, 시사업
합 계	720,040	

[자료] 청주시 2021년 본예산

7-4.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7-4-1. 공공형어린이집 정책

1) 공공형어린이집

- 사립어린이집 중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곳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
서 2011년 7월부터 시행.
- 선정된 어린이집에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함.(3년 이후 재선정)

2) 추진 배경

- 맞벌이 부부 증가와 사립 어린이집 보육의 질 문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커짐.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했고,
201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119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힘.
- 2008년 10월 15일에 서울시는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 를 발표함.
- 2010년에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신, ‘서울형어린이집’ 처럼 우수 민간 어린
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7-4-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1) 선정 대상 :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에서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2) 선정 기준

- 고득점 순으로 선정(2021년 충북 신규 선정 배정 물량 : 14개소)
-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안정성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연장
반 전담교사 채용 여부, 급간식비 기준 이상 지출 여부 등

- **보육교직원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 학사학위 소지 비율, 원장 전문성, 담임교사 급여 지급 수준, 근속 교사 비율
- **지역별 자율 평가** : 취약 보육·시간제 보육 운영 여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율

3)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 지급 방식 : 전월 말일 24시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월 운영비 지급

7-4-3.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역

1)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현황

[표 84]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현황

구 분	공공형어린이집 수(개소)			아동 수(명)	
	계	민간	가정	정원	현원
계	58	34	24	3,307	2,679
상당구	12	7	5	506	393
서원구	15	8	7	944	751
흥덕구	11	8	3	838	649
청원구	20	11	9	1,019	886

[자료] 청주시청 아동보육과

2) 2021년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

[표 85] 2021년 청주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예산

구 분	예산(단위 천원)	비 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국도비)	3,017,607	63개소, 국도비 매칭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비)	12,000	3개소, 도비 매칭
공공형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시비)	33,000	11개소
공공형어린이집 도서구입비 지원(시비)	168,000	1백만원×168개소

[자료] 청주시 2021년 본예산서

7-5. 다른 정책과 비교 요지

- 작은도서관은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
-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은 방과후에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 작은도서관은 하루 종일, 주말에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설임.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오래 전부터 법, 시행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 오래도록 돌봄은 개인의 일로 여겨져 왔으며, 돌봄 사업은 민간에서 공부방, 방과후교실 형태로 시작되었음.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2004년부터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처음부터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원하였음.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공형어린이집 등은 기본 기준을 충족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후에는 ‘선지원 후평가’로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평가는 점검과 운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적용됨.

8.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 8-1. 문체부 실태조사의 활성화 방안 의견
- 8-2.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 간담회
- 8-3.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지부장 간담회
- 8-4.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간담회

8-1. 문체부 실태조사의 활성화 방안 의견

8-1-1. 2021년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활성화 방안 의견’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 사이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하였음.
- 청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126개 중 실태조사에 응답하여 입력한 작은도서관은 100개관이었으며, 그중 ‘활성화 방안’란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내용을 입력한 곳은 49개관임. 그중 인사글을 제외하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입력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 이 ‘활성화 방안 의견’에 적힌 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제출한 공개적이고, 정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폭넓게, 진지하게 수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함.
- 의견의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는 인건비 지원, 전담인력 지원이 가장 많았음.²¹⁾ 현장에서 더 이상 봉사자에 기대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1-2.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의견 정리

- 1) 영세도서관에 최적화되어 있는 간단하고 무료인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등이 아니라 민간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 상시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상시 방문자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 2) 한부모 복지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저희 도서관은 청주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버스를 타지 않으면 등하교도 어려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갑자기 학교 숙제나 필요한 교재가 필요할 때는 버스시간에 맞춰 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처럼 이용자수는 적어도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1)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입력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분석하면 전체 의견의 18.7%가 인건비, 인력지원을 꼽고 있음. 운영비 지원은 11.8%. 도서지원은 7.6%를 차지함.

- 3)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지원 없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관을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식비 및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신간도서구입비가 매년 200권 정도 지원바랍니다.
- 4)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휴관과 다시 열기를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도서대출과 독서프로그램은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웠으나, 소규모 독서동아리들은 대면 및 비대면 활동을 유연히 활용하여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1 실태조사의 내용에 독서동아리 관련 항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5)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6) 우리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로서 2020년 10월부터 문을 열어 입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올해 봉사자와 제반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으면서 입주민의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 7)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활동이 많이 제한되어 많이 속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어려워서 많이 고생한 가운데 19년 평가를 잘 받아서 20년에는 운영비도 지원받고 도서구입비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새 책을 많이 구매할 수 있어 도서관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21년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동네주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 8) 작은도서관이 그나마 운영되려면 상근자 1명이라도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9) 지난해 7월에 개관했는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발전적인 차원에서 보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 2020년 12월 신규도서관으로 장애인복지관 내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사회 내 한 부분으로서 맡겨주는데 작은도서관이 한 축이 되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11) 작은도서관은 상근직 채용을 통한 안정적 인력 확보와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그에 따른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12)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인해 임시 휴관일수가 늘어나서 도서대출과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수가 급감하여 대출권수 및 문화프로그램 개설 횟수가 줄었다.
- 13)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시립도서관에서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를 통해 자원봉사자비로 도

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동아리 2개를 형성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적극적인 모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동아리(해피맘 역사놀이터, 엄마는 헤어왕)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상황에서는 비대면 수업, 줌으로 진행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의 지원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선정으로 독서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독서동아리 활용 도서를 구입하여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한 동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게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며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14)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사랑방으로써의 역할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사랑방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의 힘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립도서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의 금액들이 너무나 작고, 인건비성의 사업이 아니기에 운영 및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정만으로 임하기에는 지치고, 소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역할을 잘해나가고, 주민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이끌어가려면, 인건비 성격을 띄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지속적인 봉사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5)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없었고 도서관 이용자도 많이 줄었다. 이번 2021년도는 좀더 좋아지리라 생각하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16)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지원사업이 더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7)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상근 직원이 필요합니다.

- 18) 2013년에 개관하여, 운영자 없이 방치되어 오다가, 2019년부터 제가 운영자로서 운영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비의 위기로 운영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립도서관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지원을 받았으나, 휴관이 잦아서 지원비를 시립도서관에 반납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 기관 지원 사업을 하면서, 3천여 권의 대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관의 지원이 없게 되면 도서관은 전처럼 방치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19년 도서관 실태조사에서 냉난방시 설비비를 언급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아파트 내 작

은도서관의 시설이나 운영 문제는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는 하나, 운영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다른 기관 사업을 못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 자못 도서관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주민센터의 지원으로 컴퓨터 2대는 확보했으나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침이 과연 도서관의 존립에 도움이 된다고는 도서관 운영자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저희 숲박꼭질도서관은 19년 도서관리모델링까지 한 마당에, 또 저희들이 운영을 포기하면 전처럼 방치되는 건 아닌가 자못 걱정이 됩니다.

- 19) 코로나19로 작년 한해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운영비 예산받기가 어려워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폐관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20) 본 도서관은 소규모 아파트작은도서관으로 입주민자발적인 도서 기증과 단체 도서 기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작은 도서관으로 우리 아파트 경로당 노인회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원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 21)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신간 도서구입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 22)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사서가 상주해 있는 도서관보다 그렇지 않은 도서관의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 23)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은 주민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봉사를 위하여 다양한 혜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전체적인 운영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24) 저희 도서관에 신규 도서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5)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휴원 상태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도서관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여러 정보를 활용하여 도서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26) 코로나 19로 인하여 계획된 운영 일정(임시휴관 증가) 및 프로그램, 강좌 미실시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 27) 규모가 작은 관계로 운영이 어려웠지만 작년에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발표를 하는 활동이 늘어나다가 코로나로 다시 멈춘 가운데 있지만 올해는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비를 들여서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책을 구입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도 책을 기증해주시는 분 덕택에

150권의 도서를 채웠습니다.

- 28) ①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사업 확대 ② 민간 운영 아파트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현실화
작업 ③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전문 교육 과정 마련 ④ 작은도서관에 사서 등 전문 인력 파
견 사업 확대 ⑤ 민간 운영 작은도서관(예:공동주택마을도서관 내)의 운영비 법제화 필요.
- 29) 지난 한 해 긴급돌봄서비스 일환으로 제한적인 대출 반납은 이루어졌으나 평가에 반영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센터가 만들어
져서 지속적인 작은도서관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30) 도서지원비를 확대해 주셔서 좋은 책을 많이 지원 받아 독서문화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협
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31)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없고 여건상 도서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다
- 32)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도서관 운영이 힘듭니다. 아파트에서 운영비를 30만원 받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어려움이 산더미입니다.
- 33) ① 작은도서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안내 및 지원-방역물품, 방역인력 ② 무조건적인
이용 제한이 아닌 이용자수를 제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가족 단위 이용/요일별
이용 등 ③ 밴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책읽기 활용
- 34) 운영비 예산 받기가 어려워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 폐관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35) 저희 도서관에 신규 도서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36)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신간 도서 구입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 37)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라는 다소 특별한 분야의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일반인의 도서관 이
용엔 한계가 매우 큼니다. 저희 작은도서관은 특성상, 독서모임, 토론회, 저자와의 대화, 특강
등을 통해 주된 내용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서모임은 열심히 하지만 실적이 부진해서 도
서비, 프로그램비 등 외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서구입비, 행사비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 운영의 활력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8-2.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 간담회

8-2-1. 비대면 간담회 진행

-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인터넷 줌으로 비대면 간담회 개최
- 간담회 참석 : 이나영(청도협 부회장, 만화도서관), 김현선(청도협 부회장, 산남푸르지오도서관), 이성현(청도협 사무국장), 전명순(파레트작은도서관), 이종수(참도깨비도서관), 오혜자(초롱이네도서관), 홍승표(길동무도서관), 박미라(부영사랑으로 작은도서관)

8-2-2. 간담회 주요 의견

1)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

- 지원을 하려면 도서관의 실태를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가 먼저 되고 나서 추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서류에 의존하기에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합리하게 이루어진다. 유예기간을 뒤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도서관의 기준을 정하고서 지원을 해야 한다.
- 작은도서관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지금 정책 제안에 대한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작은도서관의 방향에 대해 어디로 가야하는지 도서관 각각 생각이 다를 것이다. 공립, 공공형 작은도서관으로 간다면 이것이 시립에서 운영하는 산하 기관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만약 주체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간다면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민간 위탁의 형태는 일단 늘어나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런 형태가 될까 우려가 있다. 주체성을 확립하고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같은 고민을 해왔다. 공립으로 가는 것이 맞나, 공립의 분관화가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 오늘 이야기한 공공형 사립도서관의 개념은 새로우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원의 방식에서 주체의 결정은 서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해 준 곳에 대해 눈치를 보게 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 LH쪽으로 가는 것이 인건비 등의 문제로 가는 것 같다. 위탁 후 또 재위탁을 하는 형태로 보인다. 이런 경우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 인

력이 투입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공간, 장서, 사람에 대한 바탕에 관중별, 형태별로 특화된 도서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원칙을 세우는 것이 먼저일 듯하다. 그런 바탕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이런 상황을 유도하고 다른 형태의 도서관도 면밀한 상황 파악과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 방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평가에 대하여

- 자료에 대한 축적과 정리를 먼저 해야 한다. 등록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더라. 지금 정리되어 있는 자료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매년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먼저하고 차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지난주에 푸르지오에서 이슈가 있었다. 다른 도서관과 지원금을 나눠 가졌다. 지난주 목요일에 시립에서 도비 지원을 2차 대상자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왔는데, 알고 봤더니 인수인계를 잘못해서 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되었다. **대체 기준이 뭔지, 투명하게 평가 내용을 공개하던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제안을 해야 하는지.
- **평가 지표의 핵심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작은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실사를 나와도 외부 평가 위원이 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가지표를 바꾼다고 해도 관독을 못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
-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도서관 담당자의 전문성도 문제다. 기본적인 서류 수취와 정리, 평가지표 관리, 외부평가심사위원 구성 등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그 과정에서 작은도서관에 알려주고 공유하는 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속성, 인원 확충이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한다.**
- 새로 나온 평가지표를 보니 여전히 현재의 평가시스템을 유지할 듯 보인다. 평가 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실태 조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맞춤형 지원과 균등 지원이 따라야 한다.**
- 평가없이 지원받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럽다.
- 현장실사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서류점수만보고 평가되는 건 문제가 많다.
-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은 이번 정책보고서에 다 담을 수는 없다. 나온 내용은 넣는 것으로 하

되 지표는 청도협에서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사업비 지원 내용을 운영지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3) 청도협과 민관협력, 소통에 대하여

- 먼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이 해오고 있는 일에 대한 공공의 인식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 같다. 보조금 지원방식이 가져온 줄 세우기가 오히려 작은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훌륭한 파트너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작은도서관의 현실적인 실태 조사와 애로사항 청취와 공감의 필요가 있다.
- 시립도서관에서 협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부터 바깥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소수의 도서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공공성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맞는가. 기본적인 것조차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곳들도 있다. 협의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협의회를 동급으로 본다. 우리의 의견이 그 정도 수준, 하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 민관 협력에 대상으로 청도협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거버넌스 단체로 인정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청도협이 협력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앞으로의 과제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이번 연구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전담팀이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중간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은 안 서나,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다.
-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근 그 의견을 ‘특정 단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체의 입장이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청도협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전반적인 민원을 듣는 것이 하향 평준화로 반영이 되는 식이 되는 것 같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도서관정책팀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작은도서관의 방향이 너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것 같다. 마주치지 않고 공전하는 느낌이다.
-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
- 실제 전담팀 등 작은도서관의 실태를 꾸준히 파악해서 이것을 자료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담당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매년 바뀌고 새로 시작하고 없어지는 것이 기운 빠지고 혼선이 온다. 이런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안정화에 협력 공공 파트너가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된다.
- 시립도서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시립도서관 담당자가 업무를 지

속적으로 못하는 게 문제다. 공무원으로 관장을 뽑고 실력과 마인드가 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마을공동체사업에서는 모니터링을 마을사람을 키워서 하고 있다. 청도협에서 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작은도서관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은 협약을 맺어서 시스템화하면 어떤가.

- 전체적으로 민관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살펴보니 청주시 조례에 작은도서관협의회에 대한 부분이 있다. 조례에 있어도 민관 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 형식적인데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지원사업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운영자들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4) 기타 의견

- 꼭 문정과 졸업한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인지? 지역에서 직접 활동하는 10년차 활동가들은 전담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
- 여러 지역의 사례를 들수록 청주시가 대비되어 느껴진다. 청주는 정책이 너무 없다.
- 작은도서관 관련한 진흥법이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다고 해도 진행되는 것을 보니 언제 될지 모르겠다. 기존 작은도서관 법령 기준으로 보면 질적인 것을 도모하기에는 최소의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조례에 명확하게 지원의 기준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현실과 실효성 있게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다. 정책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니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한다.
- 아파트는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얼마나 협력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가 지원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지원센터를 만들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고 인건비 유지 비용 등 조직 비용이 클 테고, 작은도서관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등이 제대로 확보될지 모르겠다

8-3.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지부장 간담회

8-3-1.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지부장 비대면 간담회 개최

- 2021년 8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줌으로 비대면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백영숙(이사장, 제천 내보물1호도서관장), 김자영(이사, 서울 강동구 작은도서관 웃는 책 관장), 김정희(경기북부지부장, 고양시 책과도서관 대표), 김현실 서울지부장(전 은행나무 작은도서관장), 윤나영 충청지부장, 하현숙 울산경주지부장, 박민주 정책위원장, 박성원 대구 지부장, 강영미 이사(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장), 김경희 이사(전주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장), 신화숙 이사, 이은주 상임이사, 이상 12명 참석(무순)

8-3-2. 간담회 의견 정리

- 김자영 이사 :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강동문화재단에 제안을 했다. 지자체 내에서 전담인력이 먼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시작 단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은 공동 주택 단지가 있기에 필요하다고 생각. 인건비와 일자리를 마련해서 주는 것만이 아닌 교육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사례는 서울 금천구에서 마을사서 육성을 해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전담인력 확보, 둘째 사립 작은도서관의 교육과 지원, 셋째는 꾸준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자원 인력을 어떻게 성장시켜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정희 경기북부지부장 : 9월에 고양시에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에 전담부서가 없어진 상황이다. 계약직이 아닌 공무원으로 센터에서 전담하게 해달라고 제안 중이다. 평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등급 때문에 사서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등급제를 완화해서 일정 수준이 되는 도서관들을 묶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 백영숙 이사장 :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제안하셨는데, 어린이집을 예로 들면 공공형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이 짓고 운영이 어려우면 공공의 형식을 갖추고 운영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 작은도서관도 이런 것으로 제안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 살펴보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 김현실 서울지부장 : 금천구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은행나무작은도서관이 올해로 19년째다. 은행나무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금천작은도서관협의회를 만들고서 마을사서를 제안했

다. 15년부터 마을사서 1기가 시작되었다. 20년에 4기까지 배출했다. 현재는 26명이 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마을사서는 월 40시간, 하루 4시간을 할 수 있다. 35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마을 사서는 한 도서관에 1명, 2명일 수도 있다. 도서관의 운영 상태에 따라 인원수는 다르다. 15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해오는 제도다. 처음에 할 때는 자격기준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한 가지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작은도서관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 독서동아리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배출. 금천구의 마을 사서가 되어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한다. 공립은 직영으로 바뀌었으며 마급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관장이 되어 공립은 1인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의 경우 마을 사서가 파견이 되는데 7명 정도 사립에 파견되고 있다. 각각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운영자가 있고 마을사서가 한 두 명 배치 되고 있다. 은행나무의 경우 운영자와 마을사서, 지킴이들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교육은 초창기에 있었고 모임이 있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을 논의하고 했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없어졌다. 지속 가능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 윤나영 충청지부장 : 충청의 경우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90%다. 세종과 청주가 비슷하다. 전담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파트는 특수성이 또 다르다. 아파트 경우 입대회의 조직이 인력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서관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 그렇기에 봉사과 공동체 모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사람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공동관리규약에 도서관 관리 부분을 넣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작은도서관연합회는 자생단체인데 내년엔 상근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 하현숙 울산지부장 : 운영에 있어서 돌봄을 같이 하고 있다. 돌봄을 하면서 운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봉사하는 분도 안정적으로 오기에 운영이 수월해졌다. 간담회를 아무리 해봐도 의원들은 신문에 나오는 것 말고는 의지가 없다. 북구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13개 도서관에 운영비로 월 5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상호대차도 하고 있는데 기본시급도 안 된다. 문제가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이용자는 없는데 지원은 계속되는 도서관도 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지원이 없는 등 편차가 있다. 북구에는 사립만 있다. 사립과 공립의 장단을 비교하면 연구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박민주 정책위원장 : 공공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인력 지원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하면서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 박성원 대구지부장 :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면 대구시가 따라가면 되겠다 싶은데, 대구는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다. 너무 열악하고 인력 배치를 이야기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잘

운영되는 도서관이 3곳 밖에 없다. 이런 곳들은 오래 되어서 사업비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뿐이다. 대구의 단 한 곳도 자체 평가 기준이 없다. 12개관이 어떤 사업비를 지원 받았는데 2곳 빼고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곳이다. 아무런 실사나 자체 평가 없이 있는 금액에서 1/n해서 그냥 주었다.

- 강영미 이사 : 설문대가 제주시도서관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평가 때문이었다. 평가를 받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했다. 정책 관련하여 인건비를 고민해본다면 전담인력 인건비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이 운영되려면 최소 3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경희 이사 : 책마루도 사서가 1년에 한 번 씩 바뀐다. 행정일도 만만치 않다. 전주에 잘 운영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있다. 웅달샘의 경우다.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다. 공립의 경우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에 조금 안정적이었던 것 같다. 그 외에는 운영비를 위해 공모사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럼에도 어려우니까 하고 있기는 한데 어렵다.
- 신화숙 이사 : 복지관 등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전담인력이 없어서 공익이 오면 근근이 문을 열거나 담당자가 워커홀릭이어야만 겨우 운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은 위탁 운영을 하게 해서 시설과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설은 반대한다.

8-4.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간담회

- 일시 : 2021년 8월 25일 오후2시 ~ 4시
- 장소 : 청주시립도서관 문화교실
- 참석자(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을 거친 사서들)
 - 김기원 (청주시립도서관 정책팀장) - 임은상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장
 - 이세리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 김연화 오창도서관 사서
 - 박지은 상당도서관 사서 - 최준희 서원도서관 사서
 - 민미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 하은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 윤송현 (책임연구원) - 서동민 (연구원)

1) 작은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 작은도서관팀이 있으면 좋지만, 현재 인력 상황에서는 어려움.
- 전담팀이 있는 지자체는 소수일 것임. 시립도서관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전담부서 설치하는 어려움.

2)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

- 현장에서는 평가를 부담스러워 하지만, 선별 지원을 위한 평가임. 작은도서관을 모두 지원하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음. 평가지표도 시립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님. 사서 배치와 같은 지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목표로 두고 만든 것임. 현재 평가지표는 처음 만들 때보다 많이 하향됐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함.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함. 다 지원하면 좋지만 할 수 없으니, 평가지표는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임. 평가를 작은도서관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됨.
-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사를 안 했고, 과거에는 현장에 나가 서류 확인 다 했음.
- 정성평가는 주관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임.

3)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 공사립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함.

- 시립도서관과 논의 없이 농어촌활성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만드는 곳들 있었음. 강내도서관도 농업정책과에서 짓다가 준공 1달 전에 연락받음. 작은도서관 조성할 때 운영 방안, 인력 검토해서 실시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음.
- 공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 공공도서관 운영도 힘든 상황임. 작은도서관이 잘 되려면 공공도서관이 잘 돼야 함. 매년 도서관 예산이 삭감 아니면 동결임. 그래도 작은도서관 예산은 동결을 유지하고 있음.

4) 작은도서관 전담인력의 필요성

- 현장에서 책 정리 같은 일을 많이 요청함.
- 우리도 그런 잡일을 지양하고 있음.
- 순회사서를 신청하는 곳은 전담인력 없이 봉사자가 운영하는 곳들임. 도서 배거나 등록을 어려워하는 경우 많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기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함.
- 주로 신규 도서관 위주로 방문하는데, 청구기호 등이 터무니없이 잘못되어 있음. 처음 기초를 잡는 일은 봉사자 1~2명으로는 못 함. 그런 곳들은 하루 이틀만 순회사서가 도와주고, 이후에는 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이 할 수 있게 함.

5) 보조금 관리 규정 등

-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춰 집행해 주면 좋겠음
- 감사과 지적으로 기존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던 운영비를 사업비로 변경했음. 그러나 작년과 지원 내용은 같음. 제한이 더 생긴 것이 아님. 그러나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오해를 해 답답함. 평가지표도 웬만하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함.
- 문체부 평가에서 D-F등급을 받는 곳이 30~40%임. 평가 등급이 낮아도 운영 의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차이가 남. 의지가 없는 곳은 폐관을 유도하여 작년에는 19개관이 폐관함.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임의로 등록 취소할 수 없음. 계속 운영한다는 곳들은 어쩔 수 없음.

9.

청주시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

- 9-1 .도서관 조직 및 업무 개선
- 9-2.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및 평가
- 9-3.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 9-4. 공공형 작은도서관 도입
- 9-5.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기준 설정
- 9-6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 9-7. 특화 도서관 운영
- 9-8.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9-1 .도서관 조직 및 업무 개선

9-1-1. 도서관 인사 개선

- 도서관 관장은 공무원이 쉬어가는 자리가 아님. 도서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며, 관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임.
- 도서관은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공로연수하는 자리가 아니고, 요양하는 곳도 아니고, 타부서 기피자를 배치하는 곳이 아님.
- 도서관 관장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사서직으로 보임돼야 하며,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함.
- 불가피하게 타직렬을 보임하더라도 도서관 정책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인사를 해야 함. (최하 1년 이상 근무)

9-1-2. 작은도서관 담당팀 신설

- 청주시에는 현재도 등록하여 운영 중인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120개관이 넘음.
- 시급히 공립 작은도서관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정책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함.
- 작은도서관 전담팀은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관리(직영, 위탁), 공공형 사립작은도서관 관리, 사립작은도서관 지원과 평가, 순회사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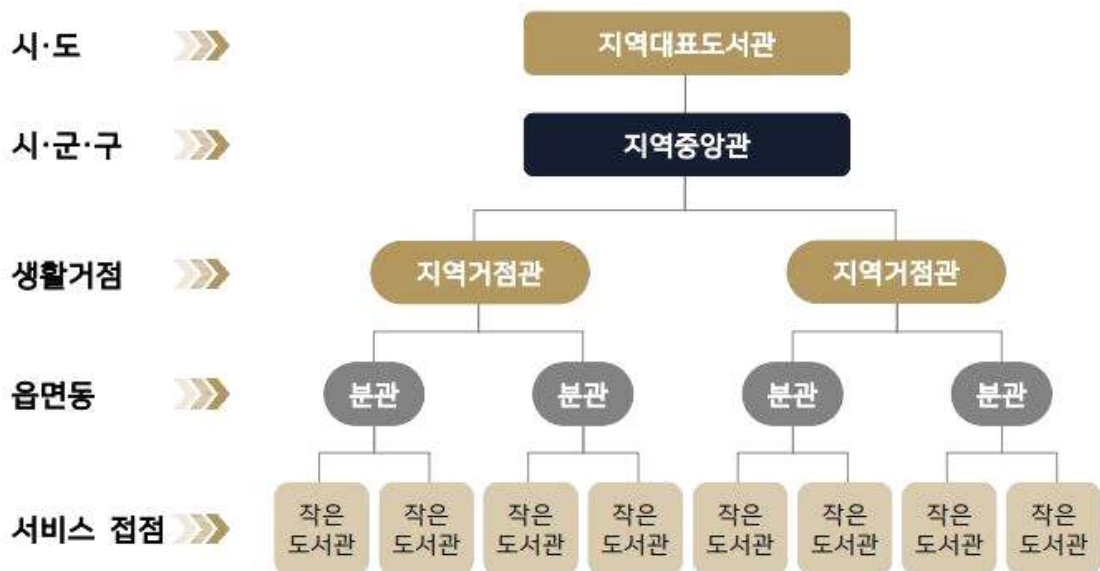
9-1-3.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확대

- 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에 참여할 경우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하고,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2017년에 청주시는 6억여원을 투입하여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 12개관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상호대차를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3개관 만이 상호대차에 참여하고 있음(글마루, 봄눈, 봉명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를 위한 자료 검색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청주시의 지원이 없기 때문임.
- 다른 도시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 상호대차 담당 인력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많음.
(다른 도시 정책 비교 참조)

9-1-4. 공공도서관의 구역별 작은도서관 관리

- 현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청주시립도서관 정책팀에서 청주시내 공사립 126개 작은도서관을 관리·지원하고 있음.
- 지역이 광활하고 작은도서관이 많아 작은도서관 담당자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지원하기도 어렵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도 상담, 서류 제출, 교육 등을 위해서 청주시립도서관까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
“버스도 타기 어렵고, 택시비는 어디서 나오니까?” (오창 작은도서관 운영자)
- 공공도서관은 해당 봉사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직원의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함.
- 김해시는 2020년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도록 도서관 직원 업무 분장을 바꾸었음.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은 정책팀에서 담당.



[그림 11] 공공도서관 운영 매뉴얼에 정리된 도서관 체계

9-2.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및 평가

9-2-1. 문체부 실태조사로 일원화

- 『작은도서관진흥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체부에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업무를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 위탁하여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 조사는 작은도서관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시에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주시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 청주시는 매년 지원 신청을 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방문하여 서류 확인을 해왔음.
- 청주시는 문체부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조사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그 자료를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함.
- 신규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등록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9-2-2.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로 평가

- 청주시는 등록된 모든 작은도서관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음.
- 문체부 실태조사 결과로 기본 운영 평가를 일원화할 수 있음. 이때 현장 확인 과정에서 정성 평가를 추가할 수 있음. 평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으며,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와 평가 결과는 매년 청주시의회 1차 정기회의 개최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공개하도록 함.

9-3.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9-3-1.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기준

-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차별없는 충실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신설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 특별히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특화된 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공공 예산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청주시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청주시립도서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이 파행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청주시 각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청주시립도서관과 협의를 거치고, 안정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함.
-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업무를 인수하여 관리해야 함.
 - 두꺼비작은도서관, 맹꽁이작은도서관, 오송복지회관 작은도서관(사립으로 등록되어 있음)
- 현재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이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배정받아 업무를 인수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준비- 주민 교육, 도서관 시설, 장서 관리, 위탁 업무 등-작업을 진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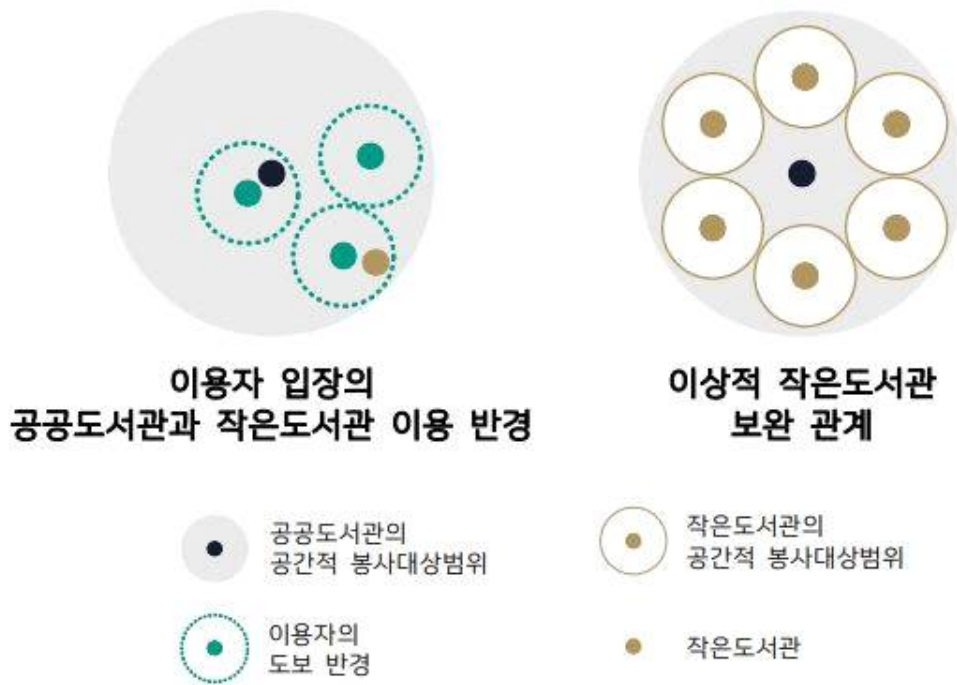
9-3-2.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 청주시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는 사서 1인을 포함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함. (자원봉사, 공익, 일자리 중심 운영 배제)
- 청주시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는 사전에 지역 주민과 정보 공유, 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주민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직원을 선발할 때는 지역 주민을 위주로 해야 함.
- 지자체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는 직영에 따른 문제들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함. 민간에 위탁할 때는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었거나 지역 주민 조직에게 해야 함.

<과주시의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사례 참조>

-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할 때는 직영에 준하는 기준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편성하고, 운영 인력이 안정적으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역 주민과 융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12]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봉사 범위에 대한 개념 도식
(2019 공공도서관 운영매뉴얼 135p)

9-4. 공공형 작은도서관 도입

9-4-1. 공공형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은 설립 주체에 따라 크게 ‘공립형’ 과 ‘사립형’ 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한 지점이 많이 있음. 청주시는 ‘공립 작은도서관’ 을 청주시 각 부처에서 조성한 곳만을 포함하고 있음.
- 노인복지관처럼 운영주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공익법인이고, 작은도서관 활동도 공공성이 높은 도서관들이 사립으로 분류되어 매년 평가를 받아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 수준이 낮고,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짐.
- 사립 작은도서관 중 도서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 및 문화 활동을 통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성’ 이 높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형 작은도서관’ 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9-4-2.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례

- 전라북도에서는 민간의 신청을 받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도비 매칭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음.
- 전주시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조성한 작은도서관을 ‘공립형 작은도서관’ 으로 분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조성 단계부터 지원한 사례임. (평가는 하되, 지원 여부에 반영은 안 함)
- 김해시의 경우 일찍부터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 하여 공모를 통해 공간을 조성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9-4-3. 문체부 정책 연구 보고서 제안

1) 공립형 작은도서관 지정 제안

-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작은도서관 정책 연구’ 에서 연구팀은 ‘공립형 작은도서관 지정 및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문체부에 ‘사립 작은도서관 대상 공립 지정 운영’ 을 제안하였음.²²⁾

22) 김홍렬 등, 「작은도서관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 p174~p176, 문화체육관광부, 2019.

- 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 중 공립 작은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 운영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공립’으로 지정” 하고, “공립으로 지정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동등한 수준의 필요한 운영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 공립형 작은도서관 지정 기준 마련

- 연구에서는 공립 지정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립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동등한 수준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 공립 지정을 위한 운영 기준은 개방성, 운영자 전문성, 등록 기준 사항, 시설 안전, 지자체 연계 협력, 운영의 투명성, 재정 구조 등으로 구성되는 정량적 운영 기준과 지역사회 기여,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되는 정성적 운영 기준으로 구성한다.
 - 지정 기준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포함하고 점수화하여 구성하며, 일정 점수 미달시 지정을 취소한다.

3) 공립형 작은도서관 지정 절차

- 연구에서는 공립 지정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대상은 공립 지정 운영을 신청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 지정 방법 : 신청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공립 지정.
 - 지정 절차 : 신청 → 정량평가(기본 사항 확인) → 현장 평가(정량평가 사항 확인 및 정성평가) → 심의위원회 종합평가 → 공립 지정.

4) 공립형 작은도서관 지원

- 연구에서는 공립 지정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지정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공립 작은도서관 수준의 지원을 한다.
 - 지원 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사서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사서 1명 기준 : 9급 공무원 수준 임금 기준 적용), 소장 장서 대비 10% 이상의 신간도서 구입을 위한 자료비, 운영비 등을 산출하여 분기별로 정액 지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지정 운영 제외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9-5.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 설정

9-5-1. 선지원 후평가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은 작은도서관의 양적인 확산보다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
- 그러나,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은 작은도서관의 등수 매기기로 귀결되고, 결과적으로 작은도서관에는 평가에 대한 부담만 가중되고, 운영자 이탈 등 작은도서관 운영 기반 와해로 이어지고 있음. 또 일년 단위 평가와 지원의 반복으로 운영의 안정성도 크게 훼손되어 많은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오히려 독소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 작은도서관은 법에 의해 운영을 권장받고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의 책무가 부여된 법적 기반이 명시된 활동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선평가 후지원’으로 시혜를 받는 민간의 이익사업이 아님.
-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만들어 지역아동센터나 공공형어린이집처럼 지원을 먼저하고, 선정 기준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선지원 후평가’가 필요함.

9-5-2. 지원 기준 설정의 법적 판단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는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만 있고, 지원은 자치단체장의 책무로만 명시하고, 지원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음. 작은도서관 등록이나 운영에 관한 추가 기준을 두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²³⁾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 기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함.
- 2020년 10월 법제처는 김해시의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담을 수 있고,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으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김해시는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23) 청주시는 2018년 9월 「작은도서관설치운영지원조례」 중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제처부터 부적합하다는 권고를 받아 삭제하는 개정을 한 바 있음.

제14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할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으로, 장서 수 3천권 이상을 구비하고 매년 신규 자료를 추가로 갖출 것
3.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새마을문고,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 ② 지원 대상·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매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과 의무이행 및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시장은 신규 지원 대상 선정 시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조건,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⑤ 그 밖에 보조금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은 『김해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13>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원 기준 관련

9-5-3.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기준의 검토

-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크게 운영비, 도서구입비, 시설(개선)비, 프로그램비로 나뉜다. 이중 도서구입비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은 신규 등록을 한 작은도서관에 일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프로그램 지원비는 일회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따로 두기는 어렵지만, **경상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운영비에는 지원 기준이 필요함.**

1) 운영 주체의 성격에 따른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2) 면적 등 시설 기준에 대한 기준

-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을 상회하는 지원 기준이 필요함. 1994년 기준의 등록 기준으로는 작은도서관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기가 어려움. 열람과 대출뿐 아니라 문화 활동,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 논의에서 면적 기준을 99㎡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공동주택 의무 설치 기준을 1,000세대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3) 전용 시설 여부에 대한 기준

- 개인이나 교회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목적사업과 같은 공간에 조성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일반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큰 제약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주시의회에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내용에 ‘전용출입구’라는 것을 표현을 넣었고, 지원 기준에 ‘전용도서관’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음.
- ‘전용출입구’라는 표현은 상가나 복합 건물 등에 입주해 있는 경우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지만, 도서관 개관 시간을 다른 시설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살려 지원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4) 운영위원회 등 공공성 담보에 대한 기준

-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이 대표자나 운영자의 임의대로 운영되지 않고 공개된 규칙과 기준,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함.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 기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최소한의 기준으로 자율성 유지

-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자의 의지와 자발성을 중요한 원천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복돋아 운영의 원천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지원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하거나 항목을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공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갖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원을 좀더 충실하게 하여 질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6) 운영비 지원 기준 조례 반영

-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은 조례에 반영하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을 시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9-6.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9-6-1.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와 적용

- 청주시는 매년 1회 이상 지원 신청을 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를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문체부 실태조사와 평가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줄 세우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작은도서관의 운영상태 점검하고,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지원의 최소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년마다 평가, 평가 결과 D등급 이하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고, 컨설팅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 축소 공공형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평가와 비교.

9-6-2.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 기준을 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기본 운영비를 지급함.(예, 월 50만원)
- 작은도서관의 시설 규모, 운영자 수 등을 구분하여 추가 운영비를 지원함.
예) A유형(면적 66㎡ 이상, 상근 1인 이상 근무) 월 50만원 추가 지원
B유형(면적 33㎡ 이상, 상근 1인 이상 근무)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운영비 지원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제한 외에 추가 제한을 두지 않음.

9-6-3. 도서구입비 지원

- 평가에서 기준 미달이 되지 않는 등록도서관에 대해서는 매년 도서구입비를 지원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 장서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운영비에서도 도서나 서가를 구입할 수 있게 함.(작은도서관의 장서관리 판단)
- 신규 등록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 기본 물품과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운영비를 지급받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병원도서관 등 특수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충북대병원, 한국병원)

9-6-4.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운영비나 도서구입비 지원과 관계없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함.
-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지원 유지

1)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의 사회적 가치가 높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작은도서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함.
 - 우수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 필요
 - 3년간 지원 후 연장 여부를 평가

2) 특화 프로그램 사례들

- ▷ NGO 도서관 ‘휴먼BOOK 프로그램’의 경우
 - 현재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간 97만원 지원.
 - 예산 규모에 맞춰 형식적으로 1년에 1~2회 운영에 그침
 -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프로그램 지원 필요
- ▷ 초롱이네도서관 ‘이야기선생님 프로그램’
 - 성심학교,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아동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

9-7. 특화 도서관 운영

1) 특화 도서관 운영의 필요성

- 국가의 정책적 목표나 시의 특화 정책 수행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함
- 이용 대상을 특정하여 장서를 갖추고, 이용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시니어특화, 경력단절 여성 특화, 장애인 특화 등)
- 전문성이 요구되고 일반 작은도서관에서 자료를 많이 소장하기 어려운 주제를 특화하여 장서와 자료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음악, 미술, 디자인, 건축, 사진, 만화 등)

2) 특화 도서관 운영의 예시

- 고령화 시대에 따라 시니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시니어 대상 특화도서관(노인복지관 등)
- 여성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여성인력개발센터, 평생학습관 등)
-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 및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작은도서관 (지역 복지관 내 작은도서관, 장애인복지관 등)
- 사춘기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
- 청소년들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만화도서관

3) 특화 도서관 운영 지원

- 신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조성 단계에서 협의
- 공공형 작은도서관에 준하여 지정하고 지원
-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도 및 재지정.
- 기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특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원

9-8.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9-8-1. 지원의 필요성

- 작은도서관 간 교류와 정보 공유, 협력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발전을 유도
- 협의회 회원 도서관들의 연대, 협력 사업 진행으로 독서 문화 조성. 마을공동체 형성.
- 청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어도 매월 1만원의 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교류를 위한 사무 공간, 모임, 회의 장소가 없고, 자료와 활동 성과물 등을 보관하고 공유한 공간이 없음.

9-8-2. 지원 방법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협의회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의 길을 열어놓아야 함.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사무공간 지원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협의회 운영비 (민간 경상 보조) - 월례회의, 임원회의 회의비 지원
- 협의회 사업비 보조 - 작은도서관 교육, 컨설팅비 신설

10.

청주시

작은도서관 조례 검토

10-1.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10-1-1. 전부개정 법률안의 의미

-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13일에 제정되었음.
-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 작은도서관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운영 현실도 변화하였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근거인 상위법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음.
-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상당한 부분이 관련 관계 법률에 적용받고 있음.
- 이에 국회에서는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 12일에 발의하여 심의중에 있음.
- 이 연구는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와 관계된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효과적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10-1-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안 제2조)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또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정의하며 인력의 기준을 역할로 설명함,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함.

▷(안 제6조제2항)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록 기준 사항.

▷(안 제7조)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다른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과 협력하도록 함.

▷(안 제8조)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함.

▷(안 제9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규정함.

▷(안 제11조제1항)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1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안 제14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 직원 현황,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운영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아닌 경우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23조)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징수하도록 함.

10-1-3.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청주시 검토 사항

표 91 작은도서관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청주시 검토사항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사항
<p>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청주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자료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완비 전제)</p>
<p>안 제6조(설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도서관자료, 사서에 관한 기준 (면적 99㎡이상, 장서 3,000권이상, 열람석 12석, 공립의 경우 1명의 사서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 사서 1명 배치 - 면적은 99㎡이상
<p>안 제7조제1항(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의 공공성을 명시하여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p>안 제7조제3항(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 시 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p>안 제9조(운영 지원)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지원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에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은 도의 지원비에 대응하는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다. 지원비와 대응비의 용도는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확충, 작은도서관의 정보화, 사서 등 직원의 확보, 그 밖에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정함.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비와 대응비의 예산 편성 및 지원 - 사립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용도를 근거로 조례에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할 필요가 있음.

<p>안 제10조(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다.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대표도시로서 해당 지원전담부서의 설립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례를 정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p>
<p>안 제11조(등록) 공립작은도서관은 시설, 인력, 자료를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사립작은도서관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한다.</p>	<p>- 공립작은도서관의 등록 주관을 명확히함. 청주시의 공립작은도서관의 등록사무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 필요함.</p>
<p>안 14조(평가) 시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 직원 현황,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의 운영, 예산 지원 및 포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작은도서관 평가와 결과의 공개 -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예산 지원 및 포상 내용은 조례로 정함</p>
<p>안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부실 운영의 사유의 항목에 따라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부실 운영 시설의 폐관할 수 있도록 법에 절차를 명시함. 조례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전수 조사 등을 통한 정리가 필요함.</p>
<p>안 제16조(청문)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 시 청문을 한다.</p>	
<p>안 제20조(포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 작은도서관 진흥 관련 공로자 포상에 대한 조례 명시 필요함.</p>
<p>안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이 아니면 작은도서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지 않은 시설 및 기관에서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하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p>

10-2. 청주시 작은도서관 조례에 반영할 내용

10-2-1.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1)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 청주시는 주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청주시립도서관과 운영 계획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도서관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설치해야 한다.
-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전용면적이 99㎡ 이상으로 열람실과 문화교실을 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사서 1인을 포함하여 2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상호대차 등 네트워크 사무를 처리하고, 주 6일 이상 개관 운영한다.
- 공립 작은도서관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위탁 비용은 직영하는 기준에 따른다.

10-2-2. 공공형 작은도서관 지정과 지원

1) 공공형 작은도서관 지정

- 사립 작은도서관 중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모범적인 곳을 공공형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형 작은도서관 선정 기준과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공공형 작은도서관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 평가에서 지정을 위한 최소 운영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지정을 갱신한다.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시립도서관의 청주시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과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에 따라 지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공형 작은도서관 지원

- 공공형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에 준하여 지원한다. 공공형 작은도서관에는 시설장(관장)과 전담인력(사서나 작은도서관 운영 경력자) 1인의 인건비와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 공공형 작은도서관이 상호대차, 주말 개관 등의 사업 참여할 때는 이에 대한 인력지원이나 자원봉사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10-2-3.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

1)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기준

- 청주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중 국가나 다른 기관, 법인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면적, 시설, 장서, 운영 현황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만들고, 기준을 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되, 시설의 규모와 종사 인력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도서 및 물품 구입(자산 취득), 공과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 간에 규제를 두지 않는다.

2) 도서구입비 및 프로그램 지원비

- 운영비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기준이나 내역은 청주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10-2-4.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 매년 1회 이상 청주시에 등록된 모든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실태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때 작은도서관의 입력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
- 운영 실태 점검 결과는 매년 청주시의회 1차 정기회의 개최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작은도서관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신규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등록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0-2-5. 작은도서관 평가

- 청주시는 매년 일정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평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으며,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평가 결과는 매년 청주시의회 1차 정기회의 개최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개한다.

10-2-6. 특화도서관 지정 및 지원

- 국가의 정책적 목표나 시의 특화 정책 수행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특화도서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10-2-7. 작은도서관협의회

- 청주시작은도서관 협의회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부록 >

작은도서관 진흥법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동주택 현황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

지구”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국가는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 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7.01 조례 제270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584호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786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설치요건을 갖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4. “전용도서관“이란 출입구를 별도로 하고 다른 용도와의 혼용이 없는 독립된 열람공간을 가진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 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의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 2 장 설치 요건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 및 대출
3.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지원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5조(위치)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이 경우 해당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 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마련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설립자가 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폐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시장은 2년마다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16.12.23.>
2.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3.>
3.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3.>

4. 그 밖의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개정 2016.12.23.>

5. <삭제 2016.12.23.>

제 3 장 운영

제8조(운영자의 직무)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및 문화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며,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1조(자료 관리)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제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입관 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 지원 등

제13조(지원) <개정 2018.10.5.>

① 시장은 제6조 설립기준의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인건비, 운영경비, 자료구입비, 설비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설 및 운영전반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을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제1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자치운영위원회 <개정 2018.10.5.>

제15조(설치)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18.10.5.>

1. 운영 체계
2.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5. 예산 운영
6. 도서 확보방안
7. 그 밖에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으로 운영자가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명예직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정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에 한 차례 개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보관한다.

제19조(위촉 해제) 운영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 6 장 작은도서관협의회

제20조(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를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2.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정보 보급과 운영 지원
4. 그 밖의 협의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② 협의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자 과반수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회장과 총무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를 구성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운영규정) ① 협의회는 그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4.7.1. 조례 제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25호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협의회 회원은 이 조례의 협의회 회원으로 본다.

부 칙(2016.12.23.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0.5.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표 96] 청주시 상당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단지명	세대수	공급	준공년도	비고
금천동	장자마을현대아파트	636	분양	2002.05.29.	
	장자마을8단지부영아파트	663	분양	2002.12.07.	
	장자마을7단지부영아파트	725	분양	2001.11.24.	
	금천서희스타힐스	749	분양	2020.11.30.	
	뉴타운아파트	783	분양	1993.05.20.	
	현대아파트	1,032	분양	1992.12.02.	
중앙동	코아루휴티스	530	분양	2020.12.01.	
탑대성동	우성3차아파트	554	분양	1991.10.30.	
성안동	문화동센트럴칸타빌아파트	630	분양	2018.12.27.	
용담명암 산성동	세영첼시빌아파트	568	분양	2005.01.05.	
	가좌마을2단지부영아파트	569	분양	2003.07.18.	
용암1동	강변뜨란채아파트	517	분양	2005.08.29.	
	용암현대3차아파트	520	분양	1995.12.13.	
	중흥마을6단지부영아파트	557	분양	2001.11.24.	
	용암주공1단지아파트	600	분양	1994.11.01.	
	시티프라디움2단지	610	분양	2020.02.18.	시티한빛작은도서관
	중흥마을2단지부영아파트	620	분양	2001.09.18.	
	동남 대원칸타빌2차	706	분양	2019.12.19.	
	대성베르힐2차	715	임대	2020.06.02.	베르힐작은도서관
	중흥마을1단지부영아파트	752	분양	2003.09.23.	
	대성베르힐1차	792	임대	2020.06.02.	
	시티프라디움1단지	797	분양	2020.02.18.	
	중흥마을덕일마이빌아파트	856	분양	2003.07.09.	
	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	1,400	분양	2013.06.20.	
	건영아파트	1,046	분양	1999.04.16.	
	용암주공2단지아파트	1,140	분양	1994.11.01.	징검다리작은도서관
용암2동	태산그린아파트	590	분양	1995.04.11.	
	용암무지개삼일아파트	640	분양	1994.10.31.	
	용암소라아파트	675	분양	1994.11.07.	
	동남 대원칸타빌1차	676	분양	2019.12.19.	
	동남힐데스하임	910	임대	2020.09.22.	
	용암부영1차아파트	979	임대	1994.12.12.	
	청주동남내행복주택	998	임대	2020.04.17.	
	청주동남1단지	1,486	임대	2020.08.14.	
세원한아름아파트	1,530	분양	1994.11.09.		
용암2동 방서지구	방서하트리움리버파크아파트	600	분양	2019.01.24.	
	우미린 풀하우스	1,016	분양	2020.09.23.	꿈에린작은도서관
	청주센트럴자이아파트	1,500	분양	2018.09.21.	
	중흥S클래스더퍼스트아파트	1,595	분양	2018.09.21.	중흥S클래스작은도서관

[자료]청주시청 공동주택과 2021년 7월 기준

[표 97] 청주시 서원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단지명	세대수	공급	준공년도	비고
사직1동	사직두산위브제니스	576	분양	2009.07.29.	
사직2동	푸르지오캐슬아파트(1.4.5단지)	3,599	분양	2010.11.19.	푸르지오캐슬작은도서관
수곡1동	산남주공3단지아파트	510	분양	1991.11.28.	
	산남주공1단지아파트	1,240	분양	1990.12.08.	
수곡2동	수곡두진하트리움아파트	935	분양	1995.05.02.	
	산남주공4단지아파트	1,005	분양	1993.07.31.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1,112	분양	2021.03.29.	
모충동	산남주공2단지아파트	1,985	임대	1991.11.19.	
	모충주공2차아파트	640	분양	1989.08.14.	
분평동	주은프레지던트아파트	620	분양	2001.11.19.	
	분평주공4-1단지아파트	630	분양	1999.06.26.	
	분평주공4-2단지아파트	684	분양	1999.06.26.	
	대원칸타빌아파트	731	분양	2000.10.28.	
	분평주공3-2단지아파트	850	분양	1997.06.18.	
	분평주공7차아파트	930	분양	1997.12.06.	
	분평1단지뜨란채아파트	993	분양	2000.10.06.	
	분평주공6차아파트	1,132	분양	1999.09.04.	
	현대대우아파트	1,179	분양	1999.07.23.	
	분평주공2단지아파트	1,310	분양	1997.06.18.	
남이면	분평주공5단지아파트	1,350	분양	1998.05.30.	
	가마힐데스하임아파트	988	분양	2016.12.07.	가마힐데스하임작은도서관
산남동	남이 삼포그린힐아파트	916	임대	2000.01.01.	
	산남대원칸타빌2단지아파트	518	분양	2007.04.24.	칸타빌2단지작은도서관
	산남계룡리슈빌아파트	551	분양	2007.02.22.	산남계룡리슈빌작은도서관
	산남퀵덤아파트	570	분양	2007.01.02.	퀵덤작은도서관
	산남대원칸타빌1단지	600	분양	2007.04.24.	두꺼비작은도서관
	산남대우푸르지오아파트	760	분양	2007.04.24.	산남푸르지오작은도서관
	산남부영사랑으로아파트	985	분양	2007.04.26.	산남부영작은도서관
개신동	현대아파트	511	분양	1990.12.11.	
	개신주공3차아파트	634	분양	2003.07.11.	꿈키움작은도서관
	개신삼익1차아파트	744	분양	1991.02.27.	
	개신대우푸르지오아파트	920	분양	2004.11.26.	
	개신뜨란채아파트	980	분양	2000.12.11.	개신뜨란채작은도서관
	개신주공1단지아파트	1,398	분양	2001.12.12.	글마루작은도서관
성화동	성화다안채6단지아파트	533	분양	2013.02.08.	
	남양휴튼아파트	577	분양	2008.08.01.	
	성화휴먼시아1단지아파트	650	임대	2007.06.04.	청개구리작은도서관
	성화휴먼시아5단지아파트	745	임대	2010.11.15.	파레트작은도서관
	성화호반베르디움	840	분양	2012.06.25.	
	성화휴먼시아4단지아파트	861	분양	2010.10.11.	성화꿈터작은도서관
죽림동	성화휴먼시아2단지아파트	1,215	임대	2007.06.04.	숨박꼭질작은도서관
	가경주공3단지아파트	704	분양	2003.11.17.	
	가경주공4단지아파트	814	임대	2004.12.14.	

[자료]청주시청 공동주택과 2021년 7월 기준

[표 98] 청주시 청원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단지명	세대수	공급	준공년도	비고
내덕2동	울량서희스타힐스	508	분양	2016.06.24.	
	힐즈파크푸르지오	777	분양	2020.11.10.	
내수읍	내수 무지개아파트	711	분양	2000.05.29.	
	내수 삼일아파트	883	분양	1996.10.14.	
	내수 덕일한마음아파트	910	분양	1997.10.29.	
사천동	청주사천푸르지오아파트	729	분양	2018.08.30.	푸른작은도서관
	남광하우스토리1/2단지아파트	811	분양	2011.01.21.	남광하우스토리작은도서관
	신동아아파트	958	분양	1993.05.29.	
오근장동	울량주공1단지아파트	553	임대	2013.09.30.	나도밤나무작은도서관
	울량대원칸타빌2차아파트	780	분양	2014.04.03.	
	울량대원칸타빌3차아파트	789	분양	2015.03.13.	
	울량대원칸타빌1차아파트	903	분양	2013.03.15.	
	울량주공2단지아파트	1,099	임대	2013.11.15.	노리울작은도서관
오창 1지구	오창 대원칸타빌아파트	592	분양	2017.02.10.	글마중작은도서관
	오창 쌍용스윗닷홈아파트	622	분양	2006.05.24.	쌍용규장각도서관
	오창 이안아파트	818	분양	2006.02.14.	이안작은도서관
	오창 코아루아파트	948	분양	2006.06.02.	
	오창 우림필유1차아파트	1,124	분양	2006.05.03.	우림필유1차도서관
	오창 중앙하이츠빌아파트	1,372	분양	2006.05.23.	중앙작은도서관
	오창 한라비발디아파트	1,529	분양	2006.05.24.	한라비발디작은도서관
	오창 우림필유2차아파트	1,602	분양	2006.11.22.	우림나눔작은도서관
	롯데캐슬더하이스트아파트	2,500	분양	2018.08.30.	롯데캐슬작은도서관
오창 2지구	오창 부영8단지아파트	534	임대	2015.10.07.	더불어가치작은도서관
	오창대성베르힐아파트	587	분양	2015.07.10.	
	오창모아미래도3단지아파트	630	분양	2016.01.14.	모아미래도작은도서관
	오창 부영5단지아파트	658	임대	2015.09.24.	주먹가위보작은도서관
	오창 부영7단지아파트	892	임대	2014.08.11.	
	오창 부영6단지아파트	1,016	임대	2014.03.31.	
울량 사천동	한신더휴센트럴파크아파트	1,210	분양	2018.02.23.	
	두진백로그린타운	608	분양	1996.06.01.	
	울량대원칸타빌4차아파트	614	분양	2015.12.14.	
	울량현대건설아파트	764	분양	1991.12.14.	
	럭키1.2.3차아파트	774	분양	1991.03.16.	
	삼성아파트	798	분양	1996.05.28.	
울량주공9단지아파트	1,122	임대	2014.10.31.	참도깨비작은도서관	

[자료]청주시청 공동주택과 2021년 7월 기준

[표 99] 청주시 흥덕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

	단지명	세대수	공급	준공년도	비고
가경동	삼일원앙아파트	520	분양	1997.06.17.	
	가경대우푸르지오아파트	575	분양	2006.01.11.	
	가경주공1차아파트	581	임대	2002.08.06.	
	가경형석1차아파트	600	분양	1992.12.08.	
	가경세원아파트	620	분양	1992.11.13.	
	청주가경아이파크2단지	664	분양	2020.02.14.	
	가경주공2차아파트	704	분양	2002.12.17.	
	가로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	773	임대	2008.07.11.	가로수마을작은도서관
	가경주공6단지아파트	855	분양	2004.04.16.	
	청주가경아이파크아파트	905	분양	2019.04.24.	
	대원아파트	940	분양	1997.07.29.	
	가경세원3차아파트	952	분양	1997.08.04.	
	가경아이파크3단지	983	분양	2021.05.27.	
	가경자이	992	분양	2020.11.18.	
강서1동	비하계룡리슈빌2차아파트	540	분양	2009.11.30.	
	비하효성1차아파트	894	분양	1995.09.12.	
	서청주파크자이	1,495	분양	2019.09.26.	
강서2동	테크노폴리스우미린아파트	1,020	분양	2018.07.26.	
	테크노폴리스푸르지오아파트	1,034	분양	2018.11.26.	푸른작은도서관
복대1동	세원느티나무아파트	526	분양	1999.09.21.	
	하북대두진하트리움	527	분양	1999.08.31.	
	영조아름다운나날2차아파트	539	분양	2004.11.22.	
	대원칸타빌아파트	812	분양	1999.10.07.	
	영조아름다운나날1차아파트	952	분양	2003.10.16.	
	금호어울림아파트	1,234	분양	2009.02.27.	금호에다움작은도서관
	하북대현대2차아파트	1,482	분양	2000.04.22.	정다운도서관
	두산위브지웰시티2차	1,956	분양	2015.06.02.	
봉명2 송정동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2,164	분양	2010.06.30.	
	봉명주공2단지아파트	556	분양	1985.12.11.	
	푸른아파트	603	분양	1994.12.15.	
오송읍	봉명현대아이파크	1,222	분양	2005.03.30.	봉명IPARK작은도서관
	오송 호반베르디움아파트	634	분양	2010.08.27.	호반다섯소나무도서관
	오송 상록롯데캐슬아파트	671	분양	2010.09.27.	오송롯데작은도서관
	오송역 동아라이크텐	970	임대	2020.05.28.	
옥산면	오송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1,118	임대	2008.09.17.	도래샘작은도서관
	옥산 금정3차아파트	618	분양	1998.06.22.	
	흥덕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1,206	분양	2016.11.30.	하늘채작은도서관
운천 신봉동	리버파크자이	2,529	분양	2019.07.30.	
	삼정백조아파트	564	분양	1995.07.06.	
	신봉삼성아파트	570	분양	1992.11.04.	
	운천무지개삼일아파트	639	분양	1994.08.22.	
	운천주공아파트	1,200	분양	1986.11.13.	

[자료]청주시청 공동주택과 2021년 7월 기준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

안건번호 : 의견 20-0261 요청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혁신일자 : 2020. 10. 22.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서관법」 제30조 관련)

1. 질의요지

- 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참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 외에 법인, 단체 및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법」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기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도서관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목)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및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나목1) 및 7)]을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작은도서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작은도서관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령, 도서관법령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령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등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도서관법」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30조제2항)고 규정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공립 공공도서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 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1조제1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및 도서관자료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달리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한편 작은도서관법 제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제3항) 규정하여 작은도서관과 관련

하여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자치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립 작은도서관에 두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서관법령 및 작은도서관 법령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 대상으로 하여 설치·운영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 달리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 및 작은도서관 법령에 따르면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립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령, 도서관법령, 작은도서관법령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IV-[3]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출을 할 때에 안정적인 시민 서비스 제공과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인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하여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의 결정 기준을 정하였다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